

Ⅱ. 損害賠償 및 慰籍料 請求事例

社會的 評價를 低下시키는 公表에 의해 받은 精神的 苦痛을 慰藉할 의무가 있다

서울민사지방법원 1983. 9. 30.자 판결(83가합2449)

事實概要

被告가 발행, 편집하는 雜誌에 原告에 대한 기사들을 게재함으로써, 비록 그 내용의 眞實 여부는 별론으로 하더라도 널리 반포되는 출판물인 월간잡지의 성격에 비추어 볼 때, 원고의 社會的 평가를 저하시켰음은 물론, 명예감정을 침해하여 원고가 받은 정신상의 고통을 위자할 의무가 있으므로, 被告는 原告에게 금 2백만원의 금원을 지급하라는 1審判決이 나왔다.

서울민사지방법원 제11부(재판장 조열래 부장판사)는 1983년 9월 30일, 原告 대한예수교장로회 대성교회와 원고 박 씨가 피고 卓 씨를 상대로 제소한 손해배상 청구사건에서, 다음과 같이 판결했다. 「▽被告 탁 은 그가 발행, 편집하는 현대종교 1983년 3월호에 『박 목사 그는 왜 이단인가』라는 제목 아래 24페이지에 걸쳐서, 또 같은 해 4월호에 『박 목사 그는 과연 이단이었다』라는 제목 아래 21페이지에 걸쳐서 原告 박 의 전력과 불법, 비리행위 및 원고가 내세우는 교리 등에 관한 내용을 게재하고, ▽또한 4월호 끝부분에서 5월호에 실린 原告에 대한 기사의 소제목으로서 『눈사람처럼 늘어나는 박 의 범죄행각의 내막』등을 게재했다. 기사내용의 진실 여부는 별론으로 하더라도, 널리 반포되는 출판물인 월간잡지의 성격에 비추어 위 원고에 대한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켰음은 물론 명예감정을 侵害하였다고 하지 않을 수

없다 할 것이므로, 피고는 이로 인하여 원고가 받은 정신상의 고통을 慰藉할 의무가 있다. 또한 피고의, 위 기사내용은 모두 진실한 사실로서 오로지 종교적 순수성, 공익성과 종교사회의 정화를 도모하기 위하여 게재한 것이기 때문에 명예훼손 위법성이 조각된다는 주장에 대해, 이에 부합하는 듯한 증인의 증언은 이를 믿지 아니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설사 그 內容의 기재가 진실이라 하더라도 그 기사내용은 원고에게 名譽毀損이 됨에 있어 위법성이 조각된다고 할 수는 없는 法理이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가한 정신적 손해의 금전배상으로, 원고와 피고의 나이 및 교육정도, 기독교내에서의 위치 및 저명도 등을 고려해 金 2백만원을 지급함이 상당하다.」

재판부는 또한 원고가 피고에게 위자료청구와 함께 사과광고의 게재도 요구한 부분에 대해, 이는 원고의 명예를 회복시키는 방법으로서 적당한 처분이라고 인정되지 않으므로, 이 부분 청구는 받아들이지 않는다고 判決했다. 原告 대성교회가 피고에게 청구한 위자료 및 사죄광고 게재청구는, 이 사건 내용은 박 〇〇 개인에 관한 것이고, 원고 교회가 비법인단체로서 대표자인 원고 박 〇〇 과 별개의 독자적인 법적 주체성과 인격을 가지고 있다 할 것이므로, 原告에 대한 비행을 적시하였다 하여 곧바로 이것이 원고 교회에 대한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키는 것이라고는 볼 수 없으므로 이유 없다 하여 받아들이지 않았다.

判 決 文

사 건 : 83가합2449 손해배상등

원 고 : 1. 대한예수교장로회 대성교회(大聲教會)

서울

대표자 당회장 직무대행자

2. 박

서울

원고들 소송대리인 변호사 류태선, 김창국

피 고 : 탁

서울

소송대리인 변호사 홍현욱, 김중권

변론종결 : 1983. 9. 16.

- 주 문 : 1. 피고는 원고 박 ○○에게 금 2백만원 및 이에 대한 1983. 5. 1.부터 다
 갚을 때까지 연 5푼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2. 원고 대한예수교장로회 대성교회의 청구 및 원고 박 ○○의 나머지 청구
 를 모두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3분의 1은 피고의, 3분의 2는 원고들의 각 부담으로 한다.
 4. 위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 피고는 원고들에게 각 금 10,000,000원 및 각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부
 본 송달 익일부터 완제일까지 연 5푼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피고는 이 판결
 을 송달받은 후 최초로 발행되는 편집이 완료되지 아니한 「현대종교」의 앞표지 중앙부
 분에 3호활자로 『사과문 게재』라고 세로로 표시하고, 위 「현대종교」의 목차란 다음 페
 이지 전면에 걸쳐 별지 기재의 사과문을, 『사과문』이라는 제목은 상단 중앙부분에 가
 로로 1호활자로, 사과문 내용은 가로로 4호활자로 게재하라.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
 으로 한다 라는 판결 및 금원지급을 구하는 부분에 대한 가집행의 선고.

이 유 : 1. 본안 전 항변에 대한 판단

피고는 원고 대한예수교장로회 대성교회(이하 원고 교회라 약칭한다)의 정당한 대표
 자는 원고 박 ○○이고 원고 교회가 그 대표자라고 주장하는 위 윤 ○○은 그 대표자가
 아니며, 설사 위 윤 ○○이 원고 교회의 종헌에 따라 적법히 선출된 대표자 직무대행자
 라 할지라도 원고 교회의 종헌은 대표자 직무대행자는 소송을 제기할 수 없다는 금지
 규정을 두고 있으므로 위 윤 ○○의 원고 교회를 대표하여 본소를 제기할 수 없다 할
 것이므로 원고 교회의 본소 청구는 각하되어야 할 것이라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성
 립에 다툼 없는 강제10호중(소속증명서), 강제16호중(헌법)의 각 기재와 기록에 편
 첩되어 있는 당회장 권한 위임장, 원고 교회 당회의록 사본의 각 기재에 의하면, 원고
 교회는 대한예수교장로회 남서울노회 합동보수파측에 속하는 교회로서 원래 원고 박

이 원고 교회의 당회장인 담임목사로 시무하고 있었으나, 1982. 12. 29. 원고 교회
 당회의에서 당회장인 원고 ○○의 부재시에는 위 윤 ○○목사가 당회장 직무대행직을
 수행할 것을 결의하고, 1983. 1. 2. 대한예수교장로회 남서울노회에서 당회장 권한위
 임에 관하여 승인을 받은 사실, 대한예수교장로회 헌법 제3조에 의하면 당회장은 그
 지교회의 담임목사가 될 것이나 특별한 경우에는 당회의 결의로 본교회 목사가 그 노
 회에 속한 목사 1인을 청하여 대리회장이 되게 할 수 있으며, 본교회 목사가 신병이
 있거나 출타한 때에도 그러하다 라고 규정되어 있는 사실 등을 각 인정할 수 있고, 원

고 박 이 1983. 1.경 미국으로 출국한 이래 아직 귀국하지 아니하고 있는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으므로, 위 윤 은 원고 교회의 종헌에 따라 적법히 선출된 원고 교회의 대표자인 당회장 직무대행자라 할 것이고, 이 사건 소 제기일임이 기록상 명백한 1983. 4. 23.부터 변론종결시까지 원고 박 이 출타 중이므로 위 윤 이 당회장 직무대행권한자로서 행사한 이 사건 소 제기는 적법하다고 할 것이며, 그외 달리 당회장 직무대행자에게 당회장으로서의 권한이 제한된다고 볼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의 위 본안 전 항변은 이유 없다.

2. 원고 의 청구에 대한 판단

피고가 월간지 「현대종교」의 발행인 겸 편집인으로서 「현대종교」의 1983년 3월호에 『박 목사 그는 왜 이단인가』라는 제목 아래 24페이지에 걸쳐서, 같은 해 4월호에 『박 목사 그는 과연 이단이였다』라는 제목 아래 21페이지에 걸쳐서 아래와 같은 내용의 기사를 집필, 게재하여 각 발행, 반포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이 사건 기사내용으로서, 피고는 「대한예수교장로회 대성교회…신축한 지 5년만에 신도수 1만명을 헤아리는 매머드 교회가 되었으니 담임목사 박 은 도대체 어떤 마력의 사나이인가…한번 대성교회의 예배에 참석하여 박 의 설교를 듣고 나면 광적인 열성신도가 되다 못해 가정도 팽개친다는 대성교회와 박 의 스토리…」라고 서두에 기재하고,

(가) 원고 박 의 전력에 관하여, 「박 이 호헌총회에 제출한 이력서의 내용에 의심스러운 바가 많고 신학교다운 신학교도 나온 근거가 없으며… 박 은

이 만들어 낸 사제목사」이고, 「박 은 57년부터 59년 7월까지 2년간 박 전도관 전도사로 있다가 이성문제로 타의에 의하여 쫓겨났으며», 위 원고가 이모양이 낳은 사생아를 아들로 입적시킨 사실에 대하여 「왜 남의 아들을 입적시켰느냐…모르는 사람은 처녀가 낳은 사생아를 자기 호적에 넣어주는 성자와 같은 행위라고 칭송할지 모르나 주변에서는 박군이 바로 박 의 아들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박의 본처 김 은 두아들과 출가한 딸을 두고 제2신앙촌에서 살고 있다. 박 은 김 여인에게 최근까지 그 여인의 요구에 못이겨 금전수수한 사실이 밝혀졌다」라는 등의 내용을 각 기재하였고,

(나) 위 원고의 불법과 비리행위에 관하여, 「큰아들은 77. 10. 9. 재미동포 조모양과 혼인한 것으로 호적상에 기재되어 있는데…1982. 12. 25. 또 다시 박모장노의 딸과 결혼식을 대성교회에서 거행했으니 눈하나 깜짝 않고 2중혼인을 자행했다», 「위 원고

와 간통하였다는 김×자 여인의 탄원서에 의하면 박 ×은 성령을 모독하고, 유언비어를 유포하였으며, 선량한 교인들을 미혹하여 많은 여자들이 희생당하고 재산을 바치는 등 불법을 범하고 있다. 그의 간음행각은 상상을 초월한다... 헌금을 강요하고 억대가 넘는 호화주택에 교회교육관 내에 있는 침실을 아방궁같이 꾸며 놓고 미제 식료품과 양주로 호의호식한다», 『큰손』이라는 제목 아래 「박 ×은 자기에게 필요한 사람에게는 아낌없이 뿌린다... 한가지 분명한 것은 신도들이 단상에 낸 헌금은 박씨 것으로 기재 없이 마음대로 썼다», 「그가 타고 다니던 승용차는 시가 3천8백만원짜리 일제 도요다 크라운이었다... 박 ×이 미국 갈 때마다 수만불씩 달러를 바꾸어 가지고 갔다... 들리는 말에 의하면 박 ×의 집이 로스엔젤리스에 호화주택이 있고 그것도 여러채이고, 워싱턴에도 있다고 하니 확실한 근거가 없어 딱 잘라 외화도피를 했다 안했다고는 말할 수는 없다», 「미확인 정보에 의하면 이미 30여만불의 외화를 유출해 갔으므로 박이 귀국하는 대로 조사를 받을 것이라고 하나 사실 여부는 알 수 없다... 신도들로부터 기상천외한 기도부탁헌금을 받아 외국으로 빼돌리고 그 하수인으로 교인 몇명을 이용했다는 사실도 그 진부를 가릴 수 없다», 「박 ×의 수하를 거쳐간 교역자들은 한결같이 그의 횡포와 욕설, 심지어는 구두발로 정쟁이를 차이기까지 하는 등 짐승취급을 당하다가 견딜 수 없어서 쫓겨나야만 했고, 쫓아낸 교역자들은 반드시 누명을 씌어 모략하는 것이다», 「그는 여신도들을 안심시킨 후 여신도들을 불러 안마를 하는데 여러 명이 팔, 다리, 머리를 하나씩 맡아 주무른다», 「김×자 집사의 폭로에 의하면 박이 여자와 관계를 가지면서 하는 말이 사탄권내에서 빼내는 역사, 인치는 역사라고 하면서 자기와 관계를 맺는 여자에게는 남편과 관계를 못하게 하는데 이를 금식이라고 한다지만 그 사실 여부는 확인하지 못하였다», 「박 ×은 두번씩이나 필자에게 거액의 무마비를 주려고 시도하다가 실패하였고... 박 ×은 여러 차례 주류는 4천만원 주어야, 비주류는 3천만원 주어야 된다고 했다는 풍문도 있으나 확인할 길은 없다」라는 등의 내용을 각 기재하였고,

(다) 위 원고가 내세우는 교리에 관하여, 「박 ×이 장안산과 지리산에서 3년 6개월 7일간 기도하면서 계시받았다는 비밀말씀의 정체는 한마디로 전도관 박 ×과 통일교 문 ×의 이론을 섞어 만든 혼합품이고...변 ×이라고 하는 사람이 쓴 성경의 원리를 그대로 복사해서 사용하고 있는 것», 「지금도 박 ×은 ‘변화의 말씀’이란 것을 내세워 신도들을 미혹하고 있으니...», 「결국은 박 ×이 ‘아버지’라는 것은 통일교의 문 × ‘참아버지’에서 따왔고...‘말씀의 승리가’를 읽고 있노라면 통일교나 전도관의 교리를 듣

는 기분이 되는데 그것은 박 이 전도관, 통일교에 각각 2년씩 있었던 관계로 그 교리를 차용해다가 자기 것처럼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신앙 양심상 바람직하지 못하다», 「여신도들도 이년 저년 등 상스러운 욕을 듣고도 계속 추종하는 것은 말씀의 아버지에 게서 떨어질까봐 겁나기 때문이다」라는 등의 내용을 기재하였으며,

(라) 「현대종교」 4월호 끝부분에서 5월호에 실린 위 원고에 대한 기사의 소제목으로서 『눈사람처럼 불어나는 범죄행각의 내막』등을 나열하여 그 내용을 예고하여 기재하고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그가 발행, 편집하는 「현대종교」 3, 4월호에 위 원고에 대한 위와 같은 내용의 기사들을 게재함으로써 그 내용의 진실 여부는 별론으로 하더라도 널리 반포되는 출판물인 월간잡지의 성격에 비추어 위 원고에 대한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켰음은 물론, 위 원고의 명예감정을 침해하였다고 하지 않을 수 없다 할 것이므로 피고는 이로 인하여 위 원고가 받은 정신상의 고통을 위자할 의무가 있다 할 것이다.

피고는 위 원고가 주장하는 위 기사의 내용은 모두 진실한 사실로서 오로지 종교적 순수성, 공익성과 종교사회의 정화를 도모하기 위하여 게재한 것이기 때문에 명예훼손의 위법성이 조각된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이에 부합하는 듯한 증인 의 증언은 이를 믿지 아니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며, 설사 위와 같은 내용의 기사가 진실이라 하더라도 그 기사내용은 위 원고에게 명예훼손이 됨에 있어 위법성이 조각된다고 할 수는 없는 법리이고, 또 이 사건 기사내용의 성질에 비추어 보아 피고 주장과 같이 오로지 종교적 순수성 및 공익성에 관한 것만은 아니라고 해석되므로 위 피고의 항쟁은 이유 없다.

그런데 피고가 위 원고에게 가한 정신적 손해의 배상방법은 금전배상의 방법에 의함이 상당하다 할 것인 바, 나아가 피고가 위 원고에게 배상하여야 할 손해배상액수에 관하여 살피건대, 이 사건변론에 나타난 위 원고와 피고의 나이 및 교육정도, 기독교계 내부에서의 위치 및 저명도, 피고가 이 사건 기사를 집필하게 된 목적 및 경위, 이 사건 기사내용의 태양 및 집필방법 등 제반사정을 종합하면 피고는 위 원고에게 위자료로서 금 2,000,000원을 지급함이 상당하다 하겠다.

아울러 위 원고는 피고에게 위 위자료지급청구와 함께 청구취지기재와 같은 사죄광고의 게재를 구하고 있지만, 위에 나온 여러가지 사정에 비추어 볼 때 이는 위 원고의 명예를 회복시키는 방법으로서 적당한 처분이라고는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위 원고의

이 부분 청구는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3. 원고 교회의 청구에 대한 판단

원고 교회는 피고가 이 사건 기사내용을 집필함으로써 원고 박 이 당회장인 원고 교회가 마치 이단종교 내지 사교의 집단인 것처럼 묘사하여 한국내 굴지의 교회로서 대외적인 인상을 크게 손상하였으므로 피고에게 위자료 및 사죄광고의 게재를 청구하므로 살피건대, 위에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기사내용은 원고 박 의 불법과 비리, 개인적인 견해로서의 교리 및 성경해석에 관한 것이고, 위 원고가 비록 원고 교회의 당회장이라 하더라도 원고 교회는 비법인단체로서 대표자인 위 원고와 별개의 독자적인 법적 주체성과 인격을 가지고 있다 할 것이므로 피고가 위 원고에 대한 비행을 적시하였다고 하여 곧 바로 이것이 원고 교회에 대한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키는 것이라고 볼 근거가 없다 할 것이므로 원고 교회의 이 사건 청구는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도 없이 이유 없어 받아들이지 않는다.

4. 결론

그렇다면 피고는 원고 에게 위자료로서 금 2,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위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이 사건 소장부분 송달 익일임이 기록상 명백한 1983. 5. 1.부터 다 갚을 때까지 민사법정이율인 연 5푼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할 것이므로 위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의 범위내에서만 정당하여 이를 인용하고, 원고 교회의 피고에 대한 청구 및 원고 박 의 나머지 청구는 모두 이유 없어 각 기각하며, 소송비용의 부담에 관하여는 민사소송법 제89조, 제92조, 제93조를, 가집행선고에 관하여는 같은 법 제199조 제1항을 각 적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1983. 9. 30.

재판장 판사 조 열 래
판사 김 대 휘
판사 주 한 일

〈별지〉 사과문

대한예수교장로회 대성교회 박 목사 귀하

본인 현대종교사 발행인 겸 편집인인 탁 은 본인이 발간하는 월간지 「현대종교」

1983년 3월호와 1983년 4월호에 집필 게재한 대한예수교장로회 대성교회와 박 목사
 사에 관한 기사는, 대부분 확실한 증거 없이 일부 이탈 교인의 말만 믿고 사실을 오해
 하여 집필한 것으로서 이로 말미암아 믿음이 충만하고 건전한 신앙노선을 걷고 있는 대
 성교회와 신도와 신실한 복음전파에 몸바쳐온 박 목사에게 씻을 수 없는 누를 끼
 치게 되었음을 깊이 사죄하며 앞으로 현대종교지는 건전한 신앙생활을 위한 길잡이가
 될것을 맹세합니다.

1983. 4. .

현대종교 발행인

□

드라마 작가의 동의없이 비디오테이프를 複製販賣하는 行爲는 著作權侵害行爲에 해당한다

서울지방법원 남부지원 1983. 10. 21.자 판결(83가합7)

事實概要

드라마작가의 별도의 동의없이 방송국이 드라마 녹화작품을, TV방영이 아닌 비디
 오테이프로 복사하여 판매한 行爲는 작가들의 위 녹화작품에 대한 著作權 침해행위에
 해당한다는 1審判決이 나왔다.

서울지방법원 남부지원 제2민사부(재판장 安文泰 부장판사)는 1983년 10월 21일,
 韓雲史씨등 한국방송작가협회(회장 兪湖) 소속 극작가 16명이 한국방송공사(대표 李元
 洪)와 KBS방송사업단을 상대로 낸 「著作權 침해로 인한 손해배상등 청구소송」에서,
 「드라마가 연기자, 연출자, 기술진 등의 창작적 기여에 의해 이루어지는 종합저작물로
 서 방송국이 저작권을 주장할 수 있으나 그것은 극본을 토대로 한 것에 불과하므로,

작품에 대한 방송국측의 權利는 작가의 권리를 침해하지 않는 범위에서만 인정된다」고 밝히고, 한국방송공사와 KBS방송사업단은 방송사업단이 만들어 시판하고 있는 「TV 문학관」등 드라마 복제테이프 판매대금 가운데 10%인 2백88만6천6백82원을 작가들에게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방송작가들은 작년 12월 27일 KBS방송사업단이 1982년 1월부터 KBS방송프로그램인 「TV문학관」, 「현대입지전」, 「전설의 고향」, 「포도대장」, 「모닥불」 등으로 방영된 녹화테이프 69편을, 작가의 동의도 받지 않고 복사해 국내외에 판매했다고 주장, 손해배상금 5백77만3천3백64원을 지급하고 日刊紙에 사과광고를 게재하라고 訴訟을 냈었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작가들이 입은 손해는 복사필름 판매가격의 10% 정도가 타당하며, 청구액의 절반만 인정하고, 명예회복을 위한 조치는 손해배상으로 충분하므로, 사과광고까지 낼 필요는 없다고 판시했다.

이 判決은 드라마 작가의 극본에 대한 복제사용료를 지불하도록 한 첫 판결이다.

判 決 文

사 건 : 83가합7 손해배상

원 고 : 1. 정

서울

2. 이

위 같은 동

3. 홍

서울

4. 이

서울

5. 박

서울

6. 이

서울

7. 신

서울

8. 한

서울

9. 김

서울

10. 임

서울

11. 이

서울

12. 오

서울

13. 이

서울

14. 김

서울

15. 이

서울

16. 박

서울

원고들 소송대리인 변호사 민병국, 손건웅

피 고 : 1. 한국방송공사(韓國放送公社)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 1

대표자 사장 이 원 홍

2. 주식회사 한국방송사업단(韓國放送事業團)

위 같은 곳

대표자 대표이사 이 덕 주

피고들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 범 렬

변론종결 : 1983. 9. 16.

- 주 문 :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 정 ○○에게 금 58,000원, 같은 이 ○○에게 금 328,000원, 같은 홍 ○○에게 금 169,000원, 같은 이 ○○에게 금 794,500원, 같은 박 ○○에게 금 79,200원, 같은 이 ○○에게 금 9,800원, 같은 신 ○○에게 금 437,000원, 같은 한 ○○에게 금 287,500원, 같은 김 ○○에게 금 194,000원, 같은 임 ○○에게 금 32,700원, 같은 이 ○○에게 금 137,900원, 같은 오 ○○에게 금 33,100원, 같은 이 ○○에게 금 78,700원, 같은 김 ○○에게 금 55,082원, 같은 이 ○○에게 금 156,000원, 같은 박 ○○에게 금 11,200원 및 위 각 금원에 대한 1983. 1. 22부터 완제일까지 연 5분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2. 원고들의 나머지 청구를 각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이를 2분하여 그 1은 원고들의, 나머지는 피고들의 각 부담으로 한다.
4. 제1항에 한하여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 1. 피고들은 연대하여, (1) 원고 정 ○○에게 금 116,000원, (2) 같은 이 ○○에게 금 656,000원, (3) 같은 홍 ○○에게 금 338,000원, (4) 같은 이 ○○에게 금 1,589,000원, (5) 같은 박 ○○에게 금 158,400원, (6) 같은 이 ○○에게 금 19,600원, (7) 같은 신 ○○에게 금 874,000원, (8) 같은 한 ○○에게 금 575,000원, (9) 같은 김 ○○에게 금 388,000원, (10) 같은 임 ○○에게 금 65,400원, (11) 같은 이 ○○에게 금 275,800원, (12) 같은 오 ○○에게 금 66,200원, (13) 같은 이 ○○에게 금 157,400원, (14) 같은 김 ○○에게 금 110,164원, (15) 같은 이 ○○에게 금 312,000원, (16) 같은 박 ○○에게 금 22,400원 및 위 각 금원에 대한 1983. 1. 22.부터 완제일까지 연 5분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고,

2. 피고들은 서울에서 발간되는 일간지 동아일보지상에 피고들이 방송작가인 원고들의 저작권이 있는 방송작품을 저작권자의 동의를 받음이 없이 V.T.R. 녹화필름으로 복제하여 시판함으로써 원고들의 저작권을 부당하게 침해한 행위를 사과한다는 취지의 5호환자로 된 사과광고를 2회에 걸쳐 게재하라.

3. 소송비용은 피고들의 부담으로 한다는 판결과 제1항에 한한 가집행의 선고.

이 유 : 1. 원고들은 모두 방송극작가인데 피고 한국방송공사(이하 피고 공사라고 줄여 쓴다)로부터 케이.비.에스.티브이(KBS-TV)에 방영하기 위한 텔레비전 드라마의 극본을 써달라는 의뢰를 받고 별지일람표 저작일란 기재의 각 일자경 같은 일람표

작품명란 기재의 각 극본을 저작하여 피고 공사에게 제공한 사실, 피고 공사가 위 극본을 토대로 텔레비전 드라마를 제작하여 방영을 하는 한편 그 산하단체인 피고 주식회사 한국방송사업단(이하 피고 방송사업단이라고 줄여 쓴다)으로 하여금 위 드라마를 브이. 티. 알 테이프(VTR TAPE)에 복사하여 위 일람표 판매량란 기재의 수량을 같은 일람표 판매가액란 기재의 가액으로 각 판매케 한 사실, 피고 공사와 피고 방송사업단이 이와 같은 드라마를 복사하여 판매함에 있어 그 극본의 저작자인 원고들로부터 사전에 동의를 받거나, 그 저작권의 사용료를 별도로 지급하지 않은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2. 원고들은, 피고들이 저작자인 원고들의 동의 없이 위와 같이 텔레비전 드라마를 복사하여 판매함으로써 원고들의 저작권을 침해하였다고 주장함에 대하여, 피고들은, 원고들이 피고 공사와의 계약에 의하여 소정의 출연료를 지급받고 피고 공사가 원작자에게 저작권 사용료를 주고 방영승인을 얻은 작품을 극본화하거나 피고 공사가 요청하는 내용의 극본을 새로 써서 피고 공사에게 제공한 데 불과하므로 원고들은 위 극본을 피고 공사에게 교부함으로써 이에 관한 일체의 권리를 상실하는 것이며 피고 공사가 그 극본을 편집, 각색, 연출하여 텔레비전 드라마의 녹화작품을 완성한 이상 동 작품의 저작권은 피고 공사에게 있을 뿐이라고 다투므로 우선 피고 공사가 원고들이 저작한 극본에 기하여 텔레비전 드라마를 제작한 경우에 있어서 원고들에게 동 드라마에 대한 저작권이 있는지의 여부에 관하여 보기로 한다.

저작권법 제2조 및 제4조에 의하면, 저작자라 함은 표현의 방법 형식의 여하를 막론하고 학문 또는 예술의 범위에 속하는 일체의 물건인 저작물을 창작한 자를 지칭하고, 같은 법 제5조는 타인의 저작물을 그 창작자의 동의를 얻어 개작한 자는 원저작자의 권리를 해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저작자로 보며, 그 개작의 한 형태로서 원저작물을 영화화하는 방법에 의하여 변형, 복제하는 것을 들고 있음이 명백하고, 텔레비전 방송을 목적으로 제작되는 텔레비전 드라마의 녹화는 그 작성과정 등에 있어 다소 차이가 있기는 하나 저작권법상으로는 그 성질상 영화와 마찬가지로 취급함이 상당하다고 할 것인 바, 이 사건에 있어서와 같이 피고 공사가 원고들이 저작한 극본을 토대로 텔레비전 드라마를 제작한 경우에는 비록 그것이 연출자, 연기자, 촬영기사, 녹화담당자, 음악담당자, 장치담당자, 의상담당자 및 제작자 등의 창작적 기여(創作的 奇與)에 의하여 이루어지는 이른바 종합저작물로서 그 제작자가 이에 관하여 저작권을 갖게 된다고 하더라도 이는 원저작물인 극본을 변형, 복제하는 방법으로 개작한 것에 다름아닌 것이

므로 위 극본의 저작자인 원고들로서는 위 텔레비전 드라마의 녹화작품에 대하여 제1차적인 저작권을 보유한다 할 것이고 피고 공사의 동 작품에 대한 권리는 원고들의 저작권을 침해하지 않는 범위내에서만 인정되는 것이며(이른바 제2차 저작권), 원고들이 위 극본을 피고 공사의 축탁 또는 주문에 기하여 저작하였다 하여 그 결론을 달리할 수는 없다고 할 것이다.

그렇다면 원고들이 피고 공사의 축탁 또는 주문에 의하여 저작한 다음 이 사건 극본을 피고 공사에게 교부하는 행위에는 피고 공사로 하여금 동 극본을 토대로 텔레비전 드라마를 제작하여 그 녹화작품을 텔레비전 화면에 방영하는 것을 허용하는 의사가 당연히 포함되어 있다고 할 것이나 그렇다고 하여 이로써 원고들이 피고들에 대하여 원고들의 별도의 동의 없이 위 녹화작품을 텔레비전 방영이 아닌 다른 방법으로 복사하여 반포하는 행위까지 승락하였다고는 볼 수 없으므로 피고 공사와 피고 방송사업단이 제1차 저작권자인 원고들의 동의 없이 위 텔레비전 드라마의 녹화작품을 비디오 테이프에 복사하여 판매한 것은 원고들의 위 녹화작품에 대한 저작권 침해 행위에 해당한다고 할 것인즉 피고들은 이로 인하여 원고들이 입은 손해를 연대하여 배상할 의무가 있다고 할 것이다.

3. 그러므로 나아가 피고들의 손해배상 범위에 관하여 보건대, 원고들이 피고들의 위와 같은 저작권침해행위로 인하여 입은 재산적 손해액은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그 저작권사용료 상당액이라고 봄이 상당하다고 할 것인 바, 증인 의 증언에 변론의 전취지를 합쳐보면, 우리나라에 있어서는 아직 방송저작물의 저작권 사용료에 관하여 일반적인 기준이 정하여진 바는 없으나, 저서의 경우에는 그 판매가격의 10 내지 30% 상당액이, 레코드의 경우에는 그 판매가격의 10 내지 15% 상당액이 인세로서 그 저작권자에게 각 지급되고 있는 것이 일반 관행으로 되어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달리 반증이 없으므로 이와 같은 저작권 사용료가 지급되는 다른 분야에 있어서의 그 사용료의 요율에다 앞서 본 바와 같은 이 사건 저작권의 내용과 그 침해행위의 태양 및 정도 그밖에 제반사정을 아울러 보면, 피고들이 위 녹화작품을 복사 반포함에 있어서 제1차 저작권자인 원고들에게 지급하여야 할 저작권 사용료는 그 판매가격의 10% 상당액으로 정함이 상당하다고 할 것인즉, 결국 피고들이 원고들에게 배상하여야 할 액수는 별지일람표 판매가액란 기재 각 금액의 10%에 상당한 같은 일람표 배상액란 기재의 각 금액이 된다 할 것이다.

원고들은, 피고들이 원고들의 동의 없이 이 사건 텔레비전드라마의 녹화작품을 복사

하여 반포함으로써 원고들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하여 그 명예회복을 위한 조치로서 저작권 침해행위를 사과한다는 취지의 광고를 신문지상에 게재할 것을 청구하고 있으나, 위에서 인정한 바에 의하면 이 사건에 있어서 피고들은 아무런 근거도 없이 원고들의 저작권을 전면적으로 침해한 것이 아니라, 원고들로부터 일단 제작과 방영의 승락을 받은 텔레비전드라마의 녹화물을 원고들의 동의 없이 복사반포한 데 불과하여 그 저작권 침해의 정도가 비교적 경미할 뿐더러 이로 인하여 원고들이 그 명예에 관하여 입은 손해도 그다지 크다고는 볼 수 없으며 그 저작권 사용료에 상당한 금전으로 이를 배상하면 족하다고 할 것이니(원고들은 이로 인한 인격권의 침해를 이유로 하는 위자료 청구를 별도로 하지 않고 있다) 이와 같은 금전적 배상 외에 그 명예회복을 위한 조치로서 신문지상에 사죄광고의 게재까지 명할 필요는 없다고 인정되므로 이 부분에 관한 원고들의 청구는 이유가 없다.

4. 따라서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 정 에게 금 58,000원, 같은 이 에게 금 328,000원, 같은 홍 에게 금 169,000원, 같은 이 에게 금 794,500원, 같은 박 에게 금 79,200원, 같은 이 에게 금 9,800원, 같은 신 에게 금 437,000원, 같은 한 에게 금 287,500원, 같은 김 에게 금 194,000원, 같은 임 에게 금 32,700원, 같은 이 에게 금 137,900원, 같은 오 에게 금 33,100원, 같은 이 에게 금 78,700원, 같은 김 에게 금 55,082원, 같은 이 에게 금 156,000원, 같은 박 에게 금 11,200원 및 위 각 금원에 대하여 원고들이 청구하는 바에 따라 이 사건 소장부분이 피고들에게 송달된 이후인 1983. 1. 22부터 완제일까지 연 5분의 비율에 의한 민사법정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할 것이므로 원고들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각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각 기각하며, 소송비용의 부담에 관하여는 민사소송법 제89조, 제92조, 제93조를, 가집행의 선고에 관하여는 소송촉진등에 관한 특례법 제6조를 각 적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1983. 10. 21.

□

재판장 판사 안 문 태
판사 이 교 림
판사 여 상 훈

手記라 하여 原文의 修正없이 他人을 誹謗하는 내용의 글을 雜誌에 게재했다면 雜誌社는 名譽毀損에 대한 責任을 免할 수 없다

서울지방법원 남부지원 1984. 4. 4.자 판결(83가합3123)

서울고등법원 1984. 12. 11.자 판결(84나1789)

대법원 1988. 10. 11.자 판결(85다카29)

事實概要

잡지에서 특정인물의 행위에 대해 비방 또는 인신공격적인 글을 실을 때는 사전에 진실 여부를 충분히 조사, 검토해야 함에도 그 글이 手記라 하여 原文대로 게재해 타인의 명예를 훼손시킨 경우 잡지사는 그 명예훼손에 대해 책임이 있다고 하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제1부(주심 安又萬대법관)는 지난 11일 李 변호사가 주식회사 學園社를 상대로 낸 「위자료등」사건 상고심에서 이같이 판시, 피고의 상고를 기각하고 피고는 원고에게 1천만원을 지급하라는 원심판결을 인용했다.

李변호사는 피고회사에서 발행하는 「主婦生活」지가 최모씨의 수기를 1982년 7월호에 게재한 바 있는데 이 수기는 1981년 10월 최씨가 자신을 상대로 한 소송에 대한 것이 주된 내용으로 그 표현이 인신공격적이거나 인격을 비방하는 허위의 것으로서 자신의 명예를 훼손했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이날 판결에서 「신문에 비해 신속성의 요청이 덜한 잡지에 인신공격의 표현으로 비난하는 내용의 기사를 게재함에는 내용의 진실 여부에 대해 충분한 조사를 거쳐야 할 것인데도 전혀 검토하지 않고 타인을 비방하는 내용의 글을 그대로 잡지에 게재하였다면 잡지사는 명예훼손에 대한 책임을 면할 수 없다」고 밝혔다.

그런데 이 사건은 「主婦生活」이 동 수기를 게재하자 원고李씨가 법원에 위자료 1억 원을 요구하는 위자료청구소송을 냈었다. 이에 대해 서울지방법원 남부지원(제3민사부 재판장 송재헌 부장판사)은 1984년 4월 4일 원고에게 1천만원의 위자료를 지급하라고 판결했었다.

원고, 피고 쌍방은 이에 불복 항소했으나 1984년 12월 11일 서울고등법원(제4민사부 재판장 천경송 부장판사)은 원고, 피고 쌍방의 항소를 기각했다. 피고는 이에 불복, 대법원에 상고했었다.

1審 判決文

사 건 : 83가합3123 위자료등

원 고 : 이

서울

풍전빌딩 202호

피 고 : 주식회사 學園社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 44의 37

대표이사 김 영 수

소송대리인 변호사 박 상 기

변론종결 : 1983. 3. 21.

주 문 : 1. 피고는 원고에게 금 10,000,000원 및 이에 대한 1984. 1. 13부터 완제일까지 연 5푼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이를 10분하여 그 9는 원고의, 그 나머지는 피고의 각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 피고는 원고에게 금 100,000,000원 및 이에 대한 이 사건 소장송달일로부터 완제일까지 연 2할5푼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라는 판결과 가집행의 선고.

이 유 : 피고(1983년 8월 8일 상호 변경전에는 주식회사 주우이었다)가 월간 여성

지인 「주부생활」을 발행하고 있는 사실과 위 「주부생활」 1982년 7월호에 소외 최의 수기가 게재된 사실에 관하여는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고,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강제1호증의 1, 2(잡지표지와 내용)의 기재와 같은 강제11호증의 6(피의자 신문조서)의 일부 기재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위 잡지 1982년 7월호의 182면에서 191면에 걸쳐 『한국 최초 변호사를 상대로 승소한 중학 중퇴 기능공의 법정투쟁기』, 『위대한 소시민의 승리였습니다』라는 제목 아래 게재된 위 수기의 내용은 위 최 으로부터 소송수행을 위임받은 변호사인 원고가 위임받은 사무를 제대로 처리하지 못하였다는 이유로 위 최 이 원고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하여 승소판결을 받기까지의 과정과 위 소외인이 원고에게 위임하였던 동인의 서울특별시에 대한 소송의 목적물인 위 소외인이 점유사용하던 서울특별시 소유의 서울 용산구 한남동 필지의 토지에 얽힌 분쟁등에 관한 것으로서 『변호사의 잘못 드러나 나는 드디어 승소했다』, 『수임변호사가 날짜까지 변조해가며 나를 패소케 하였다』, 『법을 잘 아는 사람에게 법 몰라 이용당한 꼴』 등의 소재목이 위 수기의 중간 중간에 붙여져 게재된 사실, 위 수기에는 (1)원고가 위 최 으로부터 위임받은 소송업무를 수행하면서 저지른 잘못에 관하여 「내 땅을 찾도록 부탁한 변호사는 내가 배우지 못했다는 것을 악이용하면서 나를 도와주기는 커녕 그동안 내가 해놓은 온갖 노력조차 허사로 돌아가게 망쳐 놓았다」, 「세상의 양심이 아무리 메달라 버렸다 할지라도 평화의 수호자로 마지막까지 남아 있어야 할 법조인이 그것도 역을하고 무지한 사람의 일을 변호해 주어야 하는 변호사가 어쩌면 거꾸로 상대방의 입장을 유리하게 도와줄 수 있단 말인가」, 「중동으로 떠나기 전 법원에 제출했던 두가지 소장들 변호사가 스스로 취소해 버리고 항소조차 안했음을 알았다」, 「도대체 판사까지 지낸 변호사가 왜 그랬을까 싶을 정도로 자기의 손님을 고의로 불리한 상황에 몰아다 놓은 흔적이 역력했던 것이다」, 「그런데 그는 엉뚱하게 점유기간을 1976년 집이 철거된 때까지로 하기 위해 화초단지공사는 1975년에 했다고 허위로 준비서면을 냈던 것이다」, 「원고측인 변호사가 관할법정에 전혀 출석도 안하니 피고인 서울시 주장을 그대로 재판부가 받아 들였고 준비서면으로 변론조차 한마디 안하였으며 그외에도 너무나 당연한 것들에 있어서도 아무런 처리를 안하며 동시에 피고측에 유리하도록 일을 끌어주는 역할까지 했으니 이를 두고 어떻게 사회정의를 실현하는 임무를 수행했다 하겠는가」 등의 기재부분과, (2)위 서울 용산구 한남동 필지의 토지를 둘러싼 원고의 비리에 관하여, 「주유소측의 변호사와 이변호사(이 사건 원고) 사이에 합의가 이루어졌는데 그 내용이 바로 이 일에 전

혀 관계 없는 우리집 땅을 침해함으로써 해결을 보기로 되었던 것이다», 「즉 나의 터로 7평만큼 밀고 들어 오면 주유소측도 옆집측도 어느 쪽도 손해를 보지 않는다고 결론짓고 구청 직원과 그들 모두가 서로 짜고 매수신청서를 내게 오히려 반려해 버린 것이다», 「이변호사는 변호사대로 옆집과 주유소와 편의상 합의한 대로 어떻게든 나의 법률상 권리를 해치고자 온갖 일을 다 했던 것이다», 「떠나기 전 나는 이일재 변호사에게 토지인도청구사건의 소송을 대리해 달라고 위임해 놓았다. 나는 이변호사가 그 일에 가담했다고는 생각지도 못했고 오히려 내가 그 집에서 20년 이상 살았다는 것을 다른 어느 변호사보다도 더 잘 알 것이라 믿고 그에게 위임했던 것이다», 「애당초 내 건을 수임한 것이 위장 수임이었고 몇몇 관계자들과 결탁되어 있었다는 것을 뻔히 알 수 있는 것이다」 등의 기재부분이 포함되어 있는 사실 및 피고는 위 수기가 게재된 위 잡지 1982년 7월호 100,000부 내외를 발행하여 전국에 반포한 사실을 각 인정할 수 있고 달리 반증 없다.

원고는 피고가 위 최 의 수기를 그가 발행하는 위 주부생활 잡지에 게재하여 이를 반포함으로써 원고의 명예를 훼손하였다고 주장하여 이로 인한 원고의 정신적 고통을 위자하기 위한 위자료로서 금 100,000,000원의 지급을 구함에 대하여, 피고는 위 주부생활 잡지에 게재된 위 최 의 수기는 그 내용이 공공의 이해에 관한 진실한 것이므로 오로지 공익을 도모할 목적으로 게재한 것일 뿐만 아니라, 가사 위 수기의 내용이 진실한 것이 아니라 하더라도 피고가 위 수기의 내용을 진실한 것이라고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었다고 할 것이므로 위법성이 없어 피고에게는 이로 인한 아무런 책임이 없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강제3호증의 5(판결), 각 기재된 일자의 신문기사인 점에 관하여 다툼이 없는 을제2호증의 1 내지 4(각 신문), 증인 의 증언에 의하여 진정성립이 인정되는 강제3호증의 2(소장)의 각 기재와 앞에서 든 강제11호증의 6, 각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같은 호증의 5(피의자 신문조서), 같은 호증의 11(진술조서), 을제1호증의 6, 7(각 피의자 신문조서), 같은 호증의 8(진술조서)의 각 일부 기재 및 증인 백 의 일부 증언에 변론의 전취지를 합쳐보면, 소외 최 은 1981년 10월 8일경 원고를 상대로 하여 (가)원고가 위 소외인으로부터 위 소외인이 서울특별시를 상대로 제기한 서울고등법원 80나3246호 손해배상등 청구사건을 수임하여 그 소송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써 위임사무를 처리하지 아니한 결과 위 소송에서 패소하였음을 원인으로 위 소외인이 원고에게 그 사건의 착수금으로 지급한 금 250,000원 상당의 손해와 (나)원고가 또한 위 최 으로부터

위 소외인이 서울특별시를 상대로 제기한 서울민사지방법원 80가합5058호 토지인도등 청구사건을 수임하고도 소송위임장도 내지 않고 소각하판결이 났는데도 항소도 하지 아니하여 소송위임에 따른 의무를 위반하였음을 원인으로 위 소외인이 원고에게 그 사건의 착수금으로 지급한 금 320,000원 상당의 손해등 합계 금 770,000원의 배상을 구하는 서울민사지방법원 81가소12004호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하여, 1982년 6월 10일 같은 법원으로부터 위 (가)부분 청구에 관하여는 원고가 위임의 본지에 따라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를 다하지 못하였다는 점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하여 위 최 의 청구를 기각하고, 위 (나)부분 청구에 관하여는 위 최 이 서울특별시를 상대로 제기한 서울민사지방법원 80가합5058호 토지인도등 청구사건의 소송대리를 1980년 9월 26일 원고에게 위임하면서 착수금 500,000원 중 금 320,000원을 지급하였는데, 원고는 위 사건의 소송대리 사무를 전혀 처리하지 아니하였고 위 소송에서는 위 최 이 소각하판결을 선고받았는데도 항소를 하지 아니하여 확정되게 하여 원고가 위와 같은 위임사무처리 의무를 위반하였다는 이유로 위 최 이 지급한 착수금 320,000원과 위자료 금 50,000원을 합한 금 370,000원의 지급을 명하는 일부 승소판결을 받았던 사실, 위와 같은 판결이 선고되자, 1982년 6월 11일자 중앙일보 사회면에 『변호사 태만으로 패소하면 수임료 돌려줘야』라는 제목으로 「위 최 이 원고를 상대로 하여 소송수행을 잘못했다는 이유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 승소판결을 받았다」, 「이변호사는 위 토지인도청구사건(서울민사지방법원 80가합5058호)에 있어서 한번도 법정예 나가거나 준비서면을 제출하지 않아 1심에서 소각하판결을 받아 패소했는데도, 원고는 항소조차 하지 않고 이를 확정시켰으며, 위 서울고등법원 80나3246호 손해배상사건을 처리함에 있어서는 예비적 청구는 취하하고 엉뚱하게 상대방인 서울특별시측에 유리한 준비서면을 제출하여 이것 역시 패소토록 했다고 주장했었다」, 「위 최씨(최

)는 이변호사(원고)를 상대로 한 위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위 두사건의 수임료 금 570,000원(토지인도사건 320,000원, 손해배상사건 250,000)과 위자료등 금 770,000원을 청구했으나, 재판부는 이중 금 370,000원(토지인도사건 수임료 320,000원, 위자료 금 50,000원)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증거가 없다고 인정하지 않았다」라는 내용의 기사가 보도되었고, 그 다음 날짜 조선일보, 서울신문 등 각 일간신문에 같은 내용의 기사가 보도되었으며, 위 중앙일보에서는 신문사설에서까지 위 사건을 취급하였던 사실, 위와 같은 보도로 세인의 관심이 집중되고 위 주부생활잡지의 독자들로부터 이에 대한 자세한 내용을 알고 싶다는 요청이 있자 피고 회사 편

집부에서는 위 최 의 수기를 「주부생활」 1982년 7월호에 실기로 결정하는 한편 위 편집부 기자인 소외 유 로 하여금 위 최 의 수기를 받아오도록 지시하여 위 유 이 1982년 6월 17일경 위 최 을 찾아가 이를 부탁한 사실, 위 유 이 같은 해 6월 21일경 위 최 으로부터 원고를 받아 검토한 결과 분량이 많고 문맥이 맞지 않으며 원고에 대한 과격한 표현이 많아 위 최 의 동의를 얻어 위 수기의 요지와 취지를 해치지 아니하는 범위내에서 문장을 다듬고 수정을 한 후 타이틀과 소재목을 붙인 다음 피고 회사에서는 같은 해 6월 25일경 위 최 의 수기가 담긴 「주부생활」을 같은 해 7월호를 인쇄하여 같은 해 7월 1일 이를 전국 일원에 반포한 사실은 이를 각 인정할 수 있다.

그러나 다른 한편 위 강제1호증의 1,2, 강제11호증의 5,6, 을제1호증의 6,7과 각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강제4호증(결정), 강제5호증의 1(판결), 같은 호증의 2(확정증명원), 강제11호증의 4(진술조서), 강제12호증(증인신문조서 등본), 각 원본 존재 및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강제8호증의 5(변론조서 사본), 같은 호증의 6(판결사본), 강제9호증의 6, 강제10호증의 4(각 변론조서 사본), 각 증인 의 증언에 의하여 진정성립이 인정되는 강제8호증의 2(메모), 같은 호증의 3(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정정신청), 강제9호증의 2(초고), 같은 호증의 5(청구취지 및 원인 정정신청), 강제10호증의 3(소송위임장)의 각 기재에 변론의 전취지를 합쳐보면, 원고가 1980년 9월 26일경 위 최 으로부터 위 소외인의 서울특별시를 상대로 제기한 서울민사지방법원 80가합5058호 토지인도등 청구사건에 관하여 수임을 한 후 위 최 으로부터 재판부의 석명촉구가 있었다는 말을 듣고 위 사건관계기록과 원고가 역시 위 최 으로부터 수임한 위 소외인의 서울특별시에 대한 서울고등법원 80나3264호 손해배상등 청구사건의 기록을 검토한 결과 위 80가합5058호 사건은 위 80나3264호 사건의 예비적 청구와 그 청구가 중복되어 2중의 소로서 부적합한 것으로 보여 위 최 에게 그 취지를 설명하고, 위 서울민사지방법원 80가합5058호 토지인도등 사건의 1980년 10월 16일 변론기일에는 위 최 이 직접 출석하여 변론하되 재판부의 석명촉구가 여전하면 더 이상 위 사건 소송 수행을 하지 않고 그대로 종결짓기로 합의하고 위 최 이 위 변론기일에 직접 출석했으나 위 소송이 위 80나3264호 사건의 예비적 청구와 중복소송관계에 있는 것이 아니냐는 취지의 재판부의 석명촉구가 있자 위 최 은 2중의 소로서 부적법하다는 원고의 의견에 동의하여 원고는 위 사건의 소송이행을 하지 않고 나머지 착수금을 받지 않는 대신 위 최 이 별도로 서울특별시를 상대로 제기한 서울고등법원

80구438호 토지지목변경처분취소청구사건을 수임하여 이를 처리하여 주기로 약정하고 위 소송업무를 수행하였으며, 위 80가합5058호 사건은 1980. 11. 13. 원고가 예상한 대로 위 80나3264호 사건의 예비적 청구와 중복제소라는 이유로 소각하판결이 선고된 사실, 위 81가소12004호 사건의 제1심판결 중 그 사건의 피고인 원고 패소부분에 대하여 원고가 항소를 제기하자 그 항소법원인 서울민사지방법원은 1983. 3. 25. 위와 같은 이유로 원심판결의 원고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이 부분에 대한 위 최 의 청구를 기각하는 판결(같은 법원 82나1235판결)을 선고하고, 그 시경 위 판결이 확정된 사실, 일간신문 지상에는 위 서울민사지방법원 81가소12004호 손해배상청구사건 중 위 최 의 패소부분이 있었다는 점 및 그 내용이 보도되었음에 반하여 위 주부생활 1982년 7월호에는 위 수기의 내용에는 물론 그밖의 편집자의 주해등 형식에 의하여서도 이러한 점에 관한 언급이 없었던 사실 및 피고는 위 수기의 게재에 즈음하여 위 수기의 내용의 진실성에 관하여 원고에게 확인하지는 않았던 사실을 각 인정할 수 있는 바, 이러한 사실들에 위 수기의 내용이 일간신문 지상에 보도된 기사내용보다 더 나아가 원고가 상대방 대리인과 공모하여 의뢰인인 위 최에게 불이익을 주기로 하였다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는 점을 합쳐보면 피고의 위 수기 게재가 이미 일간신문 지상에 위와 같은 기사가 보도된 후에 된 것이고, 「주부생활」잡지의 독자들의 요청에 의한 것이었을 뿐만 아니라 수기의 형식을 취하고 과격한 표현을 일부 수정하여 게재한 것이라고 하더라도 그것이 진실과는 다른 것이고 원고에게 확인하거나 변명의 기회조차 부여하지 아니한 채 마치 위 최 이 위 소송과정에서 위 수기에 서술한 내용이 포함된 주장을 하여 그 주장이 법원에 의하여 그대로 받아들여져 원고가 전부 패소한 판결이 선고확정된 것처럼 그 독자들이 오인할 수 있게 한 것인 이상 위와 같은 사정만으로는 피고가 위 수기를 진실에 터잡아 오로지 공공의 이익을 도모할 목적으로 게재하였다거나 피고가 그 수기의 내용을 진실한 것이라고 믿을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것이라고 할 수 없으며, 작성자 또는 진술인의 이 점에 관한 견해를 기재 또는 진술한 것에 불과한 을제1호증(불기소결정), 같은 호증의 2(경위서), 같은 호증의 4, 5(각 진술서), 같은 호증의 6, 7(각 피의자 신문조서), 같은 호증의 9(각 결정), 같은 호증의 10(재항고에 대한 의견서), 갑제11호증의 5, 6(각 피의자 신문조서)의 각 일부 기재와 증인 백 의 일부 증언은 피고의 위 주장을 뒷받침할 수 있는 자료가 되지 못하고 달리 이러한 자료가 없으니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그렇다면 피고는 그가 발행하는 「주부생활」잡지의 원고에 대한 위와 같은 내용의 최

의 수기를 게재하여 이를 반포함으로써 원고에 대한 사회적 직업적 평가를 저하시켰으므로 이로 인하여 원고가 입은 정신적 고통을 금전으로 위자할 의무가 있다고 할 것인 바, 나아가 위자료 액수에 관하여 보건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원고의 연령, 신분, 교육정도, 원고의 법조계에서의 위치 및 저명도, 피고가 이 사건 기사를 집필하게 된 목적 경위 및 위 잡지의 발행부수, 위 기사를 읽은 독자들의 반응 등 제반사정을 참작하면 피고는 위자료로서 금 10,000,000원을 지급함이 상당하다 할 것이다.

따라서 피고가 이행의무의 존부와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이 사건에 있어서 피고는 원고에게 위 금 10,000,000원 및 이에 대한 이 사건 소장부분이 피고에게 송달된 다음날임이 기록상 명백한 1984년 1월 13일부터 완제일까지 민법이 정한 연 5푼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할 것이므로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그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며, 소송비용의 부담에 관하여는 민사소송법 제89조, 제92조를 적용하고, 변론의 전취지에 의하면 가집행의 선고는 이를 하지 아니함이 상당하다고 인정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1984. 4. 4.

재판장	판사	송	재	현
	판사	공	재	한
	판사	이	현	승

2審 判決文

사 건 : 84나1789 위자료등

원고, 피항소인 겸 항소인 : 이

서울

피고, 항소인 겸 피항소인 : 주식회사 학원사(學園社)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 44의 37

대표이사 김 영 수

소송대리인 변호사 박 상 기

변론종결: 1984. 11. 13.

원 판 결: 서울지방법원 남부지원 1984. 4. 4 선고, 83가합3123 판결.

주 문: 1. 원고 및 피고의 항소를 각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각자 부담으로 한다.

3. 원판결 주문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금 100,000,000원 및 이에 대한 이 사건 소장송달의 다음 날부터 완제일까지 연 2할5푼의 율에 따른 금원을 지급하라.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라는 판결 및 가집행선고.

항소취지: (원고의 항소취지) 원판결의 원고 패소부분 중 다음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원에 해당하는 부분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금 90,000,000원 및 이에 대한 1984. 1. 13.부터 완제일까지 연 2할5푼의 율에 따른 금원을 지급하라. 소송비용은 1, 2심 모두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라는 판결 및 가집행선고.

(피고의 항소취지) 원판결 중 피고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이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1, 2심 모두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원고는 서울 통합변호사회 소속 변호사로서 법률사무소를 개설하여 각종 법률사무를 수행하고 있고 피고(1983. 8. 8 상호변경전에는 주식회사 주우이었다)는 주부생활등 잡지의 발행 및 판매 등 출판업을 영위하는 법인으로서 월간여성지인 「주부생활」을 발행하고 있는 사실, 피고가 발행하는 위 「주부생활」 1982. 7월호의 182면에서 191면에 걸쳐 『한국최초로 변호사를 상대로 승소한 중학중퇴 기능공의 법정투쟁기』 『위대한 소시민의 승리였습니다』라는 제목 아래 소외 최 의 수기가 기재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고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강제1호증의 1, 2(잡지표지 및 내용), 강제6호증의 1, 2, 강제7호증(각 판결 정본), 강제11호증의 6(피의자신문조서)의 각 기재에 변론의 전 취지를 종합하면 위 「주부생활」 1982. 7월호에 게재된 소외 최 의 수기내용은 위 최 으로부터 소송수행을 위임받은 변호사인 원고가 위임받은 사무를 제대로 처리하지 못하였다는 이유로 위 최 이 원고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하여 승소판결을 받기까지의 과정과 위 소외인의 서울특별시 소유의 서울 용산구 한남동 필지의 토지를 점유 사용함으로써 야기된 토지에 얽힌 분쟁등에 관하여 서울특별시를 상대로 제기한 소송을 원고에게 위임한 사건내용에 관한 것으로서 『변호사의 잘못 드러나 나는 드디어 승소했다』, 『수임변호사가 날짜까지 변조해가며 나를 패소케 하였다』, 『법을 잘 아는 사람에게 법 몰라 이용당한 꼴』 등의 소제목이

위 수기의 중간 중간에 붙여져 게재된 사실, 위 수기에는 (1) 원고가 위 최 으로부터 위임받은 소송업무를 수행하면서 저지른 잘못에 관하여 「내 땅을 찾도록 부탁한 변호사는 내가 배우지 못했다는 것을 악이용하면서 나를 도와주기는 커녕 그 동안 내가 해놓은 온갖 노력조차 허사로 돌아가게 망쳐놓았다」, 「나는 그래서 그를 고소했다. 그의 잘못을 공정히 판단해 달라고」, 「세상의 양심이 아무리 메말라 버렸다 할지라도 평화의 수호자로 마지막까지 남아 있어야 할 법조인이 그것도 역을하고 무지한 사람의 일을 변호해 주어야 하는 변호사가 어찌면 거꾸로 상대방의 입장을 유리하게 도와줄 수 있단 말인가」, 「중동으로 떠나기 전 법원에 제출했던 두가지 소장을 변호사가 스스로 취소해 버리고 항소조차 안했음을 알았다」, 「도대체 판사까지 지낸 변호사가 왜 그랬을까 싶을 정도로 자기의 손님을 고의로 불리한 상황에 몰아다 놓은 흔적이 역력했던 것이다」, 「그런데 그는 엉뚱하게 점유기간을 1976년 집이 철거된 때까지로 하기 위해 화초단지공사는 1975년에 했다고 허위로 준비서면을 냈던 것이다」, 「원고측인 변호사가 관할 법정에 전혀 출석도 안하니 피고인 서울시 주장을 그대로 재판부가 받아들였고 준비서면으로 변론조차 한마디 안하였으며 그외에도 너무나 당연한 것들에 있어서도 아무런 처리를 안하며 동시에 피고측에 유리하도록 일을 끌어주는 역할까지 했으니 이를 두고 어떻게 사회정의를 실현하는 임무를 수행했다 하겠는가」등의 기재부분과, (2) 위 서울 용산구 한남동 필지의 토지를 둘러싼 원고의 비리에 관하여, 「주유소측의 변호사와 이변호사(이 사건 원고) 사이에 합의가 이루어졌는데 그 내용이 바로 이 일에 전혀 관계 없는 우리집 땅을 침해함으로써 해결을 보기로 되었던 것이다」, 「즉 나의 터로 7평만큼 밀고 들어오면 주유소측도 옆집측도 어느쪽도 손해를 보지 않는다고 결론짓고 구청직원과 그들 모두가 서로 짜고 매수신청서를 내게 오히려 반려해 버린 것이다」, 「이변호사는 변호사대로 옆집과 주유소와 편의상 합의한 대로 어떻게든 나의 법률상 권리를 해치고자 온갖 일을 다했던 것이다」, 「떠나기 전 나는 이 변호사에게 토지인도청구사건의 소송을 대리해 달라고 위임해 놓았다. 나는 이변호사가 그 일에 가담했다고는 생각지도 못했고 오히려 내가 그집에서 20년 이상 살았다는 것을 다른 어느 변호사보다도 더 잘 알 것이라 믿고 그에게 위임했던 것이다」, 「애당초 내 건을 수임한 것이 위장수임이었고 몇몇 관계자들과 결탁되어 있었다는 것을 뻔히 알 수 있는 것이다」 등의 기재부분이 포함되어 있는 사실 및 피고는 위 수기가 게재된 위 잡지 1982. 7월호 100,000부 내외를 발행하여 전국에 반포한 사실을 각 인정을 할 수 있고 달리 반증 없다.

원고는 피고가 허위내용으로 가득찬 소외 최 ○○의 수기를 그가 발행하는 주부생활 잡지에 게재하여 이를 반포함으로써 원고의 명예를 훼손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원고의 인격권 침해로 인한 정신적 고통을 위자하기 위하여 위자료로 금 100,000,000원의 지급을 구한다고 주장함에 대하여, 피고는 주부생활 잡지에 게재된 최 ○○의 수기는 동인이 법률전문가인 원고를 상대로 소송하면서 일어났던 일과 보고 느끼었던 일을 토대로 자신의 체험을 글로 표현한 것이고 피고가 그 글을 잡지에 게재한 것 뿐인데 작자의 체험을 그대로 적은 수기를 게재한 것만으로는 원고의 명예를 훼손하였다고 볼 수 없고 또 피고가 그 수기를 잡지에 게재함에 있어 수기와 같은 내용의 기사가 도하 일간신문에 보도되어 이미 세인의 이목을 집중시키고 있었고 수기의 내용이 전체적으로 보아 사실과 합치되고 있었으므로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그 내용을 게재한 것이고 가사 그 수기의 내용이 지엽적인 부분에서 원고의 명예를 훼손할 여지가 있는 문귀와 문투를 사용하고 있다 하더라도 피고가 위 수기의 내용을 진실한 것이라고 믿을 만한 정당한 사유가 있었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는 원고의 명예훼손에 대한 위법성이 있다고 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위자료 지급은 훼손된 명예를 회복하기 위한 적절한 방법이라고 볼 수 없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위자료 명목의 손해배상금을 지급할 책임이 없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앞서 나온 강제11호증의 6,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강제3호증의 5(판결), 강제11호증의 5(피의자신문조서), 같은 호증의 11(진술조서), 을제1호증의 6, 7(각 피의자신문조서), 같은 호증의 8(진술조서), 신문기사인 점에 관하여 다툼이 없는 을제2호증의 1 내지 4(각 신문), 원심증인 ○○○의 증언에 의하여 진정성립이 인정되는 강제3호증의 2(소장), 같은 호증의 3(준비서면)의 각 기재와 원심증인 ○○○, ○○○의 각 증언(다만 위 각 증거 중 뒤에 믿지 않는 부분은 제외)에 변론의 전 취지를 종합하면 소외 최 ○○은 1981. 10. 8.경 원고를 상대로 하여 (가)원고가 위 소외인으로 부터 동 소외인이 서울특별시를 상대로 제소한 서울고등법원 80나 3264호 손해배상등 청구사건을 수임하여 그 소송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써 위임사무를 처리하지 아니한 결과 위 소송에서 패소하였음을 원인으로 위 소외인이 원고에게 그 사건의 착수금으로 지급한 금 250,000원 상당의 손해와 (나) 위 소외인이 서울특별시를 상대로 제기한 서울민사지방법원 80가합5058호 토지인도등 청구사건을 원고가 수임하고도 소송위임장도 내지 않고 소각하판결이 났는데도 항소도 하지 아니하여 소송위임에 따른 의무를 위반하였음을 원인으로 위 소외인이 원고에게 그 사건의 착수금으로 지급한 금 320,000원 상당의 손해등 합계금 770,000원의 배상을 구하는 서울민사

지방법원 81가소12004호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하여, 1982. 6. 10. 같은 법원으로부터 위 (가)부분 청구에 관하여는 원고가 위임의 본지에 따라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다하지 못하였다는 점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하여 위 최 의 청구를 기각하고, 위 (나)부분 청구에 관하여는 위 최 이 서울특별시를 상대로 제기한 서울민사지방법원 80가합5058호 토지인도등 청구사건의 소송대리를 1980. 9. 26. 원고에게 위임하면서 착수금 500,000원 중 금 320,000원을 지급하였는데, 원고는 위 사건의 소송대리 사무를 전혀 처리하지 아니하였고 위 소송에서는 위 최 이 소각하판결을 선고받았는데도 항소를 하지 아니하여 확정되게 하여 원고가 위와 같은 위임사무처리 의무를 위반하였다는 이유로 위 최 이 지급한 착수금 320,000원과 위자료 금 50,000원을 합한 금 370,000원의 지급을 명하는 일부 승소판결을 받았던 사실, 위와 같은 판결이 선고되자, 1982. 6. 11.자 중앙일보 사회면에『변호사 태만으로 패소하면 수임료 돌려줘야』라는 제목으로 「위 최 이 원고를 상대로 하여 소송수행을 잘못했다는 이유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 승소판결을 받았다.」, 「이번호사는 위 토지인도청구사건(서울민사지방법원 80가합5058호)에 있어서 한번도 법정에 나가거나 준비서면을 제출하지 않아 1심에서 소각하 판결을 받아 패소했는데도, 원고는 항소조차 하지 않고 이를 확정시켰으며, 위 서울고등법원 80나3264호 손해배상사건을 처리함에 있어서는 예비적 청구는 취하하고 엉뚱하게 상대방인 서울특별시측에 유리한 준비서면을 제출하여 이것 역시 패소토록 했다고 주장했었다.」, 「위 최씨(최)는 이변호사(원고)를 상대로 한 위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위 두사건의 수임료 금 570,000원(토지인도사건 320,000원 손해배상청구사건 250,000원)과 위자료등 금 770,000원을 청구했으나, 재판부는 이중 금 370,000원(토지인도사건 수임료 320,000원, 위자료 금 50,000원)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증거가 없다고 인정하지 않았다.」라는 내용의 기사가 보도되었고, 그 다음날 짜 조선일보, 서울신문 등 각 일간신문에 같은 내용의 기사가 보도되었으며, 위 중앙일보에서는 신문사설에서까지 위 사건을 취급하였던 사실, 위와 같은 보도로 세인의 관심이 집중되고 위 주부생활 잡지의 독자들로부터 이에 대한 자세한 내용을 알고 싶다는 요청이 있자 피고회사 편집부에서는 위 최 의 수기를 「주부생활」 1982. 7.호에 실기로 결정하는 한편 위 편집부 기자인 소외 유 으로 하여금 위 최 의 수기를 받아오도록 지시하여 위 유 이 1982. 6. 17.경 위 최 을 찾아가 이를 부탁한 사실, 위 유 이 같은 해 6. 21경 위 최 으로부터 원고를 받아 검토한 결과 분량이 많고 문맥이 맞지 않으며 원고에 대한 과격한 표현이 많아 위 최 의 동의를 얻어

위 수기의 요지와 취지를 해하지 아니하는 범위내에서 문장을 다듬고 수정을 한 후 최 의 사진을 매장마다 넣어 앞서 본 바와 같은 타이틀과 소제목을 붙인 다음 피고회 사에서는 같은 해 6. 25경 위 최 의 수기가 담긴 「주부생활」 1982. 7.호를 인쇄하여 같은 해 7. 1.경 이를 전국 일원에 반포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달리 위 인정을 좌우할 증거가 없다.

그러나 다른 한편 앞서 나온 강제1호증의 1, 2, 강제11호증의 5, 6, 을제1호증의 6, 7과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강제4호증(결정), 강제5호증의 1(판결), 같은 호증의 2(확정증명원), 강제11호증의 4(진술조서), 강제11호증(증인신문조서 등본), 을제4호증의 2(판결), 같은 호증의 12(청구취지 및 원인정정신청서, 강제9호증의 5와 같다), 같은 호증의 19(소송위임장), 원본존재 및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강제8호증의 5(변론조서 사본), 같은 호증의 6(판결사본), 강제9호증의 6, 강제10호증의 4(각 변론조서 사본), 원심증인 의 증언에 의하여 진정성립이 인정되는 강제8호증의 2(메모), 같은 호증의 3(청구취지 및 원인정정신청서), 강제9호증의 2(초고), 같은 호증의 4(민사항소 기록표지 및 목록), 강제10호증의 3(소송위임장)의 각 기재와 위 증인 의 증언에 변론의 전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가 1980. 9. 26.경 위 최 으로부터 동인이 서울특별시를 상대로 제기한 서울민사지방법원 80가합5058호 토지인도등 청구사건을 수임한 후 위 최 으로부터 재판부의 석명촉구가 있었다는 말을 듣고 위 사건관계기록과 원고가 위 사건과는 별건으로 최 으로부터 수임한 서울특별시 상대의 서울고등법원 80나3264호 손해배상등 청구사건의 기록을 검토한 결과 위 80가합5058호 사건은 위 80나3264호 사건의 예비적 청구와 그 청구가 중복되어 2중의 소로서 부적법한 것으로 보여 위 최 에게 그 취지를 설명하고, 위 서울민사지방법원 80가합5058호 토지인도등 사건의 1980. 10. 16. 변론기일에는 최 이 직접 출석하여 변론하되 재판부의 석명촉구가 여전하면 더이상 위 사건 소송수행을 하지 않고 그대로 종결짓기로 합의하고 최 이 위 변론기일에 직접 출석했으나 위 소송이 위 80나3264호 사건의 예비적 청구와 중복소송관계에 있는 것이 아니냐는 취지의 재판부의 석명촉구가 있자 최 은 2중의 소로서 부적법하다는 원고의 의견에 동의하여 원고는 위 사건의 소송수행을 하지 않고 나머지 착수금을 받지 않는 대신 최 이 별도로 서울특별시를 상대로 제기한 서울고등법원 80구438호 토지지목변경처분 취소청구사건을 수임하여 이를 처리하여 주기로 약정하고 위 소송업무를 수행하여 왔는데 원고가 수임한 위 80가합5058호 사건은 1980. 11. 13 원고가 예상한 대로 80나3264호사건의 예비적 청구와 중복제소라는

이유로 소각하 판결이 선고되어 확정되었고 위 80나3264호 사건은 원고의 5차에 걸친 변론(2차에 걸친 증인신문 포함)과 2차에 걸친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정정신청서와 준비서면의 제출로 청구원인을 보완하였으나 1981. 2. 27 서울고등법원에서 최 의 항소 및 확장청구를 기각한다는 패소판결이 선고되고 대법원에서 상고허가 기각결정으로 그 판결이 확정된 사실, 한편 소외 최 이 소송위임사무를 제대로 처리하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로 원고를 상대로 제소한 위 81가소12004호 손해배상 청구사건에서 원고가 답변서만 제출하고 변론기일에 일체 출석하지 아니한 결과 제1심인 서울민사지방법원에서 1982. 6. 10. 앞서 본 바와 같이 위 소외인의 청구를 일부 인용하는 판결을 선고하자 원고가 항소를 제기하여 그 항소법원인 서울민사지방법원에서 1983. 3. 25. 원고가 소송위임사무를 잘못 처리한 채무불이행의 책임과 불법행위적 책임이 있음을 인정할 수 없다는 이유로 원심판결의 원고패소부분(소외 최 의 승소부분)을 취소하고 이 부분에 대한 최 의 청구를 기각하는 판결(같은 법원 82나1235 판결)을 선고하고 그 무렵 그 판결이 확정된 바 있는 사실, 그런데 도하 각 일간신문 지상에는 위 서울민사지방법원 81가소12004호 손해배상청구사건의 제1심 판결 중 최 의 패소부분이 있었다는 점 및 그 내용이 보도되었음에 반하여 피고회사 발행의 주부생활 1982. 7.호에는 위 수기의 내용에는 물론 그 밖에 편집자의 주해등 형식에 의하여서도 이러한 점에 관한 아무런 언급이 전혀 없었으며, 피고가 위 수기의 게재에 즈음하여 위 수기의 내용의 진실성에 관하여 문제된 판결문의 내용을 검토하거나 소송기록을 통하여 그 판결의 확정여부등 소송진행과정을 확인하여 보지도 아니하고 원고에게도 그 진실성 여부를 확인하지 아니한 채 만연히 사실과 상반되는 수기 내용을 게재하였던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위 인정에 일부 어긋나는 갑제11호증의 5, 6, 11, 을제1호증의 6, 7, 8의 각 일부기재와 원심 증인 백 의 증언부분은 위에서 나온 각 증거에 비추어 믿지 아니하고 달리 위 인정을 좌우할 증거가 없으므로 이러한 사실들에 수기의 내용이 일간 신문 지상에 보도된 기사내용보다 더 나아가 원고가 소송의뢰인인 소외 최 에게 고의적으로 불이익을 주기로 하였다는 내용과 원고가 변호사로서 윤리를 저버리고 본분을 망각한 처사를 자행하였다는 인신공격적인 내용을 포함하고 있는 점을 합쳐보면 피고의 수기 게재가 이미 일간 신문지상에 위와 같은 기사가 보도된 후에 된 것이고 「주부생활」 잡지의 독자들의 요청에 의한 것이었을 뿐만 아니라 수기의 형식을 취하고 과격한 표현을 일부 수정하여 게재된 것이라 하더라도 수기의 내용이 개인의 체험을 기록한 것을 떠나 다분히 수기의 형식을 빌어 특정인을 비방하는 내용을 담고 있어 특정인의 사

회적 평가를 저하시키는 내용이라면 전국 일원에 10여만부에 달하는 월간잡지를 발행 판매하는 출판회사인 피고로서는 그 수기의 내용이 게재된 잡지가 전국 일원에 반포됨으로써 개인의 명예를 실추시키고 나아가서는 형사소추나 징계처분 등을 당할 우려가 있는 점까지 고려하여 수기내용의 진실성 여부를 가리어야 하고 특히 소송과정을 기술한 법률적인 내용이 담겨있는 수기인 경우에는 소송기록을 검토하여 법률가의 자문을 통하여 그 진실성 여부를 검토한 연후 게재하거나 수기내용의 당자인 원고에게 확인하여 보거나 변명의 기회를 주어야 마땅하고 수기내용을 게재함에 있어서도 타인의 명예를 손상시키는 내용은 삭제하는 조치를 취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위와 같은 사전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마치 소외 최 이 원고와의 소송과정에서 위 수기에 서술한 내용이 포함된 주장을 하여 그주장이 법원에 의하여 그대로 받아들여져 원고가 전부 패소한 판결이 선고확정된 것처럼 기재된 내용과 변호사로서의 본분을 망각한 악덕변호사인 것처럼 원고를 비방하는 내용의 수기를 만연히 게재함으로써 전국 각지의 수많은 독자들로 하여금 수기의 기재내용 그대로 오인할 수 있도록 하게 한 이상 피고가 위 수기를 진실에 터잡아 오로지공공의 이익을 도모할 목적으로 게재하였다거나 피고가 그 수기의 내용을 진실한 것이라고 믿을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었다고 할 수 없으며 을제1호증(불기소결정), 같은 호증의 2(경위서), 같은 호증의 4, 5(각 진술서), 같은 호증의 6, 7(각 피의자신문조서), 같은 호증의 9(각 결정), 같은 호증의 10(재항고에 대한 의견서), 갑제11호증의 5, 6(각 피의자신문조서)의 각 일부기재는 작성자나 진술인의 견해를 기재 또는 진술한 것에 지나지 아니하고 그밖에 을제4호증의 1(민사항소기록표지), 3, 4(각 준비서면), 5, 6, 7(각 증인신문조서), 9(행정소송기록표지), 13(변론조서), 15(소장), 16, 17(각 변론조서), 18(판결선고조서)의 기재와 원심증인 백 의 일부증언은 위 수기의 기재가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진실에 터잡아 기재한 것이고 수기의 내용이 진실한 것이라고 믿을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다는 피고의 주장을 뒷받침할 수 있는 자료가 되지 못한다고 할 것이고 달리 피고의 위 주장을 뒷받침할 수 있는 자료가 없으므로 피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고 할 것이다.

그렇다면 피고는 그가 발행하는 「주부생활」 잡지에 원고에 대한 위와 같은 내용의 최 의 수기를 게재하여 이를 반포함으로써 원고에 대한 사회적 직업적 평가를 저하시켰으므로 이로 인하여 원고가 입은 정신적 고통을 금전으로 위자할 의무가 있다고 할 것인 바, 나아가 위자료 액수에 관하여 보건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원고의 연령, 신분, 교육정도, 원고의 법조계에서의 위치 및 저명도, 피고가 이 사건 기사를 집필하

게 된 목적 경위와 위 수기계재 후 원고에게 명예회복을 위한 아무런 조치를 취한 바 없었던 점, 위 잡지의 발행부수, 위 기사를 읽은 독자들의 반응 등 제반사정을 참작하면 피고는 위자료로 금 10,000,000원을 지급함이 상당하다 할 것이다.

따라서 피고가 이행의무의 존재와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이 사건에 있어서 피고는 원고에게 위자료로 금 10,000,000원 및 이에 대한 원고청구에 따라 이 사건 소장 부분의 송달 다음날임이 기록상 명백한 1984. 1. 13부터 완제일까지 연 5푼의 율에 따른 민사법정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할 것이므로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범위내에서만 이유 있어 인용하고 그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할 것인 바, 이와 결론을 같이 한 원판결은 정당하고 원고 및 피고의 항소는 모두 이유 없으므로 이를 각 기각하고 항소비용은 각자 부담으로 하며 가집행선고에 관하여는 민사소송법 제199조, 소송촉진등에 관한 특례법 제6조 제1항을 적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1984. 12. 11.

재판장	판사	천	경	송
	판사	이	영	복
	판사	양	상	훈

大法院 判決文

사 건 : 85다카29 위자료등

원고, 피상고인 : 이

서울

피고, 상고인 : 주식회사 학원사(學園社)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 44의 37

대표이사 김 영 수

소송대리인 변호사 박 상 기

원심판결 : 서울고등법원 1984. 12. 11. 선고, 87나1789 판결

주 문 :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 상고이유를 본다.

1.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원고는 서울통합변호사회 소속 변호사이고 피고는 월간잡지 「주부생활」등을 발행, 판매하는 출판업을 경영하는 회사인 바, 피고는 위 「주부생활」 1982년 7월호에 『한국 최초로 변호사를 상대로 승소한 중학중퇴 기능공의 법정투쟁기』 『위대한 소시민의 승리였습니다』라는 제목 아래 소외 최 의 수기를 게재하였는데 그 수기는 위 최 으로부터 소송수행을 위임받은 변호사인 원고가 위임 사무를 제대로 처리하지 못하였다는 이유로 위 최 이 원고를 상대로 하여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하여 승소판결을 받기까지의 과정에 관한 것으로서 수기의 중간에 『변호사의 잘못 드러나 나는 드디어 승소했다』 『수임변호사가 날짜까지 변조해가며 나를 패소케 하였다』 『법을 잘 아는 사람에게 법 몰라 이용당한 꼴』 등의 소재목을 붙여 원심판시와 같이 원고가 변호사로서의 윤리를 저버리고 본분을 망각한 행동을 하였다는 인신공격적인 표현으로서 원고의 인격을 비방한 사실, 피고는 같은 해 6. 25. 위 최

의 수기가 게재된 「주부생활」 1982년 7월호 100,000여부를 발행하여 같은 해 7. 1. 경 전국에 반포한 사실, 그런데 소외 최 이 1981. 10. 8.경 원고를 상대로 한 소송(서울민사지방법원 81소12004호 손해배상청구사건)의 내용은 원고가 동 소외인으로 부터 수임하여 처리한 (가) 서울고등법원 80나3264호 손해배상등 청구사건과 (나) 서울민사지방법원 80가합5058호 토지인도등 청구사건이 모두 위 최 의 패소로 종결되었는데 그 패소의 원인은 변호사인 원고가 소송위임에 따른 의무를 위반하였음에 기인한 것이므로 그 사건의 착수금으로 지급한 돈등 손해금 770,000원의 배상을 구한다는 것이었는 바 1982. 6. 10. 서울민사지방법원으로부터 위 (가)부분 청구는 원고가 위임의 본지에 따른 의무를 다하지 못하였다는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최 의 청구가 기각되고 위 (나)부분 청구에 관하여는 원고가 위임사무 처리의무를 위반하였다는 이유로 금 370,000원의 지급을 명하는 최 의 일부승소판결이 선고된 사실, 그 무렵 소외 최

의 위 일부승소판결의 내용이 중앙, 조선, 서울 등 일간지에 『변호사 태만으로 패소 하면 수임료 돌려줘야』라는 제목등으로 기사가 보도되자 위 소송사건에 대하여 공중의 관심이 높아지고 위 주부생활 잡지의 독자들로부터도 이에 대한 상세한 내용을 알고자 하는 요청이 있어 피고회사 편집부에서는 위 최 의 수기를 「주부생활」 1982년 7월호에 게재하기로 기획하고 피고의 편집부 담당기자가 1982. 6. 17.경 위 최

을 직접 찾아가 위 소송에 얽힌 내용의 수기를 써줄 것을 부탁한 사실, 같은 해 6. 21.경 편집부 기자가 위 최 ○○으로부터 원고(原稿)를 받아 검토한 결과 분량이 많고 문맥이 맞지 않으며 원고에 대한 과격한 표현이 많아 동 소외인의 동의를 얻어 위 수기의 요지와 취지를 해하지 아니하는 범위내에서 문장을 수정하여 위 잡지에 게재한 사실, 한편 원고는 소외 최 ○○으로부터 1980. 9. 26.경 위 두사건을 수임하여 사건 관계 기록을 검토한 결과 80가합5058호 사건은 위 80나3264호 사건의 예비적 청구와 그 청구가 중복되어 2중의 소로서 부적법한 것으로 보여지므로 사전에 위 최 ○○에게 그 취지를 설명하여 동 소외인의 동의하에 위 80가합5058호 사건은 더 이상 소송수행을 하지 않고 그대로 종결짓기로 합의하고 그 대신 소외 최 ○○이 별도로 서울특별시를 상대로 제기한 서울고등법원 80구438호 토지지목변경처분취소청구사건을 수임하여 처리하여 주기로 약정한 사실, 소외 최 ○○이 원고를 상대로 한 81소12004호 손해배상청구사건의 원고패소부분에 관하여는 그후 원고가 항소를 제기하여 1983. 3. 25. 항소법원에서 원고에게 소송위임사무를 잘못 처리한 책임이 없다는 이유로 원고패소부분(최 ○○의 일부승소부분)이 취소되고 그 무렵 그 판결이 확정된 사실을 인정하고 있는바, 원심이 위와 같은 사실을 인정함에 거친 채증의 과정을 기록에 비추어 검토하여 보아도 정당하고 거기에 채증법칙을 위배하여 사실을 잘못 인정하였거나 이유불비의 위법이 있음을 찾아 볼 수 없으므로 논지는 이유 없다.

2. 민주주의 국가에서는 여론의 자유로운 형성과 전달에 의하여 다수 의견을 집약시켜 민주적 정치질서를 생성 유지시켜 나가는 것이므로 표현의 자유, 특히 공익사항에 대한 표현의 자유는 중요한 헌법상의 권리로서 최대한의 보장을 받아야 할 것이다.

우리헌법 제20조 제1항(1980. 10. 27. 개정 공포된 헌법)도 「모든 국민은 언론, 출판의 자유와 집회, 결사의 자유를 가진다」라고 규정하고 있는데 그 핵심은 표현의 자유의 보장에 있다고 해석된다. 그리고 헌법 제20조 제2항 전단에서는 「언론, 출판은 타인의 명예나 권리 또는 공중도덕이나 사회윤리를 침해하여서는 아니된다」라고 규정하여 표현의 자유가 민주정치에 있어 필수불가결의 자유이기는 하지만 절대적인 것이 아니고 언론, 출판이 그 내재적 한계를 벗어나 타인의 명예나 권리를 침해한 경우에는 법의 보장을 받을 수 없는 것으로 하여 그 한계를 명시하고 있으며, 헌법 제20조 제2항 후단에서는 언론, 출판의 사후책임에 관하여 명문규정을 두고 있다.

한편 헌법 제9조 후단에서는 「모든 국민은…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라고 하여 생명권, 인격권 등을 보장하고 있어 어떤 개인이 국가권력이나 공권력 또는 타인에

의하여 부당히 인격권이 침해되었을 경우에는 인격권의 침해를 이유로 그 침해행위의 배제와 손해배상을 청구하여 그 권리를 구제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그러므로 우리가 민주정치를 유지함에 있어서 필수불가결한 언론, 출판 등 표현의 자유는 가끔 개인의 명예나 사생활의 자유와 비밀 등 인격권의 영역을 침해할 경우가 있는데 표현의 자유 못지 않게 이러한 사적 법익도 보호되어야 할 것이므로 인격권으로서의 개인의 명예의 보호(헌법 제9조 후단)와 표현의 자유의 보장(헌법 제20조 제1항)이라는 두 법익의 충돌하였을 때 그 조정을 어떻게 할 것인지는 구체적인 경우에 사회적인 여러가지 이익을 비교하여 표현의 자유로 얻어지는 이익, 가치와 인격권의 보호에 의하여 달성되는 가치를 형량하여 그 규제의 폭과 방법을 정해야 할 것이다.

위와 같은 취지에서 볼 때 형사상이나 민사상으로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행위를 한 경우에도 그것이 공공의 이해에 관한 사항으로서 그 목적이 오로지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일 때에는 진실한 사실이라는 증명이 있으면 위 행위에 위법성이 없으며 또한 그 증명이 없더라도 행위자가 그것을 진실이라고 믿을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위법성이 없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이렇게 함으로써 인격권으로서의 명예의 보호와 표현의 자유의 보장과의 조화를 꾀할 수 있다 할 것이다.

원심이 확정한 사실에 의하면 피고 발행의 월간잡지 「주부생활」 1982년 7월호에 게재된 소외 최 의 수기는 원고가 수행한 소송과 관련하여 그가 변호사로서의 자질이 부족하다는 것을 그 내용으로 하고 있으므로, 이러한 인물에 대한 평가로서 공공의 이익에 관한 사항인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비평의 대상이 된다고 할 수 있겠으나 이 사건 수기는 그 내용과 기술방법으로 보아 원고의 인격을 비방하는 인신공격의 표현이 상당히 포함되어 있어 그 수기의 게재가 오로지 공익을 위한 의도로서 행한 것으로는 도저히 볼 수 없고, 진실성이 결여된 점은 위 수기의 제목 및 표현내용과 문면 자체에 의하여 분명한 바이다.

그리고 일정한 입장에 있는 인물에 관한 행위가 공적 비판의 대상이 된다고 하더라도 신문에 비하여 신속성의 요청이 덜한 잡지에 인신공격의 표현으로 비난하는 내용의 기사를 게재함에 있어서는 기사내용의 진실 여부에 대하여 미리 충분한 조사활동을 거쳐야 할 것인데 원심이 적법히 확정하고 있는 바와 같이 피고가 이 사건수기를 잡지에 게재함에 있어 그 내용의 진실성에 대하여는 전혀 검토하지 아니하고 원문의 뜻이 왜곡되지 않는 범위내에서 문장의 일부만을 수정한 채 원고가 변호사로서의 본분을 망각

한 악덕변호사인 것처럼 비방하는 내용의 글을 그대로 잡지에 게재하였다면 피고로서는 위 수기의 내용이 진실한 것으로 믿는 데 상당한 이유가 있었다고는 할 수 없다 할 것이다.

따라서 피고 발행의 잡지에 이 사건수기를 게재하여 반포함으로써 원고의 사회적 평가가 저하되었다 할 것이므로 피고는 위 잡지의 발행자로서, 원고에 대한 명예훼손의 책임을 면할 수 없다 할 것이다. 같은 취지의 원심 판결은 정당하고 거기에 헌법상의 언론자유와 불법행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있다 할 수 없다.

그리고 수기는 객관적으로 발생한 사실을 보거나 체험한 사람이 그 체험과정에서 느낀 점과 체험한 사실을 주관적으로 평가하여 기술하는 것이므로 취재기사와는 달리 객관적 진실에 부합할 것까지는 없고 주관적 진실에만 부합하면 된다거나, 수기의 내용에 사실과 다른 점이 있으면 그것은 작성자에게 책임이 있다는 상고인의 상고논지는 독자적인 견해로서 채용하지 않는다.

3. 기록에 의하면 원심이 피해자의 연령, 신분, 교육정도, 피해자의 법조계에서의 위치 및 저명도, 침해자가 이 사건 기사를 집필하게 된 목적경위와 위 잡지의 발행부수, 위 기사를 읽은 독자들의 반응, 위 수גיע재 후 피해자에게 명예회복을 위한 아무런 조치를 취한 바가 없었던 점 등을 참작하여 이 사건 명예훼손으로 인하여 피해자가 입은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액을 금 10,000,000만원으로 산정한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위자료액을 정하는 기준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있다 할 수 없으므로 논지는 이유 없다.

4. 그러므로 피고의 상고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1988. 10. 11.

□

재판장	대법관	김 덕 주
	대법관	배 만 운
	대법관	안 우 만

他人의 名譽를 毀損해도 公共의 利益에
관한 것이고, 眞實이라고 믿을만한 相當한
理由가 있는 경우에는 不法行爲가 성립되지 않는다

서울민사지방법원 1984. 4. 11.자 판결(82가합4734)

事實概要

보도기관이 보도한 기사로 인해 개인의 명예가 훼손된 것이 인정된다 하더라도, 보도기관으로서 그 기사가 진실이라고 믿을 만한 합리적인 근거가 있으면, 그 보도행위에 따른 민사상의 책임을 물을 수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민사지방법원 제8부(재판장 김종화 부장판사)는 1984년 4월 11일,

협의회 대표 李 씨가 東亞日報를 상대로 낸 오보로 인한 손해배상청구 소송에서, 보도기관이라고 해서 취재활동에 관한 특별한 조사권한이 주어진 것도 아니고, 또 보도에 요구되는 신속성을 감안할 때, 취재근거에 대한 고도의 확실성을 요구할 수는 없다고 판시, 원고 李씨의 청구를 기각했다.

원고 李 씨는 東亞日報(1982년 5월 27일자 11면)에 농성사진과 함께 게재된 『不具도 서러운데... 장애자 기술 가르쳐준다며 會費 착복』 제하의 기사는 사실과 다른 잘못된 것이라고 주장, 1982년 7월 16일 사과문 게재와 함께 배상금 10억을 지급하라는 소송을 서울민사지방법원에 냈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당시의 기사로 원고 李 씨의 명예 및 신용이 훼손됐음이 명백하다고 밝히고, 그러나 신문기사가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경우라도 기사를 게재하는 것이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이며, 적시된 사실의 진실성이 증명되는 한 위법성이 없다고 전제, 문제의 기사보도가 공공의 이익을 도모하기 위해 게재된 것이 명백하여

설사 기사의 진실성이 증명되지 않더라도, 보도기관으로서 그 기사가 진실이라고 믿은 데 대해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불법행위가 성립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그런데 이 사건은 東亞日報에 동기사가 게재되자, 원고李씨가 지난 1982년 6월 26일 언론중재위원회에 정정보도를 요구하는 중재신청을 냈으나(중재신청 내용은 「언론중재」 통권 제5호 118면 참조), 피신청인측의 불응으로 불성립되자, 법원에 정정보도 청구소송을 냈었다.

이에 대해 서울민사지법 합의 16부(재판장 지홍원 부장판사)는 1982년 11월 4일 신청인의 청구가 이유있다고 받아들여 東亞日報는 1982년 12월 11일자 11면에 정정보도문을 게재했었다. 東亞日報는 1심판결에 불복, 항소했으나, 1983년 11월 17일 1심판결 정정보도문을 일부 변경하는 판결을 받았었다.

判 決 文

사 건 : 82가합4734 정정보도청구

원 고 : 이

서울

피 고 : 주식회사 동아일보사(東亞日報社)

서울 종로구 세종로 139

대표이사 김 상 기, 오 재 경

소송대리인 변호사 박 승 서

변론종결 : 1984. 3. 21.

주 문 :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 피고는 피고 발간의 동아일보 11면에 5단 16센티미터 크기의 별지 제2목록 기재 사과문을 게재하라. 피고는 원고에게 금 10억원 및 이에 대한 청구취지변경신청서 송달 익일부터 완제일까지 연 5푼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는 판결 및 가집행의 선고.

이 유 : 1. 당사자 표시 정정신청의 적부에 관하여 본다.

원고는 1982년 7월 16일 본건 소를 제기함에 있어서 그 소장에 원고를 「李」으로

표시하고 변론이 개시되어 동인이 소송행위를 하여 오다가 1983년 11월 16일에 이르러 원고를 「 협의회」로 변경하고 그 대표자를 이 으로 하는 당사자 표시 정정신청을 하였는 바, 무릇 당사자 표시의 정정은 최초의 당사자의 동일성을 벗어나지 않는 범위에서 그 표시에 오기 또는 불확정 등의 사정이 있는 경우에 가능하다 할 것으로 당사자 표시 정정의 방법에 의하여 당사자를 변경할 수는 없는 것이라 할 것이고, 당사자의 변경은 소외 변경으로서 현행 민사소송법상으로는 소변경절차에 의하여 당사자를 변경할 수는 없는 것이므로 위에서 본 바와 같이 처음에 원고를 자연인 이 으로 표시하였다가 이를 협의로 표시를 정정해 달라는 신청은 전혀 인격을 달리하는 당사자 변경으로 인한 소변경의 경우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허용될 수 없다 할 것이니 이하 원고 이 의 청구에 대하여 판단하기로 한다.

2. 불법행위 성립여부에 대한 판단

(1) 본건기사에 의한 명예훼손의 성립

피고가 발행하는 1982년 5월 27일자 동아일보 제11면의 기사란 중 좌측 하단 부분에 『불구도 서러운데...장애자 기술 가르쳐준다며 회비 착복』이라는 제목하에 3단 8센티미터 크기의 별지 제1목록 기재기사가 3단 11센티미터의 크기의 사진과 함께 보도된 사실은 당사자간에 다툼이 없다.

피고는 위 기사는 그 내용과 같은 농성이 있었다는 사실과 그 농성자들의 주장을 기사화한 데 불과한 것으로서 원고의 어떠한 권리도 침해한 바 없다는 취지로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신문기사에 의한 명예훼손의 성부에 관하여는 기사의 정확한 의미내용에 불구하고 독자에 부여하는 인상도 그 판단기준으로 하여야 할 것이고 후자의 판단에 있어서는 일반의 독자가 통상 신문을 읽는 방법을 전제로 하여 본문의 내용 외에 특히 제목 및 전문의 내용, 배치, 활자의 크기, 사진의 유무, 내용, 본문의 길이, 게재장소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하여 판단할 것인 바, 본건 기사가 비록 그 내용에 있어서는 장애자들이 1982년 5월 27일 현재 농성을 벌이고 있다는 사실과 위 농성자들의 주장을 기사화한 것에 불과하다 하더라도 그 제목에 『장애자 기술 가르쳐준다며 회비 착복』이라는 문구를 사용하여 원고가 마치 장애자들에게 기술을 가르쳐준다고 속여 회비를 착복하였다는 단정적인 인상을 독자들에게 주고 있다고 할 것이고 한편 동아일보가 전국적인 판매망을 갖고 있는 대신문인 것은 공지의 사실이므로 본건기사가 그 사회면에 게재되어 막대한 수의 독자에 대하여 발행되고 원고가 위와 같은 범죄행위를 한 것으로

로 넓게 보도 공표됨에 의하여 원고의 명예 및 신용이 현저하게 훼손되었음은 명백하다 할 것이다.

(2) 귀책사유에 관한 판단

원고가 피고에 대하여 원고의 명예가 훼손됨에 따른 사과문의 게재 및 그로 인한 손해의 배상을 구함에 대하여 피고는 본건기사의 내용은 모두 진실에 부합되는 것으로서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이므로 그 위법성이 없을 뿐 아니라 가사 위 기사의 내용이 진실에 반한다 하더라도 그 내용에 있어 주요부분에 오류가 없고, 그 보도과정에 있어 기사의 진실성 및 정확성을 확인하기 위하여 상당한 주의를 다하였으므로 피고는 책임이 없는 강제43호증의 1, 2(각 증인신문조서), 강제44호증(판결), 강제45호증(확정증명원), 을제2호증의 1 내지 4(각 증인신문조서)의 각 기재와 증인 , 동 의 각 증언에 당원 82다카27454 정정보도사건 기록에 대한 검증결과(다만 뒤에서 배척하는 부분 제외)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심신장애자들에게 재활에 필요한 상담을 하고 재활기술을 가르쳐 취업을 알선하여 장애자들이 자활할 수 있도록 선도하겠다는 취지를 내세워 1981년 7월 15일 서울 종로구 종로2가 기독교청년회관(YMCA) 빌딩 405호실에 사무실을 두고

협의회를 조직하여 그 회장이 되었고, 신문 방송 등을 통하여 대외적으로 위 협회에서 장애자들에게 각자의 희망에 따라 영어, 일어, 초상화, 동양매듭, 표구 등 자활기술을 무료로 가르쳐 적당한 취업의 기회를 마련해 준다고 홍보하였으나 실제로 있어 당초부터 준비가 제대로 갖추어 있지 아니하여 홍보를 했던 대부분의 과목들에 대하여 강의를 실시하지 아니하였고, 영어, 초상화 등 일부 과목에 대해서만 강의를 하였으나 그 강의도 심신장애자인 강사나 그밖에 무료봉사를 자원하는 강사들에 의하여 그 며칠동안만 행하여져서 그 내용이 부실하였고, 장애자들에 대한 취업의 알선도 되지 못하여 그 실적이 극히 미미했던 사실, 한편 원고는 위와 같은 홍보를 보고 위 협의회를 찾아온 장애자들에게 위 협의회에 가입하면 강좌를 무료로 해주고 취업을 알선하여 주겠다고 하면서 그중 30여명으로부터 입회비 명목으로 금 5,000원 내지 10,000원씩을 받았으나 위와 같이 강의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아니하고 취업의 알선도 제대로 되지 아니하였을 뿐 아니라 위 협의회가 주관한 조찬기도회, 심신장애자를 위한 기도회, 1일 찾집 등을 통하여 들어온 수입금도 장부를 작성하여 공개적으로 사용하지 아니하고 원고의 개인통장에 입금하는 등 실제 장애자를 위한 사업이 제대로 행해지지 않는 데 불만을 품은 소위 등 장애자들이 1982년 5월 25일 위 협회 사무실에서 원고에게

위 기사내용과 같은 비리가 있다고 주장하여 당국의 수사와 협회운영의 개선을 요구하는 농성시위를 벌이고 경찰서에 원고를 고소하기에 이른 사실, 한편 피고 회사의 사회부 기자 소외 황 ○은 같은 달 26일 상사로부터 위 농성사건을 취재하라는 지시를 받고 서울 종로경찰서 수사과에 임하여 조사중인 위 고소사건의 내용을 확인한 후 이어 위 농성현장으로 가 농성중인 30여명의 장애인들로부터 그 호소를 들은 다음, 그중 8명으로부터는 각자의 신원을 확인한 후 한사람씩 입회동기 및 경위, 입회비를 낸 사실, 기만당하였다고 주장하는 구체적인 사실 등을 청취하는 한편, 원고의 주장을 청취하기 위하여 원고의 자택등으로 수차 연락을 취하였으나 계속 부재중이라고 하는 등 연락이 되지 아니하자 위 장애인들의 주장에 확신을 갖고 본건기사를 작성하기에 이른 사실을 각 인정할 수 있고 인정에 일부 반하는 위 강제43호증의 1, 2, 강제44호증의 각 일부 기재와 위 증인들의 일부증언 및 위 기록검증결과의 일부는 믿지 아니하고 달리 반증이 없으나 그 밖에 원고가 강사들에게 강의료 지급을 약속하고도 이를 지급하지 아니하였거나 또는 기독교단체등으로부터 위 사업명목으로 찬조금을 교부받아 임의로 소비하여 횡령하였거나, 유명화가들로부터 장애인들을 위하여 기증받은 그림들을 매각하여 그 대금을 착복하였다는 등의 점에 대하여는 이에 일부 부합되는 위 을제2호증의 3의 기재 및 위 기록검증결과의 일부는 믿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며, 오히려 위에서 든 증거들에 의하면 원고는 위 협의회 설립 이래 대부분의 운영비를 사재로 충당해 온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살피건대 신문기사가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경우에 있어서도 위 기사를 게재하는 것이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이고 적시된 사실의 진실성이 증명되는 한 위 행위는 위법성을 조각하는 것이 되어 불법행위는 성립하지 아니하고 또한 기사의 진실성이 증명되지 않는다 하여도 그 행위에 관련된 자에 있어서 그 기사가 진실이라고 믿은 데 관하여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위 행위는 귀책사유로서의 고의 또는 과실을 결하여 결국 불법행위의 성립은 부정된다고 하여야 할 것이다.

여기서 취재한 사실이 진실이라고 믿은 데 대하여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하기 위하여는 신문이 사회에 미치는 영향이 심대함에 비추어 위 기사가 단순히 풍문이나 억측에 의거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이를 뒷받침할 만한 자료 또는 근거가 있어야 함은 말할 나위도 없으나, 한편 보도기관이라고 해서 취재활동에 관하여 특별한 조사권한이 주어져 있는 것도 아니고 또 보도에 요구되는 신속성을 위하여 그 조사에도 일정한 한계가 존재하는 점을 감안한다면 그러한 자료 또는 근거에 고도의 확실성을 요구할 수

는 없다 할 것이고, 특히 개인의 명예침해에 대한 책임을 추궁하는 데 급급한 나머지 보도기관을 위축시켜 민주정치의 지주가 되는 보도의 자유를 해하는 일이 없도록 배려하여야 할 것이므로 민사상의 불법행위의 책임 조각사유로서의 상당한 이유에 관하여는 보도기관으로서 일응 진실이라고 믿을 만한 합리적인 자료 또는 근거가 있음으로써 족하다고 하여야 할 것이다.

본건기사에 관하여 보건대 본건기사의 보도가 공공의 이익을 도모하기 위하여 게재된 것임은 본건기사의 내용 및 변론의 전취지에 의하여 인정되고 달리 이를 뒤집을 만한 증거가 없으나 본건기사 중 원고가 장애인들로부터 받은 회비를 착복하였다는 인상을 독자들에게 준 점에 관하여는 그것이 원고에 대한 사회적 비난을 강하게 하는 원인이 되는 만큼 본건기사의 단순한 부수적 내용으로 경시하는 것은 타당하지 아니하다 할 것이고, 이것이 전적으로 진실에 합치되는 것이라고 판단하기에도 그 입증이 부족하다 할 것이나(결국 본건기사 중 진실에 합치되는 부분은 장애인들이 농성을 벌였다는 사실과 회비를 받고도 강의가 이루어지지 않았고 취직도 시키지 않았다는 부분뿐이다), 위 은 전시 인정과 같이 본건기사를 취재하기 위하여 수사기관으로부터 위 장애인들의 진술의 개략을 듣고, 실제 위 농성현장에 임하여 위 장애인들로부터 그 주장을 청취한 후 그에 대한 확신을 굳게 한 점들에 비추어 볼 때 본건기사를 보도함에 있어서 관련자들이 본건기사가 진실이라고 믿은 데 정당한 이유가 있다 할 것이고 이 점에 있어서 원고에 대한 피고의 명예훼손은 그 책임이 조각되어 본건기사에 의한 불법행위는 성립하지 않는다 할 것이다.

(3) 원고는 그 밖에 피고회사 소속의 기자 3명이 1982년 8월말경 위 협의회 사무실로 찾아와 직원들의 근무 모습과 사무실 구조 등을 촬영하는가 하면 같은 해 7월경부터 9월경까지 사이에 피고의 종용에 의하여 서울시경 소속 형사 2인이 찾아와 원고의 정상적인 직무를 수행할 수 없도록 방해하였으니 피고는 위와 같은 위법행위로 인하여 원고가 입은 정신적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는 취지로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피고회사 소속의 기자나 서울시경 소속 형사 2인의 직무집행이 사회상규를 벗어나 위법하게 원고의 업무를 방해하였다는 점에 관하여는 이에 부합하는 듯한 증인 이 의 증언을 믿을 수 없고 달리 위 주장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3. 결 론

그렇다면 피고가 원고의 명예를 훼손함으로써 원고에 대한 불법행위가 성립됨을 전제로 하는 원고의 본건청구는 더 나아가 판단할 필요없이 이유 없으므로 기각하고, 소

송비용의 부담에 관하여는 민사소송법 제89조를 적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1984. 4. 11.

□

재판장 판사 김 종 화
판사 소 순 무
판사 노 영 보

著作權이 完全히 成立하기 前인 翻譯原稿라도
他人이 原作을 별도로 翻譯하면서
이를 無斷으로 利用하는 것은 違法이다

서울민사지방법원 1984. 7. 24.자 판결(83가합6051)

事實概要

번역자가 원작자와의 계약에 따라 저작물을 번역한 경우, 번역자의 승락을 받지 않고 타인의 번역원고를 참고하여 좋은 표현은 그대로 사용하고, 나머지 부분도 상당부분은 어휘나 문장구성을 일부 바꿔 자신의 독창적인 번역물로 출판한 행위는, 비록 원작자의 동의를 받았다 할지라도, 번역자의 법률상 보호해야 할 정당한 이익을 침해하는 위법행위라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민사지방법원 제9부는, 번역문학가 安 씨가 재단법인 韓國文學振興財團(이사장 毛)을 상대로 낸 저작권침해에 기한 손해배상 및 사과문게재청구소송에서, 피고인 재단법인 韓國文學振興財團은 원고 安씨에게 위자료로 金 3백만원을 지급하라는 원고 일부 승소판결을 내렸다.

원고 安씨는 韓末淑씨의 작품 「아름다운 靈歌」를 1983년도 노벨문학상 후보작품으로 선정하고 이를 英文으로 번역하기로 한 韓國文學振興財團과 1982년 10월경 작품번역계약을 맺고, 이 작품을 번역, 미국인 바바라 민츠 여사의 校閱을 거친 후, 계약에 따라 韓國文學振興財團에 번역원고를 건네주고 그 대가로 3백만원을 받았다. 원작자 한

씨는 이 번역원고를 미국인 스잔 크라우더에게 다시 校閱을 부탁, 스잔 크라우더는 이 번역이 원작의 문학성을 전혀 전달하지 못하고 있어서 교열을 볼 수 없으므로, 자신이 직접 다시 번역하겠다고 원작자인 韓씨의 승락을 얻어 작품을 번역하였고, 韓國文學振興財團은 스잔 크라우더의 이름으로 이 번역본을 출간하였다.

그러자 安씨는, ▽韓國文學振興財團이 자신의 번역원고를 자신의 동의없이 스잔 크라우더에게 제공, ▽同人이 자신의 번역원고를 참고하여 좋은 부분은 그대로 사용하고, ▽기타 다른 부분의 경우에도 어휘나 문장구성만을 일부 바꾼 채, 이 작품을 재번역함으로써 표절행위를 하게 하는 한편, ▽이러한 사정을 알면서도 스잔 크라우더의 이름으로 번역본을 출간, 자신의 저작권을 침해하였다는, 손해배상과 함께 사과문을 게재할 것을 요구하는 본 소송을 낸 것이다.

이 판결은 작품의 번역에 관련하여 번역자에게도 저작권이 인정되는지의 여부와 번역자의 법률상 보호문제에 관한 국내의 첫 판결이다.

判 決 文

사 건 : 83가합6051

원 고 : 안

피 고 : 재단법인 한국문학진흥재단

변론종결 : 1984. 6. 29.

- 주 문 : 1. 피고는 원고에게 금 3백만원 및 이에 대한 1983년 11월 10일부터 완제일까지 연 5분의 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이를 3분하여 그 1은 원고의 나머지는 피고의 각 부담으로 한다.
4. 제1항의 금원 중 금 2백만원에 한하여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 피고는 원고에게 금 1천만원 및 이에 대한 소장송달일로부터 완제일까지 연 5분의 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고, 서울에서 발간하는 일간 조선일보 및 코리아타임즈지에 별지 기재와 같은 사과광고문을 1회 게재하라.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는 판결 및 가집행선고.

이 유 : 원고는 서강대학교 영문학과 강사 및 코리아타임즈지의 문화부장을 역임하고 현재 문학작품의 번역을 업으로 하는 번역문학가이고, 피고는 문화공보부의 감독하에 한국문학작품을 번역하여 해외에 소개하는 등 비영리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재단법인인 바, 피고 재단은 1982년 10월경 스웨덴 한림원 노벨위원회로부터 1983년도 노벨문학상 후보작품의 추천의뢰를 받고 소외 한 작 「아름다운 영가」를 1983년 2월말까지 번역하여 그 후보작으로 추천하기로 결정하고, 위 「아름다운 영가」를 영역할 번역문학가를 물색하다가 원작자인 소외 한 의 동의를 받아 1982년도 노벨문학상 후보작품인 김동리 원작의 을화를 번역한 일이 있는 원고에게 위 번역을 의뢰하여 원·피고는 1982년 10월 23일 「① 원고는 1983년 1월 20일까지 번역을 완료하여 피고에게 인도하여야 한다. ②번역비는 금 2백만원으로 하되 계약과 동시에 금 1백만원을 지불하고 잔금은 번역이 완료되고 피고에게 인도한 후 하자가 없을 때 지불한다. ③원고는 번역원고를 외국인에게 교열을 받거나 조력을 얻을 수 있고 피고도 또한 교열을 받을 수 있다.

교열 후 정정의 필요가 있을 때는 피고의 의견에 따르며 제책과정에서 원고는 교정에 협조하여야 한다. ④ 재판 발행시는 원고에게 3퍼센트에 해당하는 번역본 인세를 지불한다」는 내용의 번역출판계약을 체결한 사실, 원고는 위 번역의뢰에 따라 곧바로 번역에 착수하여 번역을 끝마치고 제명을 「Song of Soul」이라고 붙인 후 미국인 바바라 민츠 여사의 교열을 받아 1983년 1월 18일 위 번역원고를 피고에게 교부한 사실, 원고는 위 번역의 대가로 피고로부터 1982년 12월 6일, 같은 해 12월 23일, 1983년 1월 12일에 각 금 1백만원씩 합계 금 3백만원을 지급받은 사실은 당사자간에 각 다툼이 없다.

원고는 위 인정사실을 기초로 원고는 위 아름다운 영가의 원작자인 한 의 동의를 얻어 번역작업을 완료하였으므로 위 번역물에 대하여 독점적, 배타적인 저작권을 취득하였는 바, 피고는 그후 소외 스잔 크라우더(Suzanne Crowder)에게 위 아름다운 영가에 대한 별도의 번역을 의뢰하면서 동 소외인이 원고의 번역원고를 교부하여 동 소외인이 원고의 번역원고를 표절할 수 있게 하였고, 피고는 또 위 스잔 크라우더의 번역원고를 교부받아 그것이 원고의 번역원고를 표절한 것임을 잘 알면서도 위 스잔 크라우더의 이름으로 위 아름다운 영가의 영역본인 「Hymn of the Spirit」를 출판하고 원고의 번역원고는 출판하기를 거절함으로써 원고의 위 번역저작권을 침해하였으므로 피고는 이로 인하여 원고가 입은 정신적 손해를 위자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하면서 금

1천만원의 배상과 아울러 별지 기재와 같은 사과공고문의 게재를 청구한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 피고간에 아름다운 영가의 출판계약이 체결된 사실은 있으나 피고가 원고에게 인세가 아닌 일시금을 지불하였고 또한 그 금액이 단순한 저작권의 사용허가라고 보기에는 너무 고액에 해당하므로 원, 피고간에 명시적인 의사표시가 없었더라도 위 계약은 도급계약의 일종인 위탁저작계약이거나 저작권양도계약이므로 이 번역물의 저작권은 원고가 아니라 피고에게 있으며 따라서 약정한 번역료를 모두 지급한 이상 저작권의 침해란 있을 수 없고, 나아가 스잔 크라우더의 번역은 독창적인 것이지 원고의 번역원고를 표절한 것이 아니라고 다룬다.

그러므로 살피건대, 진정 성립에 관하여 다툼이 없는 갑2호증의 1 내지 4(각 최고서) 갑3호증의 1 내지 3(각 답변서) 갑4호증의 1 내지 3(각 신문) 갑4호증의 7(신문) 갑7호증(번역원고) 갑8호증(영문책자)의 각 기재와 증인 스잔 크라우더의 증언(다만 뒤에 믿지 않는 부분 제외)에 변론의 전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 재단은 1983년 1월 18일 원고로부터 아름다운 영가의 영문번역원고를 교부받아 이를 미국인 스잔 크라우더에게 교열을 의뢰하였는 바, 위 스잔 크라우더는 원고의 번역원고를 2,3일 교열하다가 원고의 번역이 영어를 사용하는 사람이 읽으면 원작의 문학성이 전달되지 않는다고 주장하면서 원고의 위 번역원고의 교열을 거부하고 별도로 직접 번역하겠다고 제의하였고, 한편 원작자인 소외 한 도 원고의 번역원고를 읽어 본 후 자신의 문학성이 잘 전달되지 못하고 원작의 품격을 유지시키지 못하였다는 이유로 원고의 번역원고를 출판하지 말 것을 강력히 요청하였으므로 피고는 위 요청에 따라 1983년 2월초 위 스잔 크라우더에게 새로이 위 아름다운 영가의 번역을 의뢰하였는 바, 피고는 위와 같이 별도의 번역을 의뢰한 후에도 동 소외인에게 그전에 교열하여 달라는 취지로 교부한 원고의 번역원고를 회수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둔 사실, 소외 스잔 크라우더는 미국 사우드 캐롤라이나 대학에서 미술을 전공하면서 1학기 동안 매주 6시간씩 창작강좌를 수강하였는데 1977년에 내한한 후 1980년까지 평화봉사단원으로 종사하다가 1981년부터 문화공보부 해외공보관의 전문위원으로 종사하면서 주로 국내인사의 영문연설문 및 우리 정부를 외국에 홍보하는 서적의 영역을 교열하는 일에 종사하여 우리말 중 쉬운 일상어는 어느정도 의사소통이 가능하며 이 건 번역 이전에 소외 한말숙작 「어떤 죽음」을 영역하여 코리아타임즈로부터 번역문학상 가작상을 수상한 일이 있었는 바, 동 소외인이 위 아름다운 영가를 영역하면서 원고의 번역원고를 참고로 하여 표현이 좋거나 별다른 흠이 없어 무난한 부분은 이를 그대로 사용하고 기타의 부분도 어휘를 다른 것으로

로 쓰거나 문장의 구성을 조금 바꾸는 등의 방법을 써서 1983년 6월경 별도의 번역원고를 완성하여 이를 피고에게 교부한 사실, 원고는 1983년 3월 12일경 피고가 원고의 번역원고 2부를 복사하여 소외 스잔 크라우더에게 송부한 일이 있다는 소식을 듣고 피고에게 스잔 크라우더와 면담을 요구하였으나 그 뜻을 이루지 못하였고 1983년 4월 6일경 피고로부터 소외 스잔 크라우더가 교열하였다는 원고의 번역원고를 받아 이를 검토한 후 위 스잔 크라우더의 행위는 교열의 범위를 벗어나 원고의 번역원고 중 표현이 좋은 부분이나 독창적인 부분도 마구 고쳐 오히려 원번역의 취지를 해치고 각주가 붙는 등 소설의 형식으로서의 맞지 않는다고 주장하면서 피고에게 자신의 번역원고를 존중해 줄 것을 요청한 사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에게 원고와 스잔 크라우더의 공동명의로 번역본을 출판하거나 그렇지 않으면 한 권은 원고의 명의로, 다른 한 권은 스잔 크라우더의 명의로 출간할 것을 제의하였는 바, 원고가 자신의 번역원고에 약간의 손질을 해 다른 사람의 이름으로 출판하는 것을 용납할 수 없다는 이유로 이를 거절한 사실, 그후 원고는 스잔 크라우더가 번역을 계속하여 동인 명의로 번역본이 출간될 것이라는 소식을 듣고 1983년 4월 26일 피고에게 서면으로 위 번역작업의 중지와 자신의 번역원고를 반환할 것을 요청하였으나 피고는 이에 대하여 아무런 응답이 없다가 1983년 7월 스잔 크라우더의 명의로 아름다운 영가의 번역본 「Hymn of the Spirit」를 출판한 후 1983년 7월 22일 원고의 번역원고 사본 중 일부를 반환한 사실을 각 인정할 수 있고, 위 인정사실에 배치되는 을2호증(각서) 을8호증(이유서) 을9호증(의견서)의 각 기재와 증인 스잔 크라우더의 일부 증언은 믿지 아니하고 달리 반증이 없다.

무릇 번역저작권은 타인의 저작물을 그 창작자의 동의를 얻어 다른 언어로 번역하면 그 번역물이 완성됨과 동시에 별다른 공표나 등록절차 없이도 당연히 발생한다고 할 것인데,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원고가 비록 원작자인 소외 한말숙의 동의를 얻어 번역에 착수하였다고 하더라도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는 피고와 이 건 번역출판계약을 체결하면서 피고가 이 건 번역원고의 교열을 타인에게 의뢰할 수 있고 교열 후 정정의 필요가 있을 때에는 피고의 의견에 따르도록 약정하였는 바, 원고가 번역을 마치고 이를 피고에게 교부하는 하였지만 원작자인 소외 한 이 원고의 번역에 이의를 제기하며 원고의 번역본의 출판에 강력히 반대의사를 표시하고, 피고로부터 위 번역원고의 교열을 의뢰받은 소외 스잔 크라우더가 또한 원고의 번역원고에 대한 교열을 교부하여, 결국 아직 원, 피고간의 협의에 의한 교열과 정정의 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이상 원고의 위 번역물이 완성되었다고 할 수 없고, 따라서 원고의 번역저작권이 발생했다고 인정

하기는 어렵다 할 것이다. 다만 원고의 번역물에 아직 2차적인 저작권이 발생하지는 않았다고 하더라도 생각컨대 원고의 위 번역원고는 원고의 정신적 노동과 그 창작성의 산물로서 원고는 위 번역물에 대하여 원고의 승락 없는 타인의 이용이나 임의 개작으로부터 법률상 보호되어야 할 정당한 이익을 가진다고 할 것인 바, 소외 스잔 크라우더가 원고의 승락을 얻음이 없이 원고의 번역원고를 참고하여 그중 좋은 표현은 그대로 사용하고 기타의 부분도 상당부분은 어휘나 문장구성을 일부 바꿔 자신의 독창적인 번역물로서 출판한 행위는 원고의 위 법률상 보호하여야 할 정당한 이익을 침해하는 위법한 행위라 할 것이며 피고는 비록 처음에는 위 스잔 크라우더에게 원고를 교열해 줄 것을 부탁하며 이를 교부하였다 하더라도 동 소외인이 며칠 후 교열거부의 의사를 표시하여 동 소외인과의 별도의 번역출판계약을 체결하게 되었으므로 원고의 번역원고를 위 소외인에게 그대로 보관시킬 경우 문화공보부 해외공보관 전문위원으로 근무하면서 근무시간 외의 틈을 내어 같은 원작을 번역하는 위 소외인이 번역시간이 넉넉하지 않은 데다가 한국의 문화, 풍속과 특수한 의식세계에 깊은 이해가 부족하고 특수어휘에 익숙치 못한 관계로 자연히 원고의 번역원고를 참고하게 되리라는 사정이 충분히 예견됨에도 불구하고 이를 즉시 회수하지 아니하였을 뿐만 아니라 1983년 4월 26일에는 원고로부터 번역원고의 반환을 요구받고서도 이 요구를 무시한 채 스잔 크라우더에게 계속 맡겨두었다가 동 소외인의 번역이 완성되어 번역본이 출간된 후인 1983년 7월 22일에야 원고의 번역원고 사본(그것도 일부만)을 반환함으로써 결국 피고는 소외 스잔 크라우더가 무단히 원고의 번역원고를 이용함에 있어 결정적인 기여를 하였으며 나아가 위 소외인의 번역원고를 출판하였는 바 피고의 위 행위는 소외 스잔 크라우더의 위와 같은 위법행위를 고의가 아니면 과실로 방조한 위법행위에 해당하고, 피고의 위 위법행위는 번역 문화가로서 자신의 번역물이 자신의 이름으로 출판되고 그것이 타인에 의하여 무단히 이용되거나 개작되지 않을 것을 바라는 원고의 명예감정을 훼손하여 원고에게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가하였을 것임은 우리의 경험칙상 쉽게 인정되므로 피고는 원고의 위 정신적 고통을 위자할 의무가 있다 할 것인 바 그 방법에 관하여 보건대 앞서 본 이 건 피고의 위법행위의 태양 및 정도에 비추어보면 원고의 위 정신적 손해는 금전배상으로 위자되는 데 충분하고 이와 별도로 사과광고문을 게재할 필요까지는 없다고 판단된다.

나아가 피고가 배상할 위자료의 액수에 관하여 보건대 앞서 본 피고의 불법행위의 태양 및 정도, 원고의 사회적 지위와 원, 피고간의 관계등 변론에 나타난 제반사정을

참작하면 피고가 배상할 위자료의 액수는 금 3백만원으로 정함이 상당하다 할 것이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금 3백만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이 사건 소장부분 송달일일임이 기록상 명백한 1983년 11월 10일부터 완제일까지 민법소정의 연 5푼의 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할 것이다.

그렇다면 원고의 이 소청구는 위 인정범위내에서 이유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는 이유없어 이를 기각하며, 소송비용의 부담에 관하여는 민사소송법 제89조, 제92조를, 가집행선고에 관하여는 같은 법 제199조를 각 적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1984. 7. 24.

□

재판장 판사 정 귀 호
판사 서 기 석
판사 조 관 행

.....

어머니의 名譽가 毀損된 경우,
子女들에 대하여도 名譽毀損이 成立되기
위해서는 父母·子女관계라는 事實이
摘示되는 등의 相當因果關係가 있어야 한다

서울민사지방법원 1984. 10. 15.자 판결(83가단7668)

事實概要

허위 날조된 사실을 내포한 책자를 저술, 일반에 배포함으로써 직계존속의 명예를 훼손한 경우에 그 자녀들에 대해서도 책임이 있는가?

서울민사지방법원 朴燦柱 판사는, 이 씨 외 5인이 국제종교문제연구소장 卓 씨를 상대로 낸 위자료등 청구소송에서, 「특정인의 사회적인 평가와 명예감정을 침해함으로써 성립하는 명예훼손은 고도의 개인적인 속성을 갖는다」고 설시하고, 「원고들의 어머니에 대한 부도덕한 내용의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어머니의 명예를 훼손한 경우에, 이로 말미암아 그 자녀들인 원고들의 명예훼손이 성립하기 위하여는 고의나 과

실 외에 부모와 자녀관계에 있다는 사실을 밝히는 등의 상당인과관계가 존재해야 하므로, 원고들의 이름을 직접적으로 적시하지 않은 이상 원고들에 대한 명예훼손의 책임을 물을 수 없다」고 판시, 원고들의 청구를 기각하였다.

원고 이씨등은, 卓 씨가 1979년 「통일교의 실상과 허상」이라는 책 가운데서 어머니인 양씨와 통일교 교주인 문 씨의 관계를 밝히자, 이들 내용이 모두 허위의 사실로써, 고인이 된 어머니는 물론 자신들의 명예를 훼손하였다며, 위자료로 金 5십만원씩(원고 1인당)을 지급하라는 본 소송을 냈었다.

判 決 文

사 건 : 83가단7668 위자료등

원 고 : (1) 이

부산시

(2) 이

서울

(3) 이

서울

(4) 이

서울

(5) 이

창원시

(6) 이

서울

원고등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흥수

피 고 : 탁

서울 중구 을지로4가 삼풍상가 525(국제종교문제연구소)

소송대리인 변호사 한 승 현

변론종결 : 1984. 9. 17.

주 문 : 1. 원고등의 피고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등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 피고는 원고들에게 각 금 500,000원과 이에 대한 이 건 소장송달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 연 5분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라는 판결과 가집행선고.

이 유 : 피고가 국제종교문제연구소를 설립하여 그 소장으로 활동하면서 1979. 11. 25. 「통일교(統一敎)의 실상(實相)과 허상(虛相)」이라는 제목의 책자를 저술하여 배포한 사실, 피고는 위 책자에서 세계기독교통일신령협회의 창설 경위와 국내의 활동상황에 관하여 언급하는 중에 『세칭 이대(梨大)사건의 전말』이라는 소제목 아래 「이대사건의 실마리는 대개 아래와 같다. 53년말 문교주가 대구에서 발을 붙이지 못하고 그야말로 잠바차림에 고무신을 신은 핫바지차림의 초라한 물골로 상경하여 몸하나 의지할 수 있는 곳을 찾아 헤맬 때인 1954년 4월초에 구세주격인 여인이 나타났으니 그가 바로 이대 음대 성악교수였던 양 여인이었다. 그녀는 을지로6가에 있던 자기집 뒷방에 문교주의 거처를 마련해 주고 기숙시켰다. 이때 양 은 남편이 중병을 앓아 누워 있었으므로 결혼생활은 불행하기 이를 데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병든 남편은 돌볼 생각은 하지 않고 문교주에게 홀딱 빠져버렸고 급기야 남편이 죽자 조금도 슬픈 기색이 없이 웃으면서 자기야말로 주님을 만났으므로 너무나 행복하다고 털어놓았다고 한다. 문교주와 양 은 양의 남편이 살았을 때부터 심상한 관계가 아니었던 것이다. (중략) 양 도 죽고 말았다」라고 적시(揭示)한 사실은 당사자들 사이에 다툼이 없고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제1호증(제적등본)의 기재내용에 의하면 원고등은 모두 위 양윤영의 자녀들인 사실이 인정되고 반증없다.

원고등 소송대리인은 위와 같은 적시사실들은 모두 허위사실들로서 피고가 위 책자를 저술, 발간하여 각 종교계와 지상에 배포하고 이들 내용이 일반잡지나 주간지에까지 흥미위주로 게재소개됨으로써 당사자인 위 양 은 물론이고 그의 자녀들인 원고등마저 사회적으로나 가정적으로 인격을 손상당하고 심한 정신적 고통을 받게 되었으므로 피고는 원고들의 정신적 고통에 대하여 금전적으로나마 위자할 책임이 있다고 주장하고 있으므로 살피건대 원고등 주장의 인격에 관한 권리는 넓게는 생명, 신체, 건강, 자유라는 제 이익을 포함한 개념이라 하겠으나 좁게는 대상되는 인물의 품성,德行, 명성 등 소위 명예에 대한 사회적인 평가 및 이에 대한 동인의 감정(명예감정)을 중핵(中核)으로 하는 것으로서 원고등이 침해되었다 주장하는 인격에 관한 권리도 이러한 명예에 대한 사회적인 평가와 명예감정이익이라 할 것인 바, 우선 당사자들 사이에 다툼이 없는 위 적시사실이 과연 허위사실인가의 점은 접어두고라도 동 적시사실은

모두 위 양 에 관한 것들 뿐으로서 원고등을 대상으로 삼고 있지 아니하여 원고등이 위 양 의 자녀들임을 명시하거나 암시하지도 아니하는 이상은 피고의 그와 같은 사실의 적시로 직접 당사자가 되는 위 양 의 명예가 훼손되느냐의 점은 별론으로 하고 위 적시와 같은 명예라는 고도의 개인적인 속성에 비추어보면 바로 원고등의 명예를 침해한 것으로 볼 수는 없는 것이고, 설사 피고가 위 책자를 저술하여 발간, 배포하면서 위 적시사실로 인하여 위 양 의 자녀들까지 주관적으로 명예가 훼손되고 나아가 사회적으로나 가정적으로 다소의 활동장애가 뒤따를지도 모른다는 점을 예견하고 있었거나 예견할 수 있었다 하더라도 피고의 그와 같은 적시행위와 원고등의 주관적인 명예감정의 훼손 사이에는 법률상의 보호가 요구되는 상당 인과관계가 존재한다고도 보여지지 아니하므로 원고등은 통상손해의 형태로건 특별손해의 형태로건 배상받을 수는 없다 하겠으니 원고등의 이 건 청구는 이미 이 점에 있어서 이유 없다 하겠다.

따라서 원고등의 이 건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인 원고등의 부담으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1984. 10. 15.

□

판사 박 찬 주

罷免處分の不當性を浮刻시켜 報道하면서
實質的 理由를 「노교감과 교장과의 불편한
관계」등으로 표현했다고 하여 이를 眞實에
反한다고 할 수 없다

서울민사지방법원 1986. 8. 21.자 판결(86가합1441)

서울고등법원 1987. 8. 18.자 판결(86나3679)

事實概要

사단법인 대한교육연합회는 새한신문 1983년 12월 5일자 3면에 『저학력 고3생에 학력고사 원서 발부말라』 부당한 지시 항의한 교감 파면』 제하의 기사를 보도했다. 이

기사의 내용은, 「복지중고 교장인 안 씨가 동교 1984년 졸업예정자 중 평균성적이 60점 이하인 자에 대해서는 1984학년도 대입학력고사 원서를 발부하지 말라는 방침을 세운 데 대해, 노 교감등 4명의 3학년 담임들은 교장에게 교육적 차원에서 재고해 줄 것을 건의했다. 안교장은 당초의 방침을 강행했으나, 학부모의 진정에 따라 경기도교육위원회가 지원서를 추가 발부토록 했다. 안교장은 이같은 사태가 노교감의 처신과 관련이 있는 것으로 판단, 노교감에게 사표제출을 종용했으나 동인이 거부하자 학교측은 징계위원회를 열어 직무태만등을 이유로 노교감의 파면을 결정했다. 교련은 이를 중대한 교권침해로 보고, 노교감의 교권회복을 위해 다각적인 지원활동을 펴기로 했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원고 안 씨는 이 보도로 인해 자신의 명예가 훼손됐다고 주장하며 1983년 12월 21일 언론중재위원회에 정정보도신청을 했었다(중재신청 내용은 「언론중재」 통권 제12호 94면 참조). 그러나 양측의 의견이 대립되어 중재가 불성립되자 안씨는 서울민사지법에 정정보도청구소송을 제기, 1984년 5월 25일 승소하였고, 이에 따라 피신청인 사단법인 대한교육연합회는 새한신문 1984년 7월 16일자 3면에 정정보도문을 게재한 후 항소하였으나, 1985년 8월 16일 신청인 승소를 유지한 채 정정보도문의 일부를 변경하는 항소심 판결이 나오자 다시 상고하였다. 그러나 대법원에서도 상고기각 판결이 나왔다.

이에 안씨와 복지학원은 대한교육연합회를 상대로 다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 서울민사지방법원 제12부(재판장 양인평 부장판사)는 청구기각 판결을 내렸고, 원고들은 항소하였다.

서울고등법원 민사제7부(재판장 김종화 부장판사)는 1987년 8월 18일 학교법인 복지학원과 안 씨가 새한신문을 발행하고 있는 사단법인 대한교육연합회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피고는 노 이 파면처분을 당한 실질적 중요한 이유가 학교장의 비교육적 지시에 항의한 데 있다는 점을 들어 중대한 교권침해로 판단, 파면처분의 실질적 이유를 ‘부당한 지시 항의’, ‘노교감의 처신’, ‘교감과 교장과의 불편한 관계’라고 표현하였다. 그러나 이러한 표현이 원고들이 주장하듯 진실에 반한다고 할 수 없다」고 판시, 원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했다.

1審 判決文

사 건 : 86가합1441 손해배상

원 고 : 1. 학교법인 복지학원

의정부시

대표자 이사장 안

2. 안

의정부시

원고들 소송대리인 변호사 신 창 동

피 고 : 사단법인 대한교육연합회(大韓教育聯合會)

서울 종로구 신문로 1가 25

대표자 이사 박 일 경

소송대리인 변호사 하 죽 봉

변론종결 : 1986. 7. 10.

주 문 : 1. 원고들의 피고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 피고는 원고들에게 각 금 100,000,000원 및 각 이에 대한 이 사건 소장 송달 익일부터 완제일까지 연 2할5푼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라는 판결 및 가집행선고.

이 유 : 각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강제1호증(신문, 을제4호증의 8과 같다.), 강제3호증(법인등기부등본), 을제1호증의 1(정관), 2(시행세칙), 각 공문서이므로 진정성립이 추정되는 강제7호증의 1, 2(각 경력증명)의 각 기재에 증인

의 각 증언 및 변론의 전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 학교법인 복지학원(이하 원고법인이 라고 한다.)은 1970. 6. 13. 설립되어 의정부시 소재 복지중고등학교를 설치, 운영하는 학교법인이며, 원고 안 은 원고법인의 설립자로서 1973. 11. 24.부터 1985. 4. 25.까지 위 학교의 교장으로 (다만 1982. 5. 10.부터는 중고교가 분리되어 고교 교장으로 재직하였다.), 1985. 5. 4.부터는 원고법인의 이사장으로 각 재직하여 온 자이고, 피고는 교원의 지위향상 및 교직의 전문성 확립을 기하여 교육의 진흥과 문화의 창달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설립된 사단법인으로서 교육계소식과 피고의 활동을 보도하기 위하여 기관지인 새한신문을 주 1회 발행하여 전국의 회원에게 배포하고 있는 사실, 1983. 12. 5.자 새한신문 3면 중앙에 『「저학력 고3생에 학력고사원서 발부말라」 부당한 지시 항의한 교감 파면』이라는 제목 아래 복지중고 안 교장이 동교 졸업에

정자 중 평균 60점 이하 학생들에게 84년도 대입학력고사 지원서를 발부하지 않는다는 방침을 세운 데 대하여 노 교감등 4명의 3학년 담임들은 교장에게 교육적 차원에서 재고하여 줄 것을 건의했다. 안교장은 당초의 방침을 강행하였으나 9. 28. 경기도 교육위원회가 학부모의 진정에 따라 학교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고 지원서를 추가 발부토록 하였다. 안교장은 이같은 사태를 노 교감의 처신과 관련이 있는 것으로 판단, 노교감에게 사표제출을 종용했으나 동인이 이를 거부하자 학교측은 10. 3.자로 동인에 대하여 직위해제하였다가 10. 22. 징계위원회를 소집하여 사립학교법 제61조 제1,2호(직무상 의무위반, 직무태만)의 사유로 노교감의 파면을 결정하였다. 노교감의 진정을 받고 10. 7. 진상을 조사한 교련의 조사결과에 의하면 직위해제조치의 사유가 석연치 않고, 노교감의 태도엔 문제가 없으며, 노교감과 교장과의 불편한 관계가 원인이라고 판단돼 학교측에 징계를 재고하여 줄 것을 요청하였으나 학교측이 파면징계를 강행하고 재심위의 전망이 어둡게 되자 교련은 11. 21. 교권옹호위원회를 소집하여 교권회복을 위한 방안을 논의하였는데 참석한 위원들은 노교감의 인사처분을 중대한 교권침해로 판단하였으며, 교련은 노교감의 교권회복을 위한 다각적인 지원활동을 펴기로 했다는 내용의 기사가 게재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달리 반증이 없다.

그런데 원고들은 원고법인이 위 노 교감을 파면한 것은 원고 안 교장과의 불편한 관계를 사유로 한 것이 아니고 원고법인이 1983. 10. 3. 위 노 교감을 직무수행능력부족, 근무태도불성실 등을 이유로 교감직위해제 및 대기발령처분을 하자, 위 노 은 그 구제를 요구한다는 명목으로 피고, 문교부, 경기도 교육위원회 등 관계기관에 원고 안 을 비방하고 위 학교운영의 문제점을 적시하는 내용의 진정서를 제출하여 결과적으로 학교장과 학교의 명예를 손상시켰으므로, 원고법인은 같은 달 22. 징계위원회를 소집하여 위 진정행위는 교사로서의 직분에 배치되고 교원으로서의 품위손상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여 사립학교법 제61조 제1,3호에 따라 위 노 에 대한 파면을 결정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피고 기관지인 위 새한신문은 사실의 공표전에 모든 공표사항의 진실성을 담보하기 위하여 충분한 조사와 주의를 경주하여야 할 언론으로서의 주의의무에 위반하여 위와 같은 허위보도를 함으로써(원고 안 은 피고를 상대로 그 정정보도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여 승소확정판결을 받았다.) 불법행위로 원고들의 교육자로서의 명예를 훼손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들에게 청구취지 기재의 위자료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하므로, 먼저 위 보도의 진실 여부를 판단하기 위

하여 위 노 에 대한 징계경위에 관하여 살펴보기로 한다.

각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제4호증의 1(기록표지, 을제4호증의 1과 같다.), 2(기록 목록), 3(서증목록), 14(소취하접수증명원), 15(사실조회, 을제4호증의 41과 같다.), 16(사실조회회보, 을제4호증의 42와 같다.), 17, 18(각 증인신문조서, 다만 각 뒤에 믿지 않는 부분 제외), 갑제6호증(확인서), 을제2호증의 1(규칙), 2(운영규정), 을제4호증의 2(서증목록), 3(증인목록), 4(인사발령통지서), 5(처분사유설명서), 6(재심청구), 7(재심청구각하통지), 8(신문기사), 9, 10(각 진정서), 11(진정내용에 대한 진상조사실시), 12(진상조사보고), 13(인사조치에 대한 의견), 18 내지 23(각 확인서), 24(회의록), 25(회의내용), 27(이력서), 28(교원자격증), 29, 30(각 표창장), 31(감사장), 32(소장), 33, 38, 45, 46(각 증인신문조서), 34 내지 37, 48, 49(각 신문기사), 43(준비서면), 을제5호증의 1(약속서), 2(탄원서), 을제6호증(판결), 을제7호증의 1 내지 6(각 신문기사 발췌), 각 증인 의 증언에 의하여 진정성립이 인정되는 갑제4호증의 4(교직원 직위해제 및 대기발령신청), 5(제청승인), 6(이사회 회의록), 7(징계요구서), 8(징계의결서), 9(징계회의록), 각 증인 조윤철의 증언에 의하여 진정성립이 인정되는 을제4호증의 14 내지 17(각 확인서), 26(진술서), 47(진상보고), 각 변론의 전취지에 의하여 진정성립이 인정되는 갑제4호증의 10(재심회의록), 11(재심결정문)의 각 기재에 증인 의 각 증언(다만 증인 의 증언 중 뒤에 믿지 않는 부분 제외) 및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위 노

은 1978. 2. 28. 위 학교의 평교사로 발령받고 1981년 교감으로 승진되어 1983. 9. 경까지 2회의 학교장 표창을 받는 등 성실히 근무하여 오던 중 같은 달 말경 위 학교의 원고 안 교장이 60점 이하의 학생은 1984학년도 대입학력고사원서를 발부하지 말라는 지시를 하여 원서제출희망학생 129명 중 무려 77명에게 원서를 써줄 수 없게 되자 위 원고에게 학생들의 대학진학소망을 고려하여 진학을 희망하는 학생 모두에게 원서를 써주는 것이 교육적으로 좋겠다고 건의하였으나 묵살된 후 학부모의 진정으로 같은 달 29. 경기도교육위원회 장학사와 학무국장 등이 위 학교에 나와 진학을 희망하는 모든 학생에게 응시원서를 써 주라고 지시하여 60점 이하의 학생들에게도 응시원서가 발부된 사실, 위 교육위원회의 지시가 위 노 의 진정에 의한 것으로 오인한 위 원고는 자신의 지시를 따르지 않은 위 노 을 퇴직시키기로 마음먹고 위 장학사등이 돌아간 같은 달 30. 17:30경 고교 3학년 3반 담임을 겸하고 있던 위 노 과 다른 3학년 담임교사들을 불러 학생지도의 잘못으로 물의를 빚었다는 이유로 모두 사표를 내

도록 지시하고 같은 해 10. 1.에도 위 학교의 서무과장인 소외 교사등과 함께 위 노 에게 계속 사표를 내도록 강요하였으나 위 노 이 끝까지 거절하자 같은 달 3. 원고법인 이사회를 소집하여 학교장의 지시를 거부하는 등 근무태도가 불성실하고 다른 교사를 선동할 우려가 있다는 이유를 들어 위 노 에 대하여 교감직위해제 및 대기발령처분을 한 사실, 위 노 이 같은 달 4.부터 8.경까지 피고와 문교부, 경기도 교육위원회, 의정부 교육청, 정부합동민원실 등에 원고 안 이 교사발령시 백지의 사직원을 미리 받아두고 수시로 교사들에게 시달서를 쓰게 하며, 교장의 말 한마디로 학생들을 정학시키고, 교사와 학생들로부터 각종 잡부금을 걷어 이를 무단히 사용하는 등 위 노 자신이 위 학교에서 근무하면서 직접 경험, 목격한 위 학교의 비리를 적시함과 아울러 자신에 대한 부당한 직위해제 및 대기발령처분의 시정을 구하는 진정서를 제출하여 피고의 교권과장 소외 조 이 같은 달 7. 위 학교에 와 교사, 학생, 학부모 그리고 경기도 교육위원회 공무원 등을 면담하여 위 학교의 운영과 위 노 재현에 대한 위 처분의 경위를 확인하는 등 위 진정으로 그 진상이 알려지게 되자 원고법인은 같은 달 22. 징계위원회를 소집하여 위 노 이 직위해제 및 대기발령중에도 반성하지 아니하고 각계에 학교의 비리를 진정하는 등 그 자신의 교권행사를 빙자하여 학교와 학교장의 품위를 손상시키고 학교운영상의 무질서를 야기시켰다는 이유로 사립학교법 제61조 제1,2호에 의거하여 위 노 을 파면처분한 후 원고법인의 재심위원회는 같은 해 11. 26. 위 처분에 대한 재심청구를 각하한 사실, 피고는 위 파면처분 후 같은 달 21. 교권옹호위원회를 열어 위 파면처분을 중대한 교권침해로 판단하고 그 처분이 취소되지 않는 한 위 노 의 교권 회복을 위하여 노력하기로 결정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갑제4호증의 12, 13(각 신문), 17, 18(각 증인신문조서), 을제4호증의 44(탄원서에 대한 회신)의 각 기재와 증인 의 증언 중 위 인정에 반하는 부분은 믿지 아니하며, 위 갑제7호증의 1, 2, 갑제2호증의 1, 2, 3(각 판결), 갑제8호증(호적등본), 갑제9호증(진단서), 갑제10호증의 1(졸업증명서), 2, 3, 4(각 학위수여증), 갑제11호증의 1 내지 5(각 부동산등기부등본), 갑제12호증의 1, 2(법인 기본재산 대장표지 및 내용), 갑제13호증(신문)의 각 기재는 위 인정에 반하지 아니하고 달리 반증이 없다(한편 위 갑제2호증의 1, 2, 3, 갑제13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원고 안채란은 피고를 상대로 제기한 위 기사에 대한 정정보도명령사건에서 승소확정판결을 받고 위 새한신문에 그 정정보도문이 게재된 사실이 인정되나, 위 판결은 위 기사로 위

원고가 피해를 입었다고 인정한 것일 뿐 그 기사내용이 허위라는 점을 인정한 것이 아니다.).

그렇다면 위 노 은 원고 안 의 위와 같은 비교육적인 지시에 대하여 교육적 견지에서 그 시정을 요구하였을 뿐이나(경기도 교육위원회에 대한 진정이 위 노 기 아닌 학부모에 의한 것임은 위에서 인정한 바와 같다.) 이를 이유로 원고법인으로부터 부당하게 직위해제 및 대기발령처분을 받자 자신의 교권을 회복하기 위하여 이를 시정할 수 있는 관계기관에 위 처분의 부당성과 이를 뒷받침할 만한 위 학교의 운영실태 등을 적시한 진정서를 제출하였는데, 원고법인이 위 처분을 시정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학교장의 지시에 항의하여 위 처분을 받은 자가 위 진정으로 학교와 학교장의 명예를 훼손하였다는 이유로 위 노 을 파면하였다고 할 것인 바, 결코 위 노 에 대한 교권 침해가 없었다고는 볼 수 없는 위 사실에 비추어 볼 때, 교원의 지위향상과 교권 확립을 위하여 활동하는 피고가 위 진정에 의하여 원고들의 명예가 훼손되었다는 점보다는 위 파면처분에까지 이르게 된 위 사태의 발단이 위 노 이 위와 같이 학교장의 비교육적 지시에 항의한 데에 있고 이것이 또한 실질적으로 위 파면처분의 중요한 이유가 된 점을 교권침해로 판단하여 위 파면처분의 부당성을 부각시켜 보도하면서 그 실질적 이유를 「부당한 지시 항의」, 「노교감의 처신」 또는 「노교감과 교장과의 불편한 관계」라고 표현하였다고 하여 이를 진실에 반한다고는 할 수 없고, 또한 위 보도 중 피고가 위 노 의 신청으로 그 진상을 조사하고 위 노 에 대한 교권침해에 강력히 대응하기로 하였다는 부분은 피고 스스로의 행위와 판단을 그대로 보도한 것으로서 정확히 진실에 부합되는 것이라고 할 것이다.

결국 위 기사가 진실에 반하는 것임을 전제로 한 원고들의 피고에 대한 이 사건 청구는 더 나아가 살필 것 없이 이유 없음이 명백하여 이를 모두 기각하고, 소송비용의 부담에 관하여는 민사소송법 제89조, 제93조를 적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1986. 8. 21.

재판장	판사	양 인 평
	판사	문 홍 수
	판사	이 기 택

2審 判決文

사 건 : 86나3679 손해배상(기)

원고, 항소인 : 1. 학교법인 복지학원

의정부시

대표자 이사장 안

2. 안

의정부시

원고들 소송대리인 변호사 신 창 동

피고, 피항소인 : 사단법인 대한교육연합회(大韓敎育聯合會)

서울 종로구 신문로1가 25

대표자 이사 박 일 경

소송대리인 변호사 하 죽 봉

변론종결 : 1987. 5. 12.

원심판결 : 서울민사지방법원 1986. 8. 21. 선고, 86가합1441판결

주 문 : 원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원고들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 원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들에게 각금 100,000,000원 및 각 이에 대한 이 사건 소장 송달 익일부터 완제일까지 연 2할 5푼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라는 판결 및 가집행선고.

이 유 : 각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강제1호증(신문, 을제4호증의 8과 같다), 강제3호증(법인등기부 등본), 을제1호증의 1(정관), 2(시행세칙), 각 공문서이므로 진정성립이 추정되는 강제7호증의 1,2(각 경력증명)의 각 기재에 원심 및 당심증인 , 원심증인 의 각 일부 증언(단 위 의 증언 중 뒤에서 믿지 아니하는 부분 제외)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원고 학교법인 복지학원(이하 원고법인이라 한다)은 1970. 6. 13. 설립되어 의정부시 소재 복지중고등학교를 설치, 운영하는 법인이며, 원고 안 은 원고 법인의 설립자로서 1973. 11. 24.부터 1985. 4. 25.까지 위 학교의 교장으로(다만 1982. 5. 10부터는 중고교가 분리되어 고교 교장으로 재직

하였다), 1985. 5. 4.부터는 원고법인의 이사장으로 각 재직하여 온 자이고, 피고는 교원의 지위향상 및 교직원 전문성 확립을 기하여 교육의 진흥과 문화의 창달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설립된 사단법인으로서 교육계 소식과 피고의 활동을 보도하기 위하여 기관지인 새한신문을 주 1회 발행하여 전국의 회원에게 배포하고 있는 사실, 1983. 12. 5.자 새한신문 3면 중앙에『「저학력 고3학생에 학력고사 원서 발부말라」 부당지시 항의한 교감파면』이라는 제목 아래 복지중고 안 교장이 동교 졸업예정자 중 평균 60점 이하 학생들에게 84년도 대입학력고사 지원서를 발부하지 않는다는 방침을 세운 데 대하여 노 교감등 4명의 3학년 담임들은 교장에게 교육적 차원에서 재고하여 줄 것을 건의했다. 안교장은 당초의 방침을 강행하였으나 9. 28. 경기도 교육위원회가 학부모의 진정에 따라 학교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고 지원서를 추가발부토록 하였다. 안교장은 이같은 사태를 노 교감의 처신과 관련이 있는 것으로 판단, 노교감에게 사표제출을 종용했으나 동인이 이를 거부하자 학교측은 10. 3.자로 동인에 대하여 직위해제하였다가 10. 22. 징계위원회를 소집하여 사립학교법 제61조 1,2호(직무상의 무위반, 직무태만)의 사유로 노교감의 파면을 결정하였다. 노교감의 진정을 받고 10. 7. 진상을 조사한 교련의 조사결과에 의하면 직위해제 조치의 사유가 석연치 않고, 노교감의 근무태도에 문제가 없으며, 노교감과 교장과의 불편한 관계가 원인이라고 판단돼 학교측에 징계를 재고하여 줄 것을 요청하였으나 학교측이 파면 징계를 강행하고, 재심위의 전망이 어둡게 되자 교련은 11. 21. 교련옹호위원회를 소집하여 교련회복을 위한 방안을 논의하였는데 참석한 위원들은 노교감의 인사처분을 중대한 교권 침해로 판단하였으며, 교련은 노교감의 교련회복을 위한 다각적인 지원활동을 펴기로 했다는 내용의 기사가 게재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달리 반증이 없다.

원고들은 이 사건 청구원인 사실로서, 원고 안 이 동교 졸업예정자 중 평균 60점 이하 학생들에게 84학년도 대입학력고사 원서를 발부하지 않겠다는 방침을 세운 바도 없고, 교감인 노 이나 여타의 교사들에게 그러한 지시를 한 바도 없을 뿐 아니라 현행 학제상 그렇게 할 수도 없는 것이며, 원고 법인이 위 노 을 직위해제하고 나아가 파면처분한 것도 원고 안 과의 불편한 관계를 이유로 한 것이 아니라 위 노

이 교장을 보필하고 일선교사를 지휘 감독하여야 할 교감으로서 직무수행능력이 부족하고, 무단결근, 무단조퇴 등 근무태도가 불성실하였기 때문에 이사회를 소집하여 교감직위해제 및 대기발령 처분을 한 것이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위 노 이 근신하

기는 커녕 그 구제를 요구한다는 명목으로 피고, 문교부, 경기도 교육위원회 등 관계 기관에 원고 안채란을 비방하고, 위 학교운영의 문제점을 적시하는 내용의 진정서를 제출하여 결과적으로 학교장과 학교의 명예를 손상시켰으므로 같은 달 22. 징계위원회를 소집하여 위 진정행위는 교사로서의 직분에 배치되고, 교원으로서 품위손상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여 사립학교법 제61조 1,3호에 따라 위 노 에 대한 파면을 결정하였던 것임에도 불구하고, 피고 기관지인 위 새한신문은 사실의 공표 전에 모든 공표 사항의 진실성을 담보하기 위하여 충분한 조사와 주의를 경주하여야 할 언론으로서의 주의의무에 위반하여 위와 같은 허위보도를 함으로써 불법행위로 원고들의 명예를 훼손하였으니 피고는 원고들에게 청구취지 기재의 위자료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그러므로 과연 위 노 에 대한 징계경위가 원고들 주장과 같이 이에 관한 새한신문의 위 보도가 허위사실의 보도에 해당하는지의 여부에 관하여 살피건대, 원고주장사실에 부합하는 강제2호증의 1(판결), 강제4호증의 10(재심회의록), 12,13(각 신문), 17,18(각 증인신문조서), 을제4호증의 44(탄원서에 대한 회신)의 각 기재와 원심 및 당심증인 의 증언은 뒤에 인정하는 사실의 기초된 증거에 비추어 믿을 수 없고, 역시 같은 증거들에 비추어 보면 강제2호증의 2,3(각 판결), 강제4호증의 4(교직원 직위 해제 및 대기발령신청), 5(제청승인), 6(이사회 회의록), 7(징계요구서), 8(징계의결서), 9(징계회의록), 11(재심결정문), 16(사실조회회보), 강제13호증(신문)의 각 기재만으로는 원고 주장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고, 오히려 각 성립에 다름이 없는 을제2호증의 1(규칙), 2(운영규정), 을제4호증의 4(인사발령통지서), 5(처분이유설명서), 6(재심청구), 7(재심청구각하통지), 8(신문기사), 9,10(각 진정서), 11(진정내용에 대한 진상조사실시), 12(진상조사보고), 13(인사조치에 대한 의견), 18 내지 23(각 확인서), 24(회의록), 25(회의내용), 29,30(각 표창장), 32(소장), 33,38,45,46(각 증인신문조서), 34 내지 37,48,49(각 신문기사), 을제5호증의 2(탄원서), 을제6호증(판결), 을제7호증의 1 내지 6(각 신문기사 발췌), 원심증인 의 증언에 의하여 각 진정성립이 인정되는 을제4호증의 14 내지 17(각 확인서), 25(진술서), 47(진상보고)의 각 기재와 원심증인 임 , 조 , 당심증인 김 의 각 증언 및 변론의 전취지에 의하면, 위 노 은 1978. 2. 28. 위 학교의 평교사로 발령받고 1981년 교감으로 승진되어 2회의 학교장 표창을 받는 등 성실히 근무하여 오던 중 1983. 9.말경 원고 안 교장이 60점 이하

의 학생에 대하여는 1984학년도 대입학력고사 원서를 발부하지 말라는 지시를 하여 원서제출 희망 학생 129명 중 무려 77명에게 원서를 써 줄 수 없게 되자 위 원고에게 학생들의 대학진학소망을 고려하여 진학을 희망하는 학생 모두에게 원서를 써 주는 것이 좋겠다고 건의하였으나 묵살된 후 학부형으로 자처하는 성명불상자의 전화 진정으로 같은 달 29. 경기도 교육위원회 장학사와 학무국장 등이 위 학교에 나와 진학을 희망하는 학생 모두에게 응시원서를 써 주라고 지시하고 원서 마감일인 같은 달 30.까지 직접 입회, 감독함으로써 60점 이하의 학생들에게도 응시원서가 발부된 사실, 위 교육위원회의 지시가 위 노 의 진정에 의한 것이라고 생각한 원고 안 은 자신의 지시를 따르지 않은 위 노 을 퇴직시키기로 마음먹고 위 장학사등이 돌아간 같은 달 30. 17:30경 고교 3학년 담임교사들을 불러 학생지도의 잘못으로 물의를 빚었다는 이유로 모두 사표를 내도록 지시하고, 같은 해 10. 1.에도 위 학교의 서무과장인 소외 교사등과 함께 위 노 에게 계속 사표를 내도록 강요하였으나 위 노 이 끝까지 거절하자 같은 달 3. 원고 법인 이사회를 소집하여 학교장의 지시를 거부하는 등 근무태도가 불성실하고, 다른 교사를 선동할 우려가 있다는 이유를 들어 위 노 에 대하여 교감직위해제 및 대기발령처분을 한 사실, 위 노 이 이에 반발하여 같은 달 4.부터 8.경까지 피고와 문교부, 경기도 교육위원회, 의정부교육청, 정부합동 민원실 등에 원고 안 이 교사발령시 백지의 사직원을 미리 받아두고 수시로 교직원들에게 시달서를 쓰게 하며, 교장의 말 한마디로 학생들을 정학시키고, 교사와 학생들로부터 각종 잡부금을 걷어 이를 무단히 사용하는 등 위 노 자신이 위 학교에서 근무하는 동안 직접 경험, 목격한 비리를 적시함과 아울러 자신에 대한 부당한 직위해제 및 대기발령처분의 시정을 구하는 진정서를 제출한 사실, 그리하여 피고의 교권과 장 소외 조 이 같은 달 7. 위 학교에 와 교사, 학생, 학부모 그리고 경기도교육위원회 공무원등을 면담하여 위 학교의 운영과 위 노 에 대한 위 처분의 경위를 확인하는 등 위 진정으로 그 진상이 알려지게 되자 원고법인은 같은 달 22. 징계위원회를 소집하여 위 노 이 직위해제 및 대기발령 중에도 반성하지 아니하고 각계에 학교의 비리를 진정하는 등 그 자신의 교권행사를 빙자하여 학교와 학교장의 품위를 손상시키고 학교운영상의 무질서를 야기시켰다는 이유로 사립학교법 제61조 1,2호에 의하여 위 노 을 파면처분한 후 원고법인의 재심위원회는 같은 해 11. 26. 위 처분에 대한 재심청구를 각하한 사실, 피고는 위 파면처분 후 같은 달 21. 교권옹호위원회를 열어 위 파면처분을 중대한 교권침해로 판단하고 그 처분이 취소되지 않는 한 위 노 의 교

권회복을 위하여 노력하기로 결정한 사실을 각 인정할 수 있을 뿐이다.

위 인정사실에 위 새한신문의 보도내용을 견주어 보건대, 위 보도 중 피고가 위 노의 진정으로 그 진상을 조사하고, 위 노의 교권침해에 강력히 대응키로 하였다는 부분은 피고 스스로의 행위와 판단을 그대로 보도한 것으로서 정확히 진실에 부합하는 것일 뿐 아니라, 이 사건 징계경위에 관하여 살펴보다도 결국 노은 원고안의 비교육적 지시에 대하여 교육적 견지에서 시정을 요구하였다가 이것이 실질적 원인이 되어 원고법인으로부터 부당하게 직위해제 및 대기발령처분을 받게 된 것이고, 이에 자신의 교권을 회복하기 위하여 이를 시정할 수 있는 관계기관에 위 처분의 부당성과 이를 뒷받침할 만한 학교의 운영실태 등을 적시한 진정서를 제출하였다가 위 진정으로 학교와 학교장의 명예를 훼손하였다는 이유로 파면까지 당한 것으로써 이는 노에 대한 교권침해가 아니라고는 할 수 없다 할 것인 바, 교원의 지위향상과 교권확립을 위하여 활동하는 피고가 위 파면처분에 이르게 된 사태의 발단이 위 노이 위와같이 학교장의 비교육적 지시에 항의한 데에 있고 이것이 또한 실질적으로 위 파면처분의 중요한 이유가 되었다는 점을 들어 중대한 교권 침해로 판단하고 위 노

의 진정에 의하여 원고들의 명예가 훼손되었다는 점보다는 위 파면처분의 부당성을 부각시켜 보도하면서 파면처분의 실질적 이유를 ‘부당한 지시 항의’, ‘노교감의 처신’, ‘노교감과 교장과의 불편한 관계’라고 표현하였다고 하여 이를 진실에 반한다고 할 수 없다 할 것이다.

그렇다면, 위 기사가 진실에 반하는 허위보도라고 주장하면서 이를 전제로 하여 손해배상을 구하는 원고들의 피고에 대한 이 사건 청구는 더 나아가 판단할 것도 없이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 바, 원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고, 이에 대한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원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고, 항소비용은 패소자인 원고들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1987. 8. 18.

□

재판장 판사 김 중 화
판사 채 영 수
판사 임 순 명

假名으로 게재된 手記의 人的 事項이 原告와 일치하여 名譽가 毀損되었으니 그 피해를 賠償하라

서울민사지방법원 1986. 12. 24.자 판결(86가합3104)

事實概要

서울민사지법 제8부(재판장 한광세 부장판사)는 1986년 12월 24일 진 씨
와 그의 가족 3인이 중앙일보사를 상대로 낸 사죄광고게
재등 청구소송에서 「비록 가명을 사용했더라도 본인 모르게 게재된 수기형식의 보도로
인해 피해가 발생했을 경우 언론사는 그 피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판시, 피고 중
앙일보사는 원고 진씨에게 150만원의 위자료를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원고 진씨는 아파트에서 떨어져 숨진 자기 아들의 죽음과 관련, 중앙일보사 발행
「여성중앙」이 1986년 6월호에 자신도 모르게 이현선(45·강남구 도곡동)이라는 가명
으로 『1등 압박으로 스스로 죽음 택한 중3생 어머니의 수기』라는 제목 아래 아들을 회
고하는 내용의 글을 게재함으로써 가족 모두가 정신적 피해와 함께 명예를 훼손당했다
고 주장, 소송을 냈었다.

재판부는 판결이유에서 「수기에 게재된 필자의 주소·연령·가족관계 등 인적 사항,
아파트 15층에 거주한다는 사실, 가족 모두가 교회에 다닌다는 점 등을 종합해 볼 때
비록 필자와 망인 등의 이름을 다르게 표시했다 하더라도 원고들을 알거나 추락사한
망인에 대해 보도된 신문 기사에 관심을 가졌던 독자라면 누구나 쉽사리 수기의 필자
가 원고라고 단정할 수 있다」고 밝히고 주위사람들로부터 아들이 숨진 지 한달도 채
못되어 슬픔도 있고, 고료나 받으면서 이에 관한 수기를 쓴 어머니라는 잘못된 평가를

받음으로써 명예를 손상당했다는 원고 진씨의 주장은 충분히 인정된다고 판시했다.

한편 재판부는 원고 진씨등이 청구한 일간신문 사죄광고 게재 부분에 대해서는 피고 회사 발행 「여성중앙」에 이미 정정보도문이 게재됐고, 문제의 수기가 보도된 지 상당한 기간이 흘러 일간신문에 사죄광고가 나가더라도 명예회복에 큰 효력이 없는 것으로 인정된다고 판시, 기각했다.

이 보도와 관련 진 씨는 1986년 6월 17일 언론중재위원회에 정정보도 신청을 했으나 불성립되자(중재신청 내용은 「언론중재」 통권 제22호 77면 참조), 1986년 7월 7일 서울민사지방법원에 정정보도청구소송을 제기하였다. 서울민사지방법원에서 진씨가 승소하자 중앙일보사는 항소하였으나 1987년 3월 18일 항소기각되었다.

判 決 文

사 건 : 86가합3104 사죄광고 게재등

원 고 : 1. 최

2. 진

3. 최

4. 최

원고들주소 : 서울

원고4는 미성년자이므로 법정대리인 친권자 부 최 , 모 진

원고들 소송대리인 변호사 임재연

피 고 : 주식회사 중앙일보사

서울 중구 순화동 7 대표이사 이종기

소송대리인 변호사 정 성 철

변론종결 : 1986. 11. 12.

주 문 : 1. 피고는 원고 진 씨에게 금 1,5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1986. 6. 1. 부터 1986. 12. 24.까지는 연 5푼, 1986. 12. 25.부터 완제일까지는 연 2할5푼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2. 원고 최 의 청구와 원고 진 의 나머지 청구를 각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원고 진 와 피고 사이에 생긴 부분은 3분하여 그 1은 피고의, 그 나머지 2는 같은 원고의 부담으로 하고, 나머지 원고들과 피고 사이에 생긴 부분은 같은 원고들의 부담으로 한다.

4. 위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 피고는 이 판결을 송달받은 날로부터 2일 이내에 서울에서 발행되는 중앙일보와 조선일보에 별지 사죄광고문 내용과 같은 사죄광고를 명조 제5호활자로 가로 6센티미터, 세로 10센티미터의 크기로 게재하라. 피고는 원고 최 에게 금 1,000,000원, 같은 진 에게 금 3,000,000원, 같은 최 , 같은 최 에게 각 금 500,000원 및 각 이에 대한 1986. 6. 1.부터 이 사건 소장송달일까지는 연 5푼, 그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는 연 2할5푼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는 판결 및 금원지급 부분에 대한 가집행선고.

이 유 :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제1호증(기사본문), 갑제3호증(주민등록표 등본), 갑제4호증의 3, 4(각 중재조서), 갑제5호증(여성중앙 표지), 갑제6호증(목차), 을제1호증의 1, 2(각 신문)의 각 기재, 원고 진 에 대한 본인신문결과 및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피고가 발행하는 월간지 여성중앙 1986년 6월호의 앞표지 우측 하단부분에 『1등 압박에 죽음부른 중3생 어머니 육필수기』라는 제목이 게재되고 목차 중 애독자 체험수기 특선란에 『1등 압박속에 스스로 죽음 택한 중3생 어머니 수기』라는 제목이 게재되고 위 제목에 관한 글로서 그 잡지의 287면부터 293면까지에 걸쳐서 『1등 압박으로 스스로 죽음 택한 중3생 어머니 수기』, 『머리좋은 아이 키우기가 이렇게 힘든 줄 몰랐어요』 등의 제목 아래 이현선(45세, 강남구 도곡동)의 이름으로 필자는 대학생 아들과 중학교 3학년생인 쌍둥이 남매 정훈이와 정은이의 어머니인데 정훈이는 학교에 다니면서 쌍둥이 남매라는 사실에 매우 신경을 쓰는 듯 하였다. 필자의 장남은 1대 상대에 다니고 있고 정훈이와 정은이 남매도 스스로 공부를 잘하여 주위로부터 부러움을 샀으며 정훈이는 중학교 3학년이 되고 4월 모의고사에서 학년 전체에서 1등을 하기도 했는데 5월 중간고사 발표가 있는 후부터 유난히 우울해 하고 무언가 고민하는 듯 하여 병원에 데려갔더니 의사 선생님이 공부를 떨쳐버리고 며칠 푹 쉬도록 하라고 권고하기도 하였으나 그렇게 하지 못하고 있던 중 시험 전날인 5월 7일 저녁식사 중 갑자기 배란다로 뛰어가 원고들 가족이 살고 있는 아파트 맨위층인 15층에서 투신자살하였다. 죽어라고 공부만 하다가 간 정훈이가 불쌍하다는 요지의 수기가 게재되고 수기 중간에 고민하는 듯한 여자의 사진(원고 의 사진이 아님) 4장이 삽입되어 반포

된 사실, 한편 원고 진 는 당시 그 가족인 원고들과 함께 서울

1502호에 살고 있던 세의 주부로서 대학생 아들과 중학교 3학년생인 쌍둥이 남매의 어머니인데 쌍둥이 중 최 이 1986. 5. 7. 19:00경 아파트 15층 베란다에서 추락하여 사망하였고 위 사실이 1986. 5. 9.자 중앙일보와 조선일보 등에 보도된 일이 있었는데 위 원고는 위 여성중앙지에 게재된 수기를 쓰거나 여성중앙 기자와 면담한 사실조차 없는데도 여성중앙 기자가 수기의 형식을 빌어 위와 같은 글을 만들어 여성중앙지에 게재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반증이 없다.

원고들 소송대리인은 위 글은 원고 진 가 피고 소속의 여성중앙지의 기사를 면담하거나 수기를 쓴 일이 없는데 피고회사의 여성중앙 소속 기자등의 직원들이 비록 가명을 쓰기는 하였으나 위 원고가 수기를 쓴 것처럼 애독자 수기의 형식으로 위 잡지에 글을 게재했고, 그 내용에 있어서도 첫째, 위 망 최 이 자살한 것으로 게재되어 있으나 자살인지, 실수로 떨어진 것인지 원고들도 그 원인을 잘 알 수 없는 것이고, 둘째, 위 원고가 평소에 망인에게 공부만 하라고 강요한 것으로 묘사되어 있으나 위 원고가 망인에게 공부문제로 다툰 사실이 없으며, 세째로 위 글 중에 실린 사진은 모두 위 원고 아닌 다른 사람의 사진으로서 모두 허위의 내용으로서 위 수기로 인하여 원고들은 명예를 훼손당하여 피해를 입었으므로 이로 인하여 입은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의 지급과 그 명예회복을 위한 적당한 처분으로서 중앙일보와 조선일보에 청구 취지 기재와 같은 사죄광고의 게재를 구한다고 주장함에 대하여 피고 소송대리인은 위 수기는 원고 진 아닌 가명 이현선의 이름으로 게재되고 망인의 이름도 가명인 정훈으로 표시하였으며, 사진도 위 원고의 것이 아닐 뿐 아니라 위 수기가 게재될 무렵에 이와 유사한 학생자살사건이 많이 발생하여 위 원고가 수기를 쓴 것으로 오인될 염려가 없고, 또 가사 위 원고가 수기를 쓴 것으로 오인되었다 하더라도 내용에 있어서 허위의 점이 없고, 또 원고들의 명예를 훼손할만한 것이 없으므로 이 사건 원고들의 청구에 응할 수 없다고 다룬다.

그러므로 살피건대 앞에서 인정한 사실에 의하면 수기에 나타난 필자의 주소, 연령, 가족관계 등 인적 사항, 아파트 15층에 거주하는 점등이 위 원고와 일치하고, 또 위 기사(갑제1호증)의 기재내용과 원고 본인신문결과에 의하면 수기의 필자가족과 원고들 가족 모두가 교회에 다니는 점까지 일치하는 사실이 인정되어 위 사실들을 종합하면 비록 필자와 망인 등의 이름을 다르게 표시하였다 하더라도 위 원고들을 알거나 위 사

고가 보도된 신문기사에 관심을 가졌던 독자라면 누구나 쉽사리 위 글을 위 원고가 쓴 수기라고 단정할 수 있게 되었다 할 것이고, 따라서 위 원고는 위와 같은 주위사람들로부터 아들이 사망한 지 한달도 채 못되어 슬픔도 잊고, 고료나 받으면서 이에 관한 수기를 쓴 여자라는 잘못된 평가를 받아 그 명예를 손상당하였다고 할 것이다.

그렇다면 위와 같은 명예의 손상으로 인하여 위 원고가 정신적 고통을 입고 있을 것은 경험칙상 자명하므로 피고는 위 글을 만들어 게재, 반포한 여성중앙지 직원들의 사용자로서 그들의 위와 같은 업무집행 중의 불법행위로 인하여 위 원고가 입은 정신적 고통을 금전으로 배상, 위자하여 줄 의무가 있다 할 것인 바, 나아가 그 액수에 관하여 보면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원고의 나이, 가족관계, 사회적 지위, 피고가 이 사건 글을 실게 된 동기, 글의 내용의 진실성, 공익성의 정도, 명예손상의 정도 등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볼 때 위 원고에 대한 위자료로서는 금 1,500,000원이 상당하다 할 것이다.

나아가 나머지 원고들의 위자료 청구에 관하여 보건대 갑제1호증에 의하여 기사의 내용을 검토하여 보아도 위 글에 의하여 위 원고들에 대한 사회적 평가가 특기할 만큼 저하되었다고 인정되지는 아니하므로 위 원고들의 위자료 청구는 이유 없어 받아들이지 않는다.

다음으로 원고들의 사회광고 청구에 관하여 살피건대, 피고가 여성중앙지에 원고 진부자가 수기를 쓴 것처럼 오인될 글을 게재하여 위 원고의 명예를 손상한 사실은 위에서 본 바와 같으나 ① 원고등의 이름은 가명을 사용하여 위 원고가 위 글을 쓴 것으로 인식할 사람은 그다지 많지 않다 할 것이고, ② 한편 위 기사(갑제1호증)의 내용을 보면 수기의 필자가 사망한 아들에게 공부를 강조한 듯한 내용이 있기는 하나 위 원고가 남달리 아들에게 공부를 강조하여 심리적 부담을 주었다고 인정할 수 있는 내용은 엿보이지 않고 오히려 위 망인이 평소에 스스로 공부를 열심히 하였다고 기술하고 성적을 중시하는 주위 사회의 전체적 분위기 때문에 망인 스스로 성적을 잘 따려고 하다가 자살한 것으로 묘사하고 있으며, ③ 위 기사내용 중 사망원인이 성적 압박으로 인한 자살이라고 인식될 수 있는 부분은, 망인의 사망원인이 사망 직후의 일간지(1986. 5. 9.자 중앙일보, 조선일보)에 이미 위와 같은 내용으로 보도되었으며, 또 사망원인이 자살인가 아닌가에 의하여 원고들의 명예손상등의 정도에 별다른 차이가 있다고 인정되지는 아니하므로 위 사망원인에 관한 부분은 원고들의 명예를 그다지 손상한 것으로 볼 수 없고, ④ 기사 중의 사진이 원고 가 아닌 다른 사람의 것이라는 점은 그

것만으로는 원고들의 명예를 손상한 것으로 인정되지는 않는다 할 것이고, ⑤ 또 언론 기본법에 의하면 정기간행물에 공표된 사실적 주장에 의하여 피해를 받은 자는 정정보도의 게재를 청구할 수 있도록 되어 있어 성립에 다툼이 없는 을제4호중(판결)의 기재와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원고 진 는 위 여성중앙지의 발행 후 피고를 상대로 언론중재위원회의 중재절차를 거쳐 이 법원에 정정보도청구의 소송을 제기하여 1986. 9. 26.자로 피고가 여성중앙지에 원고 진 가 그러한 수기를 쓴 일이 없으며 망인의 사망원인도 자살인지, 사고인지 모르며 위 원고가 자식들에게 평소 공부만 하라고 강요한 일이 없다는 요지의 정정보도문을 게재하도록 원고 승소판결이 선고되어 현재 피고가 이에 불복, 항소하여 고등법원에 소송이 계속 중인 사실이 인정되는 바, 위와 같은 여러가지 사정을 종합하여 볼 때 위 잡지가 반포된 지 상당한 기간이 경과한 지금에 이르러 위와 같은 정정보도 외에 일간신문에 위 원고들이 청구하는 바에 따른 사죄광고를 게재하는 것은 그 명예회복을 위한 적당한 처분으로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이 부분 원고들의 청구는 이유 없어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그렇다면 피고는 원고 진 에게 위자료 금 1,500,000원과 이에 대하여 위 잡지의 발행일로 볼 1986. 6. 1.부터 이 판결선고일인 1986. 12. 24.까지는 민법 소정의 연 5푼, 그 이튿날부터 완제일까지는 소송촉진등에 관한 특례법 소정의 연 2할 5푼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할 것이니 (위 원고는 이 사건 소장 송달 이튿날부터 연 2할5푼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하고 있으나, 피고가 그 이행 의무의 존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하다고 인정되므로 위 비율에 의하지 아니한다), 원고 진 의 이 사건 청구는 위에서 인정한 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 그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고, 나머지 원고들의 청구는 모두 이유 없어 각 기각하고, 소송비용의 부담에 관하여는 민사소송법 제89조, 제92조, 제93조를, 가집행선고에 관하여는 소송촉진등에 관한 특례법 제6조를 각 적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1986. 12. 24.

재판장	판사	한	광	세
	판사	한	덕	렬
	판사	성	기	문

〈별지〉 사죄광고문

1. 본사가 발간한 여성중앙 1986년 6월호에 실린 『머리좋은 아이 키우기가 이렇게 힘들 줄은 몰랐어요』(288면 내지 293면)는 당사자 본인의 육필수기인 형식으로 수록되어 있으나 당사자 진 씨는 본사 기자와 면담한 사실조차 없음에도 본사 편집부 직원이 사실과 전혀 다른 가상의 내용을 마치 당사자 본인이 가명을 이용하여 작성한 수기인 것처럼 정리한 것임에 불과하며 사진도 당사자 본인과 아무런 관계 없는 것임을 밝히는 바입니다.

2. 본사는 불시에 극한적인 슬픔을 당한 한 가정에 대하여는 아무런 배려도 없이 단지 잡지의 판매부수를 증가시키려고 그 형식 및 내용에 있어서 허위의 기사를 게재함으로써 당사자 본인의 명예를 훼손하고 극심한 정신적 고통을 주게 된 점에 대하여 심심한 유감의 뜻을 표시하는 바이며, 아울러 독자 여러분께도 위와 같이 명의를 도용하여 허위내용의 기사를 수록한 점에 대하여 사과의 말씀을 드립니다.

중앙일보사 여성중앙 편집부

□

前科가 틀리게 記載된 報道資料를 경찰이 배포해 被害를 주었으므로 國家는 慰藉料를 지급하라

서울민사지방법원 1988. 4. 29.자 판결(87가합3739)

事實概要

서울민사지방법원 제17부(재판장 이용웅 부장판사)는 郭 씨가 언론이 자신의 전과기록을 잘못 보도해 피해를 보았다고 주장, 6개 신문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원고는 전과 1범인데도 경찰이 전과 7범으로 잘못 기재한 보도자료를 배포, 기자들이 이 보도자료를 그대로 전재, 보도함으로써 전과가 틀리게 보도된 것이므로 언론사들은 고의 또는 과실이 없다」며 원고 패소판결을 내렸다.

그러나 재판부는 원고가 국가를 상대로 동시에 낸 「국가에 과실이 있어 소송에서는 원

고에게 피해를 보인 것이 인정되므로 국가는 원고에게 1백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判 決 文

사 건 : 87가합3739 손해배상(기)

원 고 : 광

서울

소송대리인 변호사 박 정 서

피 고 : 1. 대한민국

법률상 대표자 법무부 장관 정 해 창

소송수행자 박종환, 배희선, 황준환, 이상직

2. 주식회사 동아일보사(東亞日報社)

서울 종로구 세종로 139

대표이사 김상기, 김성열, 김병관

3. 주식회사 조선일보사(朝鮮日報社)

서울 중구 태평로 1가 61

대표이사 방우영, 방상훈, 신동호

4. 주식회사 중앙일보사(中央日報社)

서울 중구 순화동 7

대표이사 이 종 기

5. 주식회사 서울신문사

서울 중구 태평로 1가 25

대표이사 이 광 표

6. 사단법인 경향신문사(京鄕新聞社)

서울 중구 정동 22

대표이사 노 철 용

7. 주식회사 한국일보사(韓國日報社)

서울 종로구 중학동 14

대표이사 김창열, 장재국

피고 2 내지 7의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 동 환

변론종결 : 1988. 4. 15.

- 주 문 : 1. 피고 대한민국은 원고에게 금 1,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1987. 7. 28.부터 1988. 4. 29.까지는 연 5푼, 그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는 연 2할5푼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2. 원고의 피고 대한민국에 대한 나머지 청구 및 피고 주식회사 동아일보사, 피고 주식회사 조선일보사, 피고 주식회사 중앙일보사, 피고 주식회사 서울신문사, 피고 사단법인 경향신문사, 피고 주식회사 한국일보사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원고와 피고 대한민국 사이에 생긴 비용은 이를 10분하여 그 9는 원고의, 나머지는 같은 피고의 각 부담으로 하고, 원고와 나머지 피고들 사이에 생긴 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금 20,000,000원 및 이에 대한 이 사건 소장 송달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 연 2할5푼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소송비용은 피고들의 부담으로 한다는 판결 및 피고 대한민국을 제외한 나머지 피고들에 대한 가집행선고.

이 유 : 1. 본안전 항변에 관한 판단

피고 대한민국은 원고가 같은 피고를 상대로 제기한 이 사건 소는 국가배상법 제9조에 정한 배상심의회의 결정을 거치지 아니하였으므로 부적법하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국가배상법 제9조에 의하면 같은 법에 의한 손해배상의 소송은 배상심의회의 배상금 지급 또는 기각의 결정을 거친 후에 한하여 이를 제기할 수 있으나 다만 배상금지급신청이 있는 날로부터 3월을 경과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규정되어 있는 바,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제4호증(접수증명)의 기재에 의하면 원고는 1987. 11. 7. 이 사건 피고 대한민국의 불법행위를 이유로 서울지구 배상심의회에 배상금 지급신청을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위 신청일로부터 이 사건 변론종결일인 1988. 4. 15.까지 위 3월의 기간이 이미 경과하였음은 역수상 명백하므로, 같은 피고의 위 본안전 항변은 이유 없다.

2. 본안에 관한 판단

각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제1호증의 1 내지 6(각 신문), 갑제2호증(판결), 을제1호증(보도자료)의 각 기재와 이 법원의 치안본부장에 대한 전과사실조회결과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서울특별시 경찰국은 1986. 10월경 원고 및 소의

등 14인이 공모하여 위 전 을 고위층의 인척인 양 사칭하여 1980. 5. 17. 조치때 당국이 부정축재자로부터 환수하여 모 정당 정치자금조성을 위하여 내놓은 시가 3천억원 상당의 토지를 절반값에 사주겠다고 소외 이 , 이 을 기망하여 그들로부터 금 57억원을 편취하려 하였다는 혐의로 원고를 비롯한 위 14인을 수사함에 있어, 위 경찰국 지능계 소속 경위 소외 황 은 동아일보, 조선일보, 중앙일보, 서울신문, 경향신문, 한국일보 등 도하 각 신문사 기자들에게 보도자료(을제1호증)라는 유인물을 배부하면서 위 피의사실을 공표한 사실, 그런데 원고가 전에 처벌받은 전과로는 1976. 4. 17. 서울형사지방법원에서 업무상 횡령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의 판결을 선고받은 외에 다른 전과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위 보도자료에는 필경사의 착오로 전과 1범인 원고가 전과 7범으로 기재되어 있었는데 위 황 은 위와 같은 오기를 간과한 채 원고를 전과 7범이라고 그대로 발표한 사실, 그리하여 피고 주식회사 동아일보사, 피고 주식회사 중앙일보사, 피고 사단법인 경향신문사는 1986. 10. 27.에, 피고 주식회사 조선일보사, 피고 주식회사 서울신문사, 피고 주식회사 한국일보사는 1986. 10. 28.에 위 피고들 발행의 각 신문에 원고등 14인에 대한 위 피의사실을 보도함에 있어 위 보도자료에 기재된 그대로 원고의 나이와 주소를 적시하면서 원고를 전과 7범이라고 보도한 사실, 그런데 원고는 위 피의사실에 관하여 1987. 3. 10. 서울형사지방법원에서 무죄판결을 선고받았으나 검사가 항소하여 현재 항소심공판이 계속 중인 사실을 각 인정할 수 있고 달리 반증이 없다.

이에 원고는 피고들이 공동하여 전과 1범인 원고를 전과 7범이라고 함부로 발표, 보도함으로써 원고의 명예를 훼손하였으므로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그 정신적 고통에 따른 위자료로서 금 20,000,000원을 배상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그러므로 살피건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위 황 으로서는 위 피의사실에 관하여 신문사 기자들에게 위 보도자료를 배부, 발표함에 있어 위 보도자료가 정확하게 작성되어 있는지의 여부를 확인 점검하였어야 할 것임에도 불구하고 이를 게을리한 채 원고가 전과 7범으로 잘못 기재되어 있는 위 보도자료를 그대로 배부, 발표하여 그것이라도 하 각 신문에 보도되게 함으로써, 결과적으로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원고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할 것이므로 피고 대한민국은 서울특별시장에게 위임한 경찰사무에 관하여 서울특별시 경찰국 소속의 공무원인 위 황 의 직무집행상의 과실로 말미암아 원고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할 것이나, 한편 나머지 피고들은 위

피의사실을 보도함에 있어 서울특별시 경찰국의 공식발표를 위 보도자료에 기재된 대로 보도한 이상 그 보도내용 중에 원고가 전과 7범이라는 내용의 허위사실이 포함되어 있었다 하더라도 그 사실이 진실한 것이라고 믿었고 또 그와 같이 믿은 데에는 상당한 이유가 있다 할 것이어서 위 피고들에게 원고의 명예를 훼손하는 것에 관한 고의나 과실이 있다고 볼 수 없으니 위 피고들의 위와 같은 보도행위가 불법행위임을 전제로 하는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할 것이다.

나아가 피고 대한민국이 원고에게 배상할 위자료의 수액에 관하여 보건대, 성립에 다툼이 없는 을제2호증(자술서), 증인 진 의 증언에 의하여 진정성립이 인정되는 갑제3호증(이력서)의 각 기재와 같은 증인의 증언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12. 1.생으로 1961. 3월 사범학교를 졸업하고 군복무를 마친 뒤 독서실 및 약국경영, 동신약품상사나 잡지사, 약국 등의 직원으로 일해온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달리 반증이 없는 바, 위와 같은 원고의 경력, 직업, 나이, 전과관계와 원고의 가족친지관계, 사기미수혐의를 받게 된 경위, 피해의 정도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사정을 참작하면 그 위자료액은 금 1,000,000원으로 정함이 상당하다 할 것이다.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 대한민국에 대한 청구는 위 금 1,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위 불법행위일 이후로서 원고가 구하는 이 사건 소장이 같은 피고에게 송달된 다음날임이 기록상 명백한 1987. 7. 28.부터 같은 피고가 이 사건 손해배상소송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이 판결선고일인 1988. 4. 29.까지는 민법소정의 연 5푼, 그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는 소송촉진등에 관한 특례법 소정의 연 2할5푼의 각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하는 범위내에서만 이유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고, 그 나머지 청구 및 원고의 피고 대한민국을 제외한 나머지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이유없으므로 이를 모두 기각하며, 소송비용의 부담에 관하여는 민사소송법 제89조, 제92조를 적용하고, 가집행선고는 위 특례법 제6조 제1항 단서에 의하여 허용되지 아니하므로 이를 붙이지 아니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1988. 4. 29.



재판장 판사 이 용 응
판사 황 덕 남
판사 신 창 수

社會通念上 廣告에 실린 그림이 원고라고
곧바로 식별할 수 있는 정도는 아니라고
보여지므로 肖像權이 侵害되었다고
단정할 수 없다

서울민사지방법원 1988. 5. 11.자 판결(87가합6175)

事實概要

서울민사지방법원 제8부(조용완 부장판사)는 1988년 5월 11일 화장품회사 전속모델이었던 김 (예명:)씨가 서울광고기획주식회사와 주식회사 영동백화점을 상대로 낸 위자료청구소송에서 청구기각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그림의 얼굴 모습이 사진에 나온 원고의 얼굴과 같거나 그 외면적 특징을 그대로 나타내고 있다고는 볼 수 없으므로 원고의 초상권이 침해되었다고 단정할 수 없을 것이다.」고 밝혔다.

金씨는 영동백화점이 5일장 선전광고에 金씨의 사진과 유사하게 한복을 입은 여인이 비너를 쫓는 모습의 삽화를 게재하자 피고들을 상대로 위자료청구소송을 냈었다.

判 決 文

사 건 : 87가합6175 위자료

원 고 : 김

서울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 일 재

피 고 : 1. 서울광고기획(廣告企劃)주식회사
서울 중구 서소문동 58의 7 대표이사 홍 성 옥
2. 주식회사 영동백화점(永東百貨店)
서울 강남구 논현동 119 대표이사 김 형 목
피고들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 교 창

변론종결 : 1988. 5. 4.

주 문 :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금 21,000,000원 및 1987. 10. 27.부터 이 판결선고일까지는 연 5푼, 그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는 연 2할5푼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소송비용은 피고들의 부담으로 한다 라는 판결 및 가집행의 선고.

이 유 : 1. 이건 광고의 게재등의 경위
각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제2호증(광고), 갑제3호증(신문), 갑제8호증의 3(진술조서), 을제2호증(도안), 을제3호증의 1,2(향장지 표지 및 내용), 을제4호증의 3 내지 6(각 피의자신문조서)의 각 기재와 증인 의 증언에 변론의 전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 서울광고기획주식회사(이하 피고 서울광고기획이라고 한다)는 1986. 1.경 피고 주식회사 영동백화점(이하 피고 영동백화점이라고 한다)과의 사이에 광고대행 계약을 체결하고 그 즈음부터 위 피고의 광고업무를 대행해 오던 중 1987. 10.경 위 피고로부터 같은 달 27.부터 같은 달 31.까지 5일장이라는 이름으로 실시하는 특별판매기간의 신문광고를 제작해 줄 것을 의뢰받은 사실, 피고 영동백화점은 매월 그달의 말일로부터 5일간 위와 같이 5일장이라는 행사를 하면서 우리나라 고유의 민속적인 모습을 주제로 하여 광고하여 왔으므로 피고 서울광고기획은 소외 태평양화학주식회사가 발행한 화장품선전책자인 「향장」지 1979. 9호에 실린 바 있던 한복을 입은 원고가 머리에 비녀를 꽂는 사진이 그 구도나 내용이 피고 영동백화점의 5일장 행사를 광고하는 데 적절하다고 보고 위 사진을 이른바 일러스트레이션(illustration) 작가인 소외 조 에게 맡겨 이를 묘사하도록 한 후, 1987. 10. 27.자 조선일보 8면에 가로 14.9센티미터, 세로 55센티미터의 크기로 피고 영동백화점의 5일장 선전광고를 게재하면서 위 사진과 유사하게 한복을 입은 여인이 비녀를 꽂는 모습의 삽화를 넣은 사실, 피고 영동백화점은 1987. 10. 26. 피고 서울광고기획으로부터 위 조선일보에 게재한

광고삽화의 원판을 받아 이를 이용하여 가로 54.2센티미터, 세로 49.5센티미터 크기의 광고전단 약 30만장을 제작하여 이를 서울 강남구, 강동구 등 지역에 배포한 사실, 한편 원고는 1972. 9.경부터 1979. 5.경까지 소외 태평양화학주식회사의 화장품 선전광고를 위한 전속모델로 종사하여 오다가 모델생활을 중지하고 1987. 5. 30. 소외 과 혼인하여 가정주부로서 생활해 오고 있는데, 피고 서울광고기획은 위와 같이 원고의 모습이 실린 사진을 묘사하여 광고제작에 이용하면서 원고의 동의나 승낙을 얻지 아니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달리 반증이 없다.

2. 피고들의 불법행위의 성부

원고는, 이진 광고는 특정백화점의 상품선전광고임에도 불구하고 피고들은 위 광고에 원고의 승낙을 얻지 아니하고 그 초상사진을 사용함으로써 원고의 초상권을 위법하게 침해하였으므로 이로 인하여 원고가 입은 정신적 및 재산적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주장한다.

그러므로 살피전대, 초상권이라 함은 얼굴 기타 사회통념상 특정인이라고 식별할 수 있는 신체적 특징에 관하여 이것이 함부로 촬영되어 공표되거나 또는 광고등에 무단히 사용되는 것을 방지함으로써 초상의 인격가치를 보호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인격권의 일부라고 할 것이고 따라서 초상의 묘사방법이 사진촬영이든 또는 일러스트레이션과 같은 회화적 방법등에 의한 것인지 등을 묻지 아니하고 그 보호를 받을 것이지만 초상권은 인간의 외면적인 모습을 그 보호대상으로 하는 것이므로 묘사되어진 초상이 사회 일반인이 보아 누구인가를 곧 알 수 있을 정도로 묘사된 경우에 한하여 초상권의 침해를 인정할 수 있다 할 것인 바, 원고가 소외 태평양화학주식회사의 모델로 나온 사진의 영상(을제3호증의 2)과 피고들의 광고에 실린 그림의 모습(갑제2, 3호증)을 대조하여 보면 위 그림의 내용과 구조가 위 사진의 그것과 일치하기는 하나 위 그림의 얼굴 모습이 사진에 나온 원고의 얼굴과 같거나 그 외면적 특징을 그대로 나타내고 있다고는 볼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사회통념상 위 광고에 실린 그림이 원고라고 곧바로 식별할 수 있는 정도는 아니라고 보여지므로 결국 피고들이 원고를 모델로 촬영한 사진을 토대로 삽화를 제작 반포함으로써 그 사진의 저작권을 침해하였음은 별론으로 하고 이러한 사실만으로 곧 원고의 초상권이 침해되었다고 단정할 수는 없을 것이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들이 원고의 초상권을 침해하였음을 전제로 한 원고의 이진 청구는 나머지 점에 관하여 판단할 것이 없이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인 원

고의 부담으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1988. 5. 11.

□

재판장 판사 조 용 완
판사 권 순 일
판사 이 병 로

商品案内冊子에 쓰일 목적으로 찍은 寫眞을
月刊誌 廣告에 사용한 것은 肖像權
侵害이므로 損害賠償金을 지급하라

서울민사지방법원 1988. 9. 9.자 판결(87가합6032)

事實概要

서울민사지법 제17부(재판장 李隆雄 부장판사)는 10일 상품안내책자에 쓰일 목적으로 찍은 사진을 월간지 광고에 사용한 것은 초상권침해라며 TV탤런트 韓 양이 광고대행회사인 엘 지 애드등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피고 엘 지 애드는 손해배상금 8백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韓양은 1987년 1월 20일 엘 지 애드와 반도패션 봄철의류 캐탈로그 모델계약을 한 후 사진 5장을 찍었으나 계약과는 달리 여성월간지에 이 사진을 무단게재하자 초상권의 침해라며 소송을 냈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韓양 동의 없이 월간잡지 광고에 사진을 사용한 것은 초상권을 침해한 것」이라며 「영화배우와 TV탤런트로서 韓양의 인기와 잡지발행부수를 감안 8백만원을 지급하라」고 밝혔다.

判 決 文

사 건 : 87가합6032 손해배상(기)

원 고 : 한

서울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 동 욱

피 고 : 1. 럭키금성상사주식회사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 20 대표이사 이 헌 조

2. 주식회사 엘.지.애드

서울 중구 남대문로5가 120 대표이사 변규철

피고들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 동 환

변론종결 : 1988. 8. 26.

- 주 문 :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금 8,000,000원 및 이에 대한 1987. 12. 15.부터 완제일까지 연 2할5푼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2.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나머지 청구를 각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이를 4분하여 그 3은 원고의, 나머지는 피고들의 각 부담으로 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금 30,000,000원 및 이에 대한 이 사건 소장 송달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 연 2할 5푼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소송비용은 피고들의 부담으로 한다는 판결 및 가집행선고.

이 유 : 각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제1호증의 1 내지 4, 갑제2호증의 1 내지 4(각 캐털로그 표지 및 내용), 갑제2내지 6호증의 각 1,2(각 잡지표지 및 내용), 을제2호증의 1,2(각 원천징수영수증), 공성부분의 성립은 다툼이 없고 사성부분은 공성부분의 기재내용에 의하여 진정성립이 인정되는 갑제7호증(진술서), 증인 정 의 증언에 의하여 진정성립이 인정되는 을제1호증(광고대행 및 광고물 제작 계약서)의 각 기재와 위 증인 및 증인 박 의 각 증언(증인 정호림의 증언 중 뒤에서 믿지 않는 부분 제외)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피고 럭키금성주식회사(이하 피고 럭키금성이라 한다)는 의류등 각종 봉제제품 기타 각종 천연인조섬유제품과 그 원료의 매매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회사이고 피고 주식회사 엘. 지. 애드(이하 피고 엘. 지. 애드라 한다)는 광고대행업과 광고물 제작 및 판매업을 목적으로 하는 회사인데, 피고들 사이에 1986.

10. 1. 피고 엘. 지. 애드가 피고 럭키금성의 기업홍보 및 제품판매를 위한 제반 광고업무활동을 대행하되 피고 엘.지.애드가 제작집행하는 모든 광고는 그 집행 전에 피고 럭키금성의 동의를 얻어야 하며 광고업무수행을 위해 필요한 제반조사 업무도 피고 럭키금성과 협의하여 수행하도록 하는 내용의 광고대행 및 광고물 제작계약이 체결되고 이에 따라 광고에 출연할 모델계약도 피고들이 상호협의하여 결정하여 온 사실, 한편 원고는 텔레비전 탤런트(television talent)로서 케이 비이 에스(KBS) 텔레비전의 인기드라마 「노다지」에 출연하고 있던 1987. 1 20경 소외 박 의 알선으로 피고들과의 사이에 피고 럭키금성이 생산판매하는 반도패션 봄철의류의 캐탈로그(catalogue) 제작을 위한 사진 5매를 모델료 금 1,800,000원에 촬영하기로 약정한 다음 같은 해 2. 10.경 그 촬영을 마쳤으며 다시 같은해 3월초 피고들과의 사이에 여름철의류의 캐탈로그 제작용 사진 5매를 모델료 금 1,800,000원에 촬영하기로 약정하고 같은해 4. 8.경 그 촬영을 마친 사실, 그런데 피고들은 원고의 위 봄철의류 캐탈로그용 사진을 1987년 3월호 여원, 여성중앙, 1987년 4월호 여성동아 등의 월간잡지에, 위 여름철의류 캐탈로그용 사진을 1987년 5월호 레이디경향, 가정조선 등의 월간잡지에 각 게재하여 피고 럭키금성의 반도패션의류 광고에 이를 사용한 사실, 피고들이 종래 다른 모델의 사진을 캐탈로그 뿐만 아니라 잡지 광고에까지 이용하려는 경우에는 캐탈로그 모델 계약을 체결하면서 잡지광고에도 그 사진을 이용할 수 있는 것으로 추가약정을 해왔으나, 이 사건에 있어서는 원고와 위 캐탈로그 모델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원고의 위 캐탈로그용 사진을 잡지광고에 사용할 수 있다는 추가약정도 하지 아니하고 또 원고와의 사이에 별개의 잡지모델 계약도 체결하지 아니한 채 원고의 위 캐탈로그용 사진을 위와 같이 월간잡지에 함부로 게재한 사실을 각 인정할 수 있고 이에 어긋나는 증인 정 의 일부 증언은 믿지 아니하고 그 밖에 달리 반증이 없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들은 원고를 모델로 한 캐탈로그용 사진의 촬영 및 공표에 관하여만 원고의 승낙을 얻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승낙의 범위를 벗어나 월간잡지에까지 원고의 위 캐탈로그용 사진을 실어 광고에 사용하였고, 위 월간잡지상의 광고는 당초 원고가 피고들과 캐탈로그 모델계약을 체결할 때 예상한 것과는 상이한 별개의 광고방법이라 할 것인 바, 피고들은 원고의 위 캐탈로그용 사진을 위와같이 원고의 승낙 없이 위법하게 별개의 광고방법인 월간잡지광고에 사용함으로써 원고의 초상권을 침해하였다 할 것이므로 이와 같은 공동불법행위로 인하여 원고가 입은 정신적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할 것이다.

이에 대하여 피고들은, 원고는 위 1987년 3월초 월간잡지가 이미 발간된 뒤인 1987. 3월초 위 월간잡지에 원고의 사진이 광고로 사용되었음을 알면서도 여름철 의류를 위한 캐털로그 모델계약에 이의 없이 응하였을 뿐만 아니라 위 1987년 3월호 및 4월호 월간잡지가 이미 발간된 뒤인 1987. 4. 9. 봄철의류 캐털로그용 사진의 모델료 금 1,800,000원을 아무런 이의 없이 수령하였으므로 원고는 위 캐털로그용 사진이 잡지광고에 사용되는 것을 묵시적으로 승낙하였다 할 것이어서 원고의 이 사건 손해배상청구는 부당하다고 항변하므로 살피건대, 위 월간잡지들이 발간된 뒤에 원고가 여름철의류 캐털로그 모델계약을 체결하거나 봄철의류 캐털로그용 사진의 모델료를 수령하였다 하더라도 위 월간잡지의 광고에 원고의 사진이 사용되었음을 원고가 알면서도 위와 같이 모델계약을 체결하고 모델료를 수령하였다는 점을 인정할 만한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들의 위 항변은 이유 없다 할 것이다.

그러므로 나아가 피고들이 배상하여야 할 위자료의 액수에 관하여 살피건대, 증인 정호림의 증언에 의하여 각 진정성립이 인정되는 을제3호증의 1내지 7(각 확인서), 을제4호증의 1내지 31(각 모델출연계약서)의 각 기재와 증인 박 의 증언에 변론의 전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들이 다른 모델들과 캐털로그 모델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잡지광고에까지 그 사진을 사용하는 것으로 추가 약정하는 경우 모델에 따라 잡지광고 모델료를 별도로 지급하지 않거나 또는 캐털로그 모델료의 100퍼센트까지 추가로 지급하는 사실, 한편 일반적으로 별개의 잡지모델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그 모델료는 캐털로그모델 계약상의 모델료의 3,4배 정도 되는 사실을 각 인정할 수 있고 달리 반증 없는 바, 위 인정사실과 원고의 직업, 피고들의 이 사건 불법광고의 방법 및 회수, 원고와 피고들 사이의 위 캐털로그 모델계약상의 모델료, 원고의 위 캐털로그용 사진이 게재된 월간잡지의 종류 및 수, 원고의 인기도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사정을 참작하면 그 위자료액은 금 8,000,000원으로 정함이 상당하다 하겠다.

그렇다면, 피고들은 공동불법행위자로서 연대하여 원고에게 위 금 8,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위 불법행위일 이후로서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이 사건 소장 부분이 피고들에게 송달된 다음날임이 기록상 명백한 1987. 12. 15.부터 완제일까지 소송촉진등에 관한 특례법 소정의 연 2할5푼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할 것이므로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범위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그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각 기각하며, 소송비용의 부담에 관하여는 민사소송법 제89조, 제92조, 제93조를, 가집행의 선고에 관하여는 위 특례법

제6조를 각 적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1988. 9. 9.

□

재판장 판사 이 용 응
판사 유 영 일
판사 신 창 수

不道德한 소문을 기사화하여 未婚女性인
原告의 名譽가 毀損되었으니 慰藉料
2,000만원을 지급하고
사과문을 게재하라

서울민사지방법원 1989. 1. 18.자 판결(88가합20604)

서울고등법원 1989. 11. 29.자 판결(89나8158)

事實概要

서울고등법원 제8민사부 (재판장 가재환 부장판사)는 1989년 11월 29일 1977년 미스코리아 眞 金 양이 여성월간지 「마드모아젤」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마드모아젤」사는 오보기사로 인해 金양의 명예를 훼손했으므로 위자료 2천만원을 지급하고 마드모아젤誌 및 한국일보, 東亞日報에 1회씩 사과광고를 게재하라」고 원고 승소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마드모아젤」사가 제대로 사실확인도 하지 않고 추문에 대한 기사를 게재하고 金양의 인터뷰 내용도 짧게 취급, 변명으로 비쳐지게 해 결과적으로 金양의 명예를 훼손했다」고 밝혔다.

金양은 월간 「마드모아젤」誌 1988년 5월호에 자신과 전 새마을운동중앙본부 회장 全 씨가 내연의 관계라는 취지로 『全 과 金 소문의 진상확인』이라는 제하기사 가 게재되자 서울민사지방법원에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 서울민사지방법원 제14부 (재판장 김정수 부장판사)로부터 일부인용판결을 받았다.

그런데 원고, 피고 쌍방은 1심 판결에 불복, 서울고등법원에 항소하였고, 재판부는 다시 원고측의 일부인용판결을 내린 것이다.

1審 判決文

사 건 : 88가합20604 손해배상(기)

원 고 : 김

서울

소송대리인 변호사 박 용 일

피 고 : 1. 이

서울

2. 김

서울

3. 유

서울

피고들 송달장소, 서울 마포구 용강동 274 월간 마드모아젤 내

피고들 소송대리인 변호사 한 승 현

변론종결 : 1988. 12. 14.

- 주 문 :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10,000,000원 및 이에 대한 1988. 5. 1. 부터 1989. 1. 18.까지는 연 5푼의, 그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는 연 2할5푼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2. 피고들은 월간 마드모아젤지 한면 전면에 제목은 특호활자로 하고, 그외 다른 부분은 2호 활자로 하여, 한국일보와 동아일보 각 7면 광고란에 가로 7센티미터, 세로 10센티미터의 크기로 제목은 2호 활자로, 본문은 5호 활자로, 그외 다른 부분은 3호 활자로 하여 별지1 기재 사과문을 1회씩 게재하라.
3.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4. 소송비용은 이를 10등분하여 그 1은 피고들의, 나머지는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5.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500,000,000원 및 그 중 50,000,000원에 대하여는 1988. 5. 1.부터 이 사건 소장부분 송달일까지는 연 5분의, 그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는 연 2할5분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고, 나머지 450,000,000원에 대하여는 1988. 5. 1.부터 1988. 12. 12.자 청구취지 확장신청서 송달일까지는 연 5분의, 그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는 연 2할5분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고, 이 사건 판결 송달 이후 최초로 발행되는 월간 마드모아젤지 제1면 전면에 3회에 걸쳐 제목은 특호 활자를, 내용은 2호 활자로 하여, 이 사건판결송달 3일후 발행되는 조선일보, 한국일보, 동아일보, 중앙일보 7면 광고란에 2일간 계속하여 하단 우측에 가로 12센티미터, 세로 17센티미터 크기로 제목은 2호 활자로, 내용은 3호 활자로 별지2 기재 사죄광고를 게재하라. 소송비용은 피고들의 부담으로 한다. 라는 판결 및 가집행선고.

이 유 : 1. 이 사건 기사에 의한 명예훼손의 성립

가. 원고는 1977년 서울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같은 해 미스코리아 선발대회에서 미스코리아 진으로 선발된 다음 모델, 가수 등으로 활동하다가 1986년경부터 약 2년 동안 의상학원등에서 의상디자인을 공부하여 1988. 3.경 서울 소재 미산빌딩 1층을 임차하여 「그리니스」란 상호로 의상실을 개업한 미혼의 여자인 사실과 서울 마포구 용강동 274 소재 월간 마드모아젤사에서 매월 발행하는 여성종합잡지인 월간 마드모아젤 1988. 5월호 156페이지 이하에 『전 과 김 소문의 진상확인』이라는 제목 아래 4페이지에 걸쳐 별지 이 사건 기사내용과 같은 기사가 실렸는데 피고 이 은 위 잡지사의 발행인 겸 편집인, 피고 김 은 주간, 피고 유 은 연예부 기자인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고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제11호증의 3, 4, 6(각 피의자신문조서)의 기재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여 보면, 피고 유 은 1988. 4. 초 당시 소위 새마을부정사건으로 구속되어 있던 전 과 원고 사이에 어떤 부도덕한 관계가 있다는 소문이 있다 하여 이를 취재하겠다는 내용의 취재기획안을 위 잡지의 주간으로서 편집책임을 사실상 맡고 있던 피고 김 에게 제출하여 그의 동의를 얻은 다음 같은 해 4. 9.경부터 같은 달 14.까지 사이에 역대 미스코리아들을 찾아 다니며 그러한 소문을 들은 사실이 있는지 묻고 다니던 중 그 사람들 가운데 역대 미스코리아 1, 2명으로부터 그와 같은 소문을 들은 사실이 있다는 내용의 이야기를 듣고 같은 달 15.과 16. 두차례에 걸쳐 원고를 찾아가 이야기를 나눈 다음 이 사건 기사의 초안을 작성하여 위 김 에게 넘겼고, 피고 은 위 초안을 검토하여

문구를 다듬은 다음 이를 인쇄소에 넘겨 같은 해 4. 29. 위 잡지 5월호 3만 내지 4만 부가 발행되어 시중에 배포되도록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달리 반증이 없다.

나.민주주의 국가에서는 여론의 자유로운 형성과 전달에 의하여 다수의견을 집약시켜 민주적 정치질서를 생성유지시켜 나가는 것이므로 표현의 자유 특히 공익사항에 관한 표현의 자유는 중요한 헌법상의 권리로서 최대한의 보장을 받아야 할 것이고, 그러한 여론형성과 전달을 주된 기능으로 하는 언론, 출판의 자유는 민주정치에 있어 필수 불가결의 자유로서 헌법 제21조 제1항에 의하여 보장받고 있으나 그 자유는 절대적인 것이 아니고 헌법 제21조 제4항 전단이 규정하고 있는 바와 같이 타인의 명예나 권리 또는 공중도덕이나 사회윤리를 침해하여서는 아니되는 한계가 있다 할 것이고 만약 언론, 출판이 그 내재적 한계를 벗어나 타인의 명예나 권리를 침해한 경우에는 법의 보장을 받을 수 없다 할 것이다.

한편, 헌법 제10조에서는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라고 규정하여 생명권, 인격권 등을 보장하고 있어 어떤 개인이 국가권력 또는 타인에 의하여 부당히 인격권의 침해를 받았을 경우에는 인격권의 침해를 이유로 그 침해행위의 배제와 손해배상을 청구하여 그 권리를 구제받을 수 있다 할 것이다.

그러므로 인격권으로서의 개인의 명예의 보호와 언론의 자유의 보장이라는 두 법익이 충돌하였을 경우에는 사회적인 여러가지 이익을 비교하여 언론의 자유로 얻어지는 이익, 가치와 인격권의 보호에 의하여 달성되는 가치를 비교 형량하여 그 규제의 폭과 방법을 정하여야 할 것인데, 그와 같은 취지에서 볼 때 언론이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행위를 하였을 경우에는 그것이 공공의 이해에 관한 사항으로서 그 목적이 오로지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일 때에는 진실한 사실이라는 증명이 있거나 또는 그러한 증명이 없더라도 행위자가 그것을 진실이라고 믿을 상당한 이유가 있는 때에 한하여 그에 따른 책임을 면한다 할 것이다.

다.이 사건 기사 가운데 먼저 『전 과 김 소문의 진상확인』이라는 제목과 그 아래의 「‘전 새마을운동중앙본부 회장 전 과 관계가 있다.’‘모처의 이사직책을 가지고 있다’ 등의 악성루머들이 1~2년전부터 김 를 괴롭히고 있다. 더욱이 그녀가 최근 의상실을 개업한 건물 2층에 <리틀 전>의 사무실이 있는 것으로 밝혀져 소문이 사실로 굳어져가고 있을 때 그녀는 본지 기사를 만나 답답하고, 억울한 가슴을 열어 놓았다」라는 표제부분은 서로 연결되어 마치 원고와 위 전 사이에는 부도덕한 소문

이 떠돌고 있는데 이를 기자가 확인한 결과 사실임이 밝혀졌다는 인상을 주고 있고, 다음으로 157페이지의 『새마을 사건과 무성한 소문』이라는 소제목 아래 「〈새마을왕국〉의 군주로 7년간 군림하며 엄청난 부정을 자행하여 구속된 전 , 그는 곧 법의 심판을 받을 것이지만, 검찰의 발표 중 아직도 많은 국민들이 의아해 하는 부분이 있다. 그것은 그의 해외도피재산과 여자 특히 연예인과의 관련부분. 그중에서도 연예인과의 관련설은 그가 연예인 체육대회에 2번 참가하고, 〈연예인 새마을봉사대〉에 관심을 갖는 등의 행적으로 미루어보아 의혹의 대상이 되고 있다.

〈새마을부정사건〉이 터지자 많은 연예인들이 피해를 입고 있다. 텔런트 P양과 Y양, 민요가수 K양 등이 그와 관계가 있는 듯이 거론되고 있는데 그중에서도 구체적으로 이름이 드러나고 있는 사람은 전 미스코리아 김 , 「더욱이 그녀가 의상실을 개업한 건물 2층에 전 씨의 개인 사무실이나 다름 없는 〈해외개발연구원〉이 입주해 있는 사실이 밝혀지자 소문은 ‘그것봐, 틀림 없지’라는 단정쪽으로 흘렀다.」라는 부분의 기사와 159페이지 가운데 큰 활자로 된 「미스코리아, 텔런트, MC, 가수 그리고 이제 의상실 사장 겸 디자이너로서 그녀는 항상 성실하게 치열하게 살아왔고 또 살아갈 것인데, ‘리틀 전과 N호텔, G호텔에 있는 것을 보았다’라는 루머가 그녀의 뒤통수를 때렸다」라는 부분의 기사는 같은 페이지 좌측의 원고에 대한 「이번 취재중에 김 씨에게서 직접 얘기를 들었다는 모 인사가 전해준 말이 있습니다. 김 씨가 ‘모처에 두번 갔다. 한번은 비원앞 G호텔에서, 또 한번은 적선동 N호텔에서 이다’라고 자신에게 말했다는 것입니다. 이 얘기는 무슨 뜻입니까.」라는 질문기사와 함께 원고와 위 전 사이에 부도덕한 소문이 있는 것은 사실이며 그러한 소문은 어떠한 근거가 있는 정확한 것이라는 인상을 주도록 기술되어 있다.

다만 이 사건 기사에는 위와 같은 기사에 뒤이어 원고와의 대담형식을 통하여 원고의 해명을 실은 듯한 부분이 있기는 하나 위와 같은 제목과 기사를 통하여 그러한 소문이 실제로 있고 또 그것에 어떠한 근거가 있는 것처럼 전제로 한 다음 위 대담기사가 실림으로써 그와 같은 해명이 의례적인 변명에 불과한 것으로 보여지게 하고 있다.

한편, 어떤 사람에 대한 사실의 적시가 그 사람에 대한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켜 명예를 훼손하였는가의 여부는 건전한 상식을 가진 일반인의 윤리관에서 판단하여 이를 결정할 것인데 그러한 관점에서 볼 때 우리 사회에서 미혼의 여성이 가정이 있는 남자와 더욱이 정치적 또는 사회적으로 비난을 받고 있는 어떤 남자와 부도덕한 관계에 있거나 또는 그러한 관계에 있다는 소문이 있는 것으로 알려진다는 것은 그녀의 사회

적 평가를 저하시켜 명예를 훼손하였다고 봄이 상당할 것이다.

라. 따라서, 원고와 전 사이에 부도덕한 소문이 있다거나 그러한 소문에 어떠한 근거가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는 인상을 주는 위 기사들은 미혼여성인 원고의 명예를 훼손하였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2. 피고들의 책임

피고 이 은 비록 이 사건 기사의 작성이나 게재에 직접 관여하지는 않았다 하더라도 위 잡지의 발행인 겸 편집인으로서 위 잡지에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내용의 기사가 실리지 않도록 감독하여야 할 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게을리 하여 원고의 명예를 훼손하는 내용의 위와 같은 기사가 실리도록 한 과실이 있다 할 것이고, 피고 김 , 유 은 위 잡지의 주간 또는 기자로서 위 잡지에 기사를 취재하고 게재함에 있어 그 기사가 공익에 관련된 것으로서 진실인지와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것은 아닌지를 신중히 검토한 다음 이를 잡지에 게재하도록 하여야 하였음에도 이를 게을리한 채 위와 같이 원고의 명예를 훼손하는 내용의 기사를 그것도 5~6일 사이에 한 두 사람으로부터 그저 그러한 소문을 들은 사실이 있다는 내용의 말을 들은 것만으로 그러한 소문이 실제로 있고 또 그러한 소문에 어떤 근거가 있는 듯한 인상을 주도록 기사화하여 3만 내지 4만부가 인쇄되어 배포되는 위 잡지에 만연히 실어 원고의 명예를 훼손한 과실이 있다 할 것이다.

그렇다면, 피고들은 위 기사내용이 공공의 이해에 관한 것으로서 그 목적이 오로지 공익을 위한 것이며 그 기사 내용이 진실이거나(이 사건에서와 같이 어떠한 소문이 있다고 기사화한 경우에는 실제 그 소문이 있었다는 것 뿐만 아니라 그러한 소문의 내용이 진실이라는 점까지 증명하여야 한다) 또는 그 기사내용을 진실이라고 믿음에 상당한 이유가 있었다는 점을 증명하지 못하는 한 위와 같이 원고의 명예를 훼손한 공동불법행위자로서 각자 그로 인한 원고의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할 것이다.

3. 손해배상의 방법

가. 위자료

원고가 위 잡지에 이 사건 기사가 실려 배포됨으로 인하여 그녀의 명예가 훼손됨으로써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받았을 것임은 경험칙상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들은 이를 금전으로 위자할 의무가 있다 할 것인데, 위에서 본 바와 같은 원고의 경력과 나이, 피고들의 위 기사 게재경위, 위 잡지의 발행부수, 기사의 크기, 위 기사 게재후 피고들이 원고의 명예회복을 위하여 아무런 조치를 취한 바 없는 점, 뒤에서 보는 바

와 같이 사과문의 게재가 명예회복 처분으로서 인용되는 점 등 이 사건 별론에 나타난 모든 사정을 참작할 때 피고들은 연대하여 위자료로서 10,000,000원을 지급함이 상당할 것이다.

나. 사과문

원고는, 위와 같이 이 사건 기사로 인하여 훼손된 그녀의 명예를 회복하기 위한 처분으로서 별지2와 같은 사죄광고를 위 잡지에 3회, 조선일보, 한국일보, 동아일보, 중앙일보에 각 2 회씩 청구취지 기재와 같은 크기의 활자와 지면으로 게재할 것을 구하나, 이 사건 명예훼손행위의 모습, 사과문 게재에 따른 비용, 위 위자료 액수산정시 참작한 여러 사정, 위와 같이 금전배상으로서 위자료의 지급이 인용된 점 등 여러사정을 참작하여 볼 때 원고의 명예회복을 위한 처분으로서 피고들은 별지1 사과문을 위 잡지와 조간신문인 한국일보, 석간신문인 동아일보에 1회씩 주문 제2항과 같은 크기의 활자와 지면으로 게재함이 상당할 것이다.

4. 결 론

따라서,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위자료 1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위 잡지의 발행일 이후로서 원고가 구하는 1988. 5. 1.부터 피고들이 그 이행의무의 존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이 판결선고일까지는 민법 소정의 연 5분의, 그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는 소송촉진등에 관한 특례법 소정의 연 2할5분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와 위 잡지, 한국일보, 동아일보에 별지1 사과문을 주문 제2항 기재와 같은 크기의 활자와 지면으로 1회씩 게재할 의무가 있다 할 것이므로,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범위내에서만 정당하여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는 부당하여 이를 기각하며, 소송비용의 부담에 관하여는 민사소송법 제89조, 제92조, 제93조를, 가집행의 선고에 관하여는 위 특례법 제6조를 적용하여(원고는 위 사과문 게재부분에 대하여도 가집행을 구하고 있으나 이는 청구의 성질상 가집행을 붙이기에 적당하지 아니하므로 이 부분의 가집행은 불허한다)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1989. 1. 18.

재판장	판사	김 정 수
	판사	강 일 원
	판사	김 명 수

이 사건 기사

「새마을왕국」의 군주로 7년간 군림하며 엄청난 부정을 자행하여 구속된 전 . 그는 곧 법의 심판을 받을 것이지만, 검찰의 발표 중 아직도 많은 국민들이 의아해 하는 부분이 있다. 그것은 그의 해외도피재산과 여자 특히 연예인과의 관련부분.

그중에서도 연예인과의 관련설은 그가 연예인 체육대회에 2번 참가하고 「연예인 새마을봉사대」에 관심을 갖는 등의 행적으로 미루어보아 의혹의 대상이 되고 있다.

「새마을부정사건」이 터지자 많은 연예인들이 피해를 입고 있다. 텔런트 P양과 Y양, 민요가수 K양 등이 그와 관계가 있는 듯이 거론되고 있는데 그중에서도 구체적으로 이름이 드러나고 있는 사람은 전 미스코리아 김 .

「전 그 사람과 전혀 관계 없고, 그 사람에게 관심도 없어요. 저는 저와 관계 없는 일들에 대해선 알고 싶지도 않고, 관심도 없어요. 앞으로도 저는 제 삶을 성실하고, 부끄러움없이 그리고 소신껏 살아갈 것입니다. 그런 모습을 지니고 싶어서 연예계를 청산한 것입니다.」

지난 3월 19일, 서울 삼성동에 의상실 「그리니스」(Greenis)를 개업하면서 또 다른 변모를 보여준 7 년도 미스코리아 전 김

대한민국 최고의 미녀일 뿐만이 아니라 MC, 텔런트, 가수로서 다방면에 걸쳐 뛰어난 재능을 발휘했고, 하는 일마다 눈부신 성공을 거두었던 그녀를 둘러싸고 최근 1~2년 전부터 이상한 소문들이 나돌기 시작했다.

그녀 주위에서 얼굴 없는 사람들이 퍼뜨린 갖가지 구구한 억측들은 성공한 유명인들에 대한 악성루머의 본보기처럼 보이기도 한다.

「암에 걸려서 시한부 생명을 살아가고 있다」「모처의 이사 직책을 가지고 있다」「전 새마을운동중앙본부 회장 전 씨와 관계가 있다」는 소문들이 남의 말하기 좋아하는 사람들을 통해 이리저리 전해지더니 전 씨가 「새마을부정사건」으로 구속되자 루머들은 절정에 이르렀다.

더욱이 그녀가 의상실을 개업한 건물 2층에 전 씨의 개인 사무실이나 다름없는 「해외개발연구원」이 입주해 있는 사실이 밝혀지자 소문은 「그것봐. 틀림 없지」라는 단정쪽으로 흘렀다.

디자이너 겸 사업가로서 앞으로의 사업계획을 마련하느라 정신이 없던 그녀는 ‘제가 이렇게 열심히 살아가고 있으면 뭘지. 해명 같은 것 할 필요를 못 느껴요’라며 인터뷰

에 응하지 않다가 지난 4월 16일 어렵게 시간을 내어 기자와 만났다.

..... 중략

—이 근방의 임대료가 만만치 않은 걸로 아는데 의상실 개업 과정에 대해 설명을 좀 해 주시죠.

「작년 12월부터 남동생(27세)과 함께 적당한 장소를 물색하러 다녔어요. 정말 장사하기에 좋도록 눈에 쉽게 들어오고 사람들의 왕래가 많은 곳은 임대료가 비싸더군요. 수중에 가진 돈과 맞추다보니 조금은 후미진 곳에 있는 이곳을 구하게 됐어요. 아울러 예쁜 건물 모양도 마음에 들더라고요. 보증금 3천8백만원, 월세 20만원에 계약했습니다.」

—그 정도라면 적지 않은 돈인데 모아 놓은 게 많으셨습니까.

「제가 아직은 톱모델이기 때문에 CF모델로서 1년 계약을 하여 사업자금을 마련할 수 있었어요. 제가 가수활동을 할 때 < > 등의 팬클럽을 운영하느라고 돈을 많이 모으진 못했어요. 더욱이 연예인에게는 큰 수입원인 밤무대 출연도 저는 전혀 하지 않았거든요.」

실제로 그녀는 자신의 팬클럽이 모체가 된 젊은이들의 모임 「 >의 행사를 매달 갖고, 2천5백만원의 자비를 들여 영상음악집 ‘비밀’을 발간하는 등 수입에 비해 지출이 많은 활동을 벌여왔다.중략.....

—역대 미스코리아들의 모임인 「녹원회」(綠園會)에서도 전 > 씨와 관련된 소문이 무성하던데요.

「소문일 뿐이에요. 맹세코 전 그 사람 얼굴 한번 본 적 없어요.」

그녀는 미스코리아들 사이에서 그런 불미스런 소문이 도는 것도 「자신의 불찰 탓」이라고 말했다.

시간에 쫓겨 살다보니 동료들과 가깝게 지내지도 못했고, 특히 후배들에게 잘해 주지 못했다는 것. 「이제는 시간 여유가 좀 있으니 앞으로는 후배들에게 잘하겠다」고 말하는 그녀의 얼굴에 문득 슬픔이 피었다.

—이번 취재중에 김 > 씨에게서 직접 얘기를 들었다는 모 인사가 전해준 말이 있습니다. 김 > 씨가 「모처에 두번갔다. 한번은 비원앞 G호텔에서, 또 한번은 적선동 N호텔에서 이다」라고 자신에게 말했다는 것입니다. 이 얘기는 무슨 뜻입니까.

「사실 무근이에요.」

—그런 말 하신 적이 없습니까.

「그 사람이 누구예요. 전 그런 말 한 적 없어요.」이하 생략.....

〈별지 1〉 사과문

당사가 1988. 5. 1. 발행한 잡지 마드모아젤 1988. 5월호의 156페이지 이하에 『전 과 김 소문의 진상확인』이라는 제목 아래 4페이지에 걸쳐 위 두사람 사이에 어떤 부도덕한 관계가 있다거나 또는 그러한 내용의 소문이 있다는 취지로 실린 기사는 진실이 아니며 그로 인하여 일반인으로 하여금 그러한 잘못된 생각을 갖도록 하여 김 씨의 명예를 크게 훼손한 점에 대하여 깊이 사과를 드리며 앞으로 다시는 이와 같이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내용의 기사가 실리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월간 마드모아젤사

대표자 발행인 겸 편집인

서울시 마포구 용강동 274번지

〈별지2〉 사 죄 광 고

폐사는 본지 창간 1주년 기념특대호인 88년 5월호에 『직격인터뷰』 『전 과 김 소문의 진상확인』이라는 제하의 기사를 싣고 중앙일보를 비롯한 일간지 및 일간스포츠와 스포츠서울 등의 신문에 위 기사를 강조하는 광고를 하는 한편 유사한 광고포스터를 제작하여 전국 각 서점에 배포한 사실이 있습니다.

그런데 김 씨는 전 미스코리아 진이었으며 탤런트, 모델, 가수 등으로 폭넓은 활약을 하여 많은 대중의 사랑을 받았던 재능있는 인기인으로 근래에는 에 그리니스라는 의상실을 열어 전문의상 디자이너 겸 사업가로도 열심히 활동하고 있는 중인데, 폐사는 최근에 사회적으로도 큰 물의를 빚고 있는 전 새마을운동중앙본부장 전 씨와 김 씨는 아무런 개인적 친분관계는 커녕 면식조차도 없는 사이이고 또한 김 씨 본인과의 인터뷰를 통해 이러한 사실을 확인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위 양인 사이에 어떠한 부도덕한 관계가 있지 않나 하는 인상을 주는 기사를 본지에 게재하고, 이를 크게 광고함으로써 폐사의 독자들 뿐 아니라 위 기사나 광고를 일견한 일반인들에게 그러한 인상을 갖게 하여 성실하고 모범적인 활동을 하고 있는 김 씨의 명예를 크게 손상시키는 결과를 초래하였습니다.

이에 대하여 폐사는 폐사의 위와 같은 과오때문에 심대한 정신적 충격을 받은 김 씨 및 그녀를 아끼는 분들에게 심심한 사죄와 위로의 뜻을 표하는 바이며 이번 사

건을 계기로 앞으로는 잡지의 공적 책임 및 윤리를 깊이 인식하여 근거없는 소문등 전혀 사실무근의 내용을 기사화하여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고 건전한 대중을 자극하는 일이 없도록 할 것임을 약속드리는 바입니다.

월간 마드모아젤사

대표자 발행인 겸 편집인

서울시 마포구 용강동 274번지

2審 判決文

사 건 : 89나8158 손해배상(기)

원고, 항소인 겸 피항소인 : 김

서울

소송대리인 변호사 박용일

피고, 피항소인 겸 항소인 : 1. 이

서울

2. 김

서울

3. 유

서울

피고들 송달장소 : 서울 마포구 용강동 274 월간 마드모아젤내

피고들 소송대리인 변호사 한 승 현

변론종결 : 1989. 11. 1

원 판 결 : 서울민사지방법원 1989. 1. 18. 선고, 88가합20604 판결

주 문 : 1. 원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금 20,000,000원 및 이에 대한 1988. 5.

1.부터 1989. 11. 29.까지는 연 5푼의, 그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는 연 2할5푼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나. 피고들은 별지2 기재 사과문을 월간 마드모아젤지 한면 전면에 제목은

특호활자로 하고, 그외 다른 부분은 2호활자로 하여, 한국일보와 동아일보 각 7면 광고란에 가로 7센티미터, 세로 10센티미터의 크기로 제목은 2호활자로, 본문은 5호활자로, 그외 다른 부분은 3호활자로 하여 각 1회씩 게재하라.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 총비용은 이를 3분하여 그 1은 원고의, 나머지는 피고들의 각 부담으로 한다.

4. 위 제1항 중 금원지급부분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500,000,000원 및 그중 50,000,000원에 대하여는 1988. 5. 1.부터 이 사건 소장부분 송달일까지는 연 5분의, 그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는 연 2할5분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고, 나머지 450,000,000원에 대하여는 1988. 5. 1.부터 1988. 12. 12.자 청구취지 확장신청서 송달일까지는 연 5분의, 그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는 연 2할5분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고, 이 사건 판결 송달 이후 최초로 발행되는 월간 마드모아젤지 제1면 전면에 3회에 걸쳐 제목은 특호활자를, 내용은 2호활자로 하여, 이 사건 판결송달 3일후 발행되는 조선일보, 한국일보, 동아일보, 중앙일보 7면 광고란에 2일간 계속하여 하단 우측에 가로 12센티미터, 세로 17센티미터 크기로 제목은 2호활자로, 내용은 3호활자로 별지3 기재 사죄광고를 게재하라. 소송비용은 피고들의 부담으로 한다. 라는 판결 및 가집행선고.

항소취지 : (원고의 항소취지) 원판결 중 원고의 패소부분을 취소한다.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금 90,000,000원 및 이에 대한 1988. 5. 1.부터 1989. 1. 18.까지는 연 5분의, 그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는 연 2할5분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고, 청구취지 기재와 같이 사죄광고를 게재하라. 소송 총 비용은 피고들의 부담으로 한다.

(피고들의 항소취지) 원판결 중 피고들 패소부분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소송 총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 1. 원고 및 피고들의 지위

각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제1호증(잡지), 갑제7호증(사업자등록증), 갑제11호증의 2(진술조서)의 각 기재와 당심의 원고 본인신문결과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19년생으로 19년 서울고등학교를 졸업하고 같은 해 미스코리아선발대회에서 미스코리아 진으로 선발된 다음, 모델, 가수, 방송사회자 등으로 활동하다가, 1986년경부터 약 2년 동안 의상학원등에서 의상디자인을 공부하여 1988. 3. 19.경

서울 강남구 삼성동 소재 미산빌딩 1층을 임차하여 남동생인 소외 과 공동으로 「그리니스모드」라는 상호의 의상실을 경영하고 있는 미혼의 여자이고, 피고 이 은 여성종합잡지인 월간 「마드모아젤」을 발간하는 서울 마포구 용강동 274 소재 월간 마드모아젤사의 발행인 겸 편집인, 피고 김 은 주간, 피고 유 은 연예부 기자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반증 없다.

2. 불법행위책임의 발생

가. 위 강제1호증, 강제11호증의 2, 각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강제2,3호증(각 신문), 강제4호증(광고포스터), 강제6호증의 1,2(잡지표지 및 내용), 강제11호증의 3,4,6(각 피의자신문조서), 강제12호증(공소장), 을제11호증의 2(공판조서), 4(증인신문조서)의 각 기재와 당심의 원고본인신문결과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피고 유

은 1988. 4.초 당시 소위 새마을 부정사건으로 구속되어 있던 전 과 원고 사이에 어떤 부도덕한 관계가 있다는 소문이 있다 하여 이를 취재하겠다는 내용의 취재기획안을 위 잡지의 주간으로서 편집책임을 사실상 맡고 있던 피고 김 에게 제출하여 그의 동의를 얻은 다음, 같은 해 4. 9.경부터 같은 달 14.까지 사이에 역대 미스코리아들을 찾아 다니며 그러한 소문을 들은 사실이 있는지 묻고 다니던 끝에 그 사람들 가운데 역대 미스코리아 1,2명으로부터 그와 같은 소문을 들은 사실이 있다는 내용의 이야기를 듣고, 같은 달 15.과 16. 두차례에 걸쳐 원고를 찾아가 이야기를 나눈 다음 이 사건기사의 초안을 작성하여 위 김 에게 넘겼고, 피고 은 위 초안을

을 검토하여 문구를 다듬어 마드모아젤 1988. 5월호 156페이지 이하에 『전 과 김 소문의 진상확인』이라는 제목 아래 4페이지에 걸쳐 별지 제1기재의 이 사건 기사 내용과 같은 기사를 실고 같은 해 4. 29. 위 잡지 약 3만 내지 4만부가 발행 배포되도록 한 사실, 한편 위 기사가 허위사실을 보도하여 명예를 훼손하였다는 이유로 원고가 피고들을 상대로 이 사건 소송을 제기하였다는 사실이 각 일간신문에 일제히 보도된 후 소외 주식회사 동아일보 발행의 월간잡지인 여성동아의 기자 소외 이 위 손해배상 청구소송의 경위와 양 당사자들의 주장 및 소문의 진상 등을 취재, 보도하기 위하여 피고 유인종에게 전화를 걸어 위 기사를 취재하게 된 동기와 경위 등을 물어오자, 피고 유 은 동 소외인이 여성동아지에 기사화하기 위해 취재한다는 점을 알고도 동 소외인에게 전화상으로 「자신은 도의적인 책임을 느끼지만 당사자의 확인을 받고 쓴 글이어서 양심에 찢리는 점은 없다」고 말하고, 위 기사의 취재동기, 확인 등의 과정에 관하여 「지난 3월경 두사람에 관한 정보를 얻고 확인해 본 결과 그 소문은 역대 미스코리

나. 민주주의 국가에서는 여론의 자유로운 형성과 전달에 의하여 다수의견을 집약시켜 민주적 정치질서를 생성유지시켜나가는 것이므로 표현의 자유 특히 공익사항에 관한 표현의 자유는 중요한 헌법상의 권리로서 최대한의 보장을 받아야 할 것이고, 그러한 여론형성과 전달을 주된 기능으로 하는 언론, 출판의 자유는 민주정치에 있어 필수불가결의 자유로서 헌법 제21조 제1항에 의하여 보장받고 있으나, 그 자유는 절대적인 것이 아니고 헌법 제21조 제4항 전단이 규정하고 있는 바와 같이 타인의 명예나 권리 또는 공중도덕이나 사회윤리를 침해하여서는 아니되는 한계가 있다 할 것이고, 만약 언론, 출판이 그 내재적 한계를 벗어나 타인의 명예나 권리를 침해한 경우에는 법의 보장을 받을 수 없다 할 것이다.

그러므로 인격권으로서의 개인의 명예의 보호와 언론의 자유의 보장이라는 두 법익이 충돌하였을 경우에는 사회적인 여러가지 이익을 비교하여 언론의 자유로 얻어지는 이익, 가치와 인격권의 보호에 의하여 달성되는 가치를 비교 형량하여 그 규제의 폭과

방법을 정하여야 할 것인데, 그와 같은 취지에서 볼 때 언론이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행위를 하였을 경우에는 그것이 공공의 이해에 관한 사항으로서 그 목적이 오로지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일 때에는 진실한 사실이라는 증거가 있거나 그러한 증거가 없더라도 행위자가 그것을 진실이라고 믿을 상당한 이유가 있는 때에 한하여 그에 따른 책임을 면한다 할 것이고, 정치인, 연예인과 같은 이른바 공적 존재의 행위는 상대적으로 자유로운 비판과 평가 및 보도의 대상이 된다 하겠으나, 이 경우도 신문, 방송과 비교하여 신속성 및 공익성이 요청이 덜한 잡지에 개인에 대한 인신공격으로 받아들여질 가능성이 있는 기사를 게재함에 있어서는 기사내용의 진실 여부에 관하여 미리 충분한 조사활동을 거쳐야 할 것이며, 기사의 내용 중에 「…한 소문이 있다.…」라고 한다」와 같은 전문적 표현을 사용하는 경우에도 그러한 내용의 기사가 독자로 하여금 사실의 존재를 인식시키는 결과에 있어서는 통상의 기사와 크게 다름이 없다 할 것이므로 그 소문이나 전문내용의 진실 여부에 관한 조사의무는 통상적 표현을 사용한 기사와 동등하게 부과된다 할 것이다.

다. 돌이켜 이 사건에 관하여 살피건대, 위 마드모아젤 잡지의 기사 가운데 먼저 『전 과 김 소문의 진상확인』이라는 제목과 그 아래의 「‘전 새마을운동중앙본부 회장 전 과 관계가 있다’ ‘모처의 이사직책을 가지고 있다’ 등의 악성루머들이 1-2년전부터 김 를 괴롭히고 있다. 더우기 그녀가 최근 의상실을 개업한 건물 2층에 ‘리틀 전’의 사무실이 있는 것으로 밝혀져 소문이 사실로 굳어져 가고 있을 때 그녀는 본지 기사를 만나 답답하고, 억울한 가슴을 열어 놓았다』라는 표제부분은 서로 연결되어 마치 원고와 위 전 사이에는 부도덕한 소문이 떠돌고 있는데 이를 기자가 확인한 결과 사실임이 밝혀졌다는 인상을 주고 있고, 다음으로 157페이지의 『새마을사건과 무성한 소문』이라는 소제목 아래 「‘새마을왕국’의 군주로 7년간 군림하며 엄청난 부정을 자행하여 구속된 전 , 그는 곧 법의 심판을 받을 것이지만, 검찰의 발표 중 아직도 많은 국민들이 의아해 하는 부분이 있다. 그것은 그의 해외도피재산과 여자 특히 연예인과의 관련부분. 그 중에서도 연예인과의 관련설은 그가 연예인체육대회에 2번 참가하고, ‘연예인 새마을봉사대’에 관심을 갖는 등의 행적으로 미루어보아 의혹의 대상이 되고 있다. ‘새마을부정사건’이 터지자 많은 연예인들이 피해를 입고 있다. 탤런트 P양과 Y양, 민요가수 K양 등이 그와 관계가 있는 듯이 거론되고 있는데 그중에서도 구체적으로 이름이 드러나고 있는 사람은 전 미스코리아 김], 「더우기 그녀가 의상실을 개업한 건물 2층에 전 씨의 개인사무실이나 다름 없는 ‘해외개발연구원’이

입주해 있는 사실이 밝혀지자 소문은 ‘그것봐, 틀림없지’라는 단정쪽으로 흘렀다.’라는 부분의 기사와 159페이지 가운데 큰 활자로 된 「미스코리아, 탤런트, MC, 가수 그리고 이제 의상실 사장 겸 디자이너로서 그녀는 항상 성실하게 치열하게 살아왔고 또 살아갈 것인데, ‘리틀전과 N호텔, G호텔에 있는 것을 보았다’라는 루머가 그녀의 뒤통수를 때렸다]라는 부분의 기사는 같은 페이지 좌측의 원고에 대한 「이번 취재중에 김

씨에게서 직접 얘기를 들었다는 모 인사가 전해준 말이 있습니다. 김 씨가 ‘모처에 두번 갔다. 한번은 비원앞 G호텔에서, 또 한번은 적선동 N호텔에서 이다’라고 자신에게 말했다는 것입니다. 이 얘기는 무슨 뜻입니까.’라는 질문기사와 함께 원고와 위 전 사이에 부도덕한 소문이 있는 것은 사실이며 그러한 소문은 어떠한 근거가 있는 정확한 것이라는 인상을 주도록 기술되어 있다.

다만, 이 사건 기사에는 위와 같은 기사에 뒤이어 원고와의 대담형식을 통하여 원고의 해명을 실은 듯한 부분이 있기는 하나, 위와 같은 제목과 기사를 통하여 그러한 소문이 실제로 있고 또 그것에 어떠한 근거가 있는 것처럼 전제로 한 다음 위 대담기사가 실림으로써 그와 같은 해명이 의례적인 변명에 불과한 것으로 보여지게 하고 있다.

한편, 피고 유 이 소의 에게 제공한 기사에 관하여 보면, 그 기사 가운데 「자신은 도의적인 책임을 느끼지만 당사자의 확인을 받고 쓴 글이어서 양심에 찢리는 점은 없다.」 「지난 3월경 두 사람에 관한 정보를 얻고 확인해 본 결과 그 소문은 역대 미스코리아들의 모임인 ‘녹원회’에서도 무성하게 퍼져 있었고, 이번 미스코리아대회에 출전하는 19세의 아가씨와 그 어머니도 ‘그런 소문을 들은 적이 있다’고 귀뜸해 주었다」는 등의 부분은 원고와 전 과의 부도덕한 소문은 진실일 개연성이 크다는 인상을 준다 할 것이고, 「모 아파트경비원이 커버를 씌운 자동차가 들쭉거리 플래쉬를 켜고 들여다 보았더니 누구였더라... 성남시에서의 행각 등등 당사자에게 직접 묻기엔 너무 지독한 얘기도 수집하였다」는 부분은 원고가 마치 자신의 아파트 앞 승용차속에서 불미스런 행동을 하였거나, 성남등지를 왕래하면서 미혼의 여성에는 어울리지 않는 부정한 행실을 보이고 다녔음을 추단케 하고 있다 할 것이다.

그렇다면 이 사건 마드모아젤지에 실린 기사와 피고 유 이 소의 에게 제보한 기사는 그중에 원고의 주장 및 해명을 보도하는 부분이 있기는 하지만 앞에서 적시한 기사부분의 내용과 기술방법 등을 전체적으로 종합하여 볼 때, 일반인으로 하여금 미혼녀인 원고가 가정이 있는, 더우기 당시 정치적 또는 사회적으로 비난을 받고 있는 특정인과 부도덕한 관계에 있다거나 그러한 관계에 있다는 소문이 진실한 것이라는 인

식을 갖게 하기에 충분하고, 이는 우리의 건전한 윤리관념상 원고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켜 명예를 훼손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할 것이다.

3. 피고들의 책임

피고 이 ○은 비록 이 사건 마드모아젤지에 실린 기사의 작성이나 게재에 직접 관여하지는 않았다 하더라도 위 잡지의 발행인 겸 편집인으로서 위 잡지에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내용의 기사가 실리지 않도록 감독하여야 할 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게을리하여 원고의 명예를 훼손하는 내용의 위와 같은 기사가 실리도록 한 과실이 있다 할 것이고, 피고 ○은 위 잡지의 주간 또는 기자로서 위 잡지에 기사를 취재하고 게재함에 있어 그 기사가 공익에 관련된 것으로서 진실인지와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것은 아닌지를 신중히 검토한 다음 이를 잡지에 게재하도록 하여야 하였음에도 이를 게을리한 채 위와 같이 원고의 명예를 훼손하는 내용의 기사를, 그것도 5-6일 사이에 한두 사람으로부터 그저 그러한 소문을 들은 사실이 있다는 내용의 말을 들은 것만으로 그러한 소문이 실제로 있고 또 그러한 소문에 어떤 근거가 있는 듯한 인상을 주도록 기사화하여 3판 내지 4만부가 인쇄되어 배포되는 위 잡지에 만연히 게재함으로써, 또 피고 유 ○은 여성동아지의 기자인 소외 ○에게 위와 같은 원고의 명예를 훼손하는 내용의 기사를 제보하여 기사화되게 함으로써 원고의 명예를 훼손한 과실이 있다 할 것이므로, 피고들이 위 기사내용에 관하여 그것이 공공의 이해에 관한 것으로서 그 목적이 오로지 공익을 위한 것이며 그 내용이 진실이거나 그 소문의 내용이 진실이라는 점 또는 이를 진실이라고 믿음에 상당한 이유가 있다는 점을 증명하지 못하는 이 사건에 있어서 결국 피고들은 원고의 명예를 훼손한 공동불법행위자로서 연대하여 원고에게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할 것이다.

4. 손해배상의 방법

가. 위자료

원고가 피고들의 공동불법행위로 말미암아 위 마드모아젤 잡지에 이 사건 기사가 게재되고, 또 피고 ○의 불법행위로 위 여성동아 잡지에 앞서 본 바와 같은 기사가 실려 배포됨으로 인하여 명예가 훼손됨으로써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받았을 것임은 경험칙상 넉넉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들은 이를 금전으로나마 위자할 의무가 있다 할 것인 바, 위에서 본 바와 같은 원고의 경력과 나이, 위 기사의 내용과 그 게재경위, 위 마드모아젤 잡지의 발행부수, 기사의 크기, 위 기사게재후 피고들이 원고의 명예회복을 위하여 아무런 조치를 취한 바 없는 점, 뒤에서 보는 바와 같이 사과문의 게

재가 명예회복 처분으로서 인용되는 점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사정을 참작할 때,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위자료로서 금20,000,000원을 지급함이 상당할 것이다(피고 유은위에서 본 바와 같이 나머지 피고들과의 위 마드모아젤의 기사로 인한 공동불법행위책임 외에도 위 여성동아의 기사에 따른 단독불법행위책임이 인정되나, 그 소속 잡지사에 있어서의 지위와 역할 등을 감안하여 배상할 위자료액을 나머지 피고들과 함께 정하는 것이다).

나. 사과문

원고는, 위와 같이 이 사건 기사로 인하여 훼손된 그녀의 명예를 회복하기 위한 처분으로서 별지 3기재와 같은 사죄광고를 위 잡지에 3회, 조선일보, 한국일보, 동아일보, 중앙일보에 각 2회씩 청구취지기재와 같은 크기의 활자와 지면으로 게재할 것을 구하나, 이 사건 명예훼손행위의 모습, 사과문 게재에 따른 비용, 위 위자료 액수산정시 참작한 여러사정, 위와 같이 금전배상으로서 위자료의 지급이 인용된 점 등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볼 때 원고의 명예회복을 위한 처분으로서 피고들은 별지 2기재의 사과문을 위 잡지와 조간신문인 한국일보, 석간신문인 동아일보에 1회씩 주문 제1항 나. 기재와 같은 크기의 활자와 지면으로 게재함이 상당할 것이다.

5. 결론

이리하여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위자료 금 2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위 잡지의 발행일 이후로서 원고가 구하는 1988. 5. 1.부터 피고들이 그 이행의무의 존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당심판결선고일인 1989. 11. 29.까지는 민법 소정의 연 5분의, 그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는 소송촉진등에 관한 특례법 소정의 연 2할5분의 각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와 위 잡지, 한국일보, 동아일보에 별지 2기재의 사과문을 주문 제1의 나항 기재와 같은 크기의 활자와 지면으로 각 1회씩 게재할 의무가 있다 할 것이므로,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의무의 이행을 구하는 범위내에서 정당하여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부당하여 이를 기각할 것인 바, 원판결은 이와 일부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일부 받아들여 원판결을 변경하여 피고들에 대하여 주문 제1항과 같은 의무이행을 명하고, 원고의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며, 소송비용의 부담에 관하여는 민사소송법 제96조, 제89조, 제92조, 제93조를, 가집행의 선고에 관하여는 소송촉진등에 관한 특례법 제6조를 각 적용하여(원고는 위 사과문 게재부분에 대하여도 가집행의 선고를 구하고 있으나, 이는 청구의 성질상 가집행을 붙이기에 적당하지 아니하므로 이 부분의

가집행은 불허한다),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1989. 11. 29.

재판장 판사 가 재 환
판사 이 재 철
판사 나 천 수

〈별지1〉 이 사건 기사

「새마을왕국」의 군주로 7년간 군림하며 엄청난 부정을 자행하여 구속된 전 . 그
는 곧 법의 심판을 받을 것이지만, 검찰의 발표 중 아직도 많은 국민들이 의아해 하는
부분이 있다. 그것은 그의 해외도피재산과 여자 특히 연예인과의 관련부분.

그중에서도 연예인과의 관련설은 그가 연예인체육대회에 2번 참가하고 「연예인새마
음봉사대」에 관심을 갖는 등의 행적으로 미루어보아 의혹의 대상이 되고 있다.

「새마을부정사건」이 터지자 많은 연예인들이 피해를 입고 있다.

탤런트 P양과 Y양, 민요가수 K양 등이 그와 관계가 있는 듯이 거론되고 있는데 그
중에서도 구체적으로 이름이 드러나고 있는 사람은 전 미스코리아 김 .

「전 그 사람과 전혀 관계 없고, 그 사람에게 관심도 없어요. 저는 저와 관계 없는 일
들에 대해선 알고 싶지도 않고, 관심도 없어요. 앞으로도 저는 제 삶을 성실하고, 부
끄러움 없이 그리고 소신껏 살아갈 것입니다. 그런 모습을 지니고 싶어서 연예계를 청
산한 것입니다.」

지난 3월 19일, 서울 삼성동에 의상실 「그리니스」(Greenis)를 개업하면서 또 다른
변모를 보여준 77년도 미스코리아 진 김

대한민국 최고의 미녀일 뿐만 아니라 MC, 탤런트, 가수로서 다방면에 걸쳐 뛰어난
재능을 발휘했고, 하는 일마다 눈부신 성공을 거두었던 그녀를 둘러싸고 최근 1~2년
전부터 이상한 소문들이 나돌기 시작했다.

그녀 주위에서 얼굴없는 사람들이 퍼뜨린 갖가지 구구한 억측들은 성공한 유명인들
에 대한 악성루머의 본보기처럼 보이기도 한다.

「암에 걸려서 시한부생명을 살아가고 있다」「모처의 이사직책을 가지고 있다」「전
새마을 운동중앙본부 회장 전 씨와 관계가 있다」는 소문들이 남의 말하기 좋아하

는 사람들을 통해 이리저리 전해지더니 전 씨가 「새마을부정사건」으로 구속되자 루머들은 절정에 이르렀다.

더우기 그녀가 의상실을 개업한 건물 2층에 전 씨의 개인사무실이나 다름없는 「해외개발연구원」이 입주해 있는 사실이 밝혀지자 소문은 「그것봐, 틀림없지」라는 단정쪽으로 흘렀다.

디자이너 겸 사업가로서 앞으로의 사업계획을 마련하느라 정신이 없던 그녀는 「제가 이렇게 열심히 살아가고 있으면 됐지. 해명 같은 것 할 필요를 못 느껴요」라며 인터뷰에 응하지 않다가 지난 4월 16일 어렵게 시간을 내어 기자와 만났다.

.....중략.....

-이 근방의 임대료가 만만치 않은 걸로 아는데 의상실 개업과정에 대해 설명을 좀 해 주시죠.

「작년 12월부터 남동생(27세)과 함께 적당한 장소를 물색하러 다녔어요. 정말 장사하기에 좋도록 눈에 쉽게 들어오고 사람들의 왕래가 많은 곳은 임대료가 비싸더군요. 수중에 가진 돈과 맞추다보니 조금은 후미진 곳에 있는 이곳을 구하게 됐어요. 아울러 예쁜 건물 모양도 마음에 들더라고요. 보증금 3천8백만원, 월세 20만원에 계약했습니다.」

-그 정도라면 적지 않은 돈인데 모아놓은 게 많으셨습니까.

「제가 아직은 톱모델이기 때문에 CF모델로서 1년 계약을 하여 사업자금을 마련할 수 있었어요. 제가 가수활동을 할 때 < > 등의 팬클럽을 운영하느라고 돈을 많이 모으진 못했어요. 더우기 연예인들에게는 큰 수입원인 밤무대 출연도 저는 전혀 하지 않았거든요.」

실제로 그녀는 자신의 팬클럽이 모체가 된 젊은이들의 모임 「」의 행사를 매달 갖고, 2천5백만원의 자비를 들여 영상음악집 「비밀」을 발간하는 등 수입에 비해 지출이 많은 활동을 벌여왔다.

.....중략.....

-역대 미스코리아들의 모임인 「녹원회」(綠園會)에서도 전 씨와 관련된 소문이 무성하던데요.

「소문일 뿐이에요. 맹세코 전 그 사람 얼굴 한번 본 적 없어요.」

그녀는 미스코리아들 사이에서 그런 불미스런 소문이 도는 것도 「자신의 불찰 탓」이라고 말했다.

시간에 쫓겨 살다보니 동료들과 가깝게 지내지도 못했고, 특히 후배들에게 잘해주지 못했다는 것. 「이제는 시간여유가 좀 있으니 앞으로는 후배들에게 잘 하겠다」고 말하는 그녀의 얼굴에 문득 슬픔이 피었다.

-이번 취재중에 김 씨에게서 직접 얘기를 들었다는 모 인사가 전해준 말이 있습니다. 김 씨가 「모처에 두번 갔다. 한번은 비원앞 G호텔에서, 또 한번은 적선동 N호텔에서 이다」라고 자신에게 말했다는 것입니다. 이 얘기는 무슨 뜻입니까.

「사실 무근이에요..」

-그런 말 하신 적이 없습니까.

「그 사람이 누구예요. 전 그런 말 한 적 없어요..」

.....이하 생략.....

〈별지2〉 사과문

당사가 1988. 5. 1. 발행한 잡지 마드모아젤 1988. 5월호의 156페이지 이하에 『전 과 김 소문의 진상확인』이라는 제목 아래 4페이지에 걸쳐 위 두사람 사이에 어떤 부도덕한 관계가 있다거나 또는 그러한 내용의 소문이 있다는 취지로 실린 기사는 진실이 아니며 그로 인하여 일반인으로 하여금 그러한 잘못된 생각을 갖도록 하여 김 씨의 명예를 크게 훼손한 점에 대하여 깊이 사과를 드리며 앞으로 다시는 이와 같이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내용의 기사가 실리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월간 마드모아젤사

대표자 발행인 겸 편집인

〈별지3〉 사죄광고

폐사는 본지 창간1주년 기념특대호인 88년 5월호에 『직격인터뷰』 『전 과 김 소문의 진상확인』이라는 제하의 기사를 싣고 중앙일보를 비롯한 일간지 및 일간스포츠와 스포츠서울 등의 신문에 위 기사를 강조하는 광고를 하는 한편 유사한 광고포스터를 제작하여 전국 각 서점에 배포한 사실이 있습니다.

그런데 김 씨는 전 미스코리아 진이었으며 탤런트, 모델, 가수 등으로 폭넓은 활약을 하여 많은 대중의 사랑을 받았던 재능있는 인기인으로 근래에는

에 그리니스라는 의상실을 열어 전문의상디자이너 겸 사업가로도 열심히 활동하고 있는 중인데, 폐사는 최근에 사회적으로도 큰 물의를 빚고 있는 전 새마을운동중앙본부장 전 씨와 김 씨는 아무런 개인적 친분관계는 커녕 먼식조차도 없는 사이이고 또한 김 씨 본인과의 인터뷰를 통해 이러한 사실을 확인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위 양인 사이에 어떠한 부도덕한 관계가 있지 않나 하는 인상을 주는 기사를 본지에 게재하고, 이를 크게 광고함으로써 폐사의 독자들뿐 아니라 위 기사나 광고를 일견한 일반인들에게 그러한 인상을 갖게 하여 성실하고 모범적인 활동을 하고 있는 김 씨의 명예를 크게 손상시키는 결과를 초래하였습니다.

이에 대하여 폐사는 폐사의 위와 같은 과오때문에 심대한 정신적 충격을 받은 김 씨 및 그녀를 아끼는 분들에게 심심한 사죄와 위로의 뜻을 표하는 바이며 이번 사건을 계기로 앞으로는 잡지의 공적 책임 및 윤리를 깊이 인식하여 근거 없는 소문등 전혀 사실무근의 내용을 기사화하여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고 건전한 대중을 자극하는 일이 없도록 할 것임을 약속드리는 바입니다.

월간 마드모아젤사

대표자 발행인 겸 편집인

서울시 마포구 용강동 274번지



原告의戀愛說이 어떤 근거가 있는 것처럼
先入見을 갖게 하고 不倫關係로까지
진전된 것이 사실이라는 인상을 주었으니
慰藉料를 지급하고, 謝過文을 게재하라

서울지방법원 동부지원 1989. 4. 14.자 판결(88가합17151)

事實概要

서울지방법원 동부지원 제1민사부(재판장 康鳳洙 부장판사)는 1989년 4월 14일 「이 밤을 다시 한번」을 부른 인기가수 趙 가 여원사 발행 월간지 「신부」를 상대로 낸 명예훼손에 따른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신부〉는 趙씨에게 위자료 5백만원을 지급하고, 도하 일간지에 사과광고를 게재하라」고 원고 승소판결을 내렸다.

趙씨는 1988년 7월호 「신부」지에 게재된 『가수 趙 -탤런트 朴 양과의 열애설 진상』이란 제하의 기사가 마치 자신이 朴양과 깊은 관계가 있는 것처럼 과장추측보도 해 인기연예인인 자신의 명예를 손상했다며 소송을 냈었다.

判 決 文

사 건 : 88가합17151 위자료 및 사죄광고게재

원 고 : 조

경기도

소송대리인 변호사 박원순, 김경천

피 고 : 1. 주식회사 여원(女苑)

대표이사 김

2. 김

3. 이

피고들주소, 서울

피고들 소송대리인 변호사 한 승 헌

변론종결 : 1989. 3. 10.

주 문 : 1. 피고 주식회사 여원, 같은 이 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금 5,000,000원 및 이에 대한 1988. 6. 25.부터 1989. 4. 14.까지는 연 5푼의, 그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는 연 2할5푼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2. 피고 주식회사 여원, 같은 이 은 월간 신부지 한면 전면에 제목은 특호활자로 하고 그와 다른 부분은 2호활자로 하여, 조선일보와 동아일보 각 7면 광고란에 가로 7센티미터, 세로 10센티미터의 크기로 제목은 2호활자로, 본문은 5호활자로, 그와 다른 부분은 3호활자로 하여 별지1 기재 사과문을 1회씩 게재하라.

3. 원고의 피고 김 에 대한 청구 및 피고 주식회사 여원, 같은 에 대한 나머지 청구를 각 기각한다.

4. 소송비용 중 원고와 피고 주식회사 여원, 같은 이 과 사이에 생긴 부분은 2분하여 그 1은 원고의, 나머지는 같은 피고들의 각 부담으로 하고, 원고와 피고 김 사이에 생긴 부분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5. 제1항의 금액은 5분의 3에 한하여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 취지 :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금 50,000,000원 및 이에 대한 1988. 6. 25. 부터 이 사건 소장송달일까지는 연 5푼의, 그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는 연 2할5푼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고, 이 사건 판결 송달 이후 최초로 발행되는 월간 신부지 제1면 전면에 3회에 걸쳐 제목은 특호활자로 내용은 2호활자로 하여, 이 사건 판결송달 3일후 발행되는 조선일보, 일간스포츠, 동아일보, 중앙일보 7면 광고란의 하단 우측에 가로 12센티미터, 세로 17센티미터 크기로 제목은 2호활자로 내용은 3호활자로하여 별지 2기재 사죄광고를 게재하라. 소송비용은 피고들의 부담으로 한다 라는 판결과 가집행의 선고.

이 유 : 1. 이 사건 기사에 의한 명예훼손의 성립

피고 주식회사 여원(이하 피고회사라고만 한다)에서 매월 발행하는 월간지 신부지 1988. 7월호(제2권 제7호 통권 11호) 173페이지 이하 웨딩가십란에 『가수 · 탤런트 열애설 진상』이라는 제목 아래 2페이지에 걸쳐 별지 이 사건 기사 내용과 같은 기사가 실린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고,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제2호증(세대별 주민등록표)의 기재와 증인 1의 각 증언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위 잡지의 편집부 취재기자인 피고 이 1은 피고회사에서 발행하는 뷰티라이프 편집부 취재기자인 소외 김 2과 함께 1988. 6월경 가수인 원고와 탤런트인 소외 박 3 사이에 어떤 불미스러운 관계가 있다는 소문 및 이에 관한 성명 미상 독자의 제보 등이 있다 하여 이를 공동으로 취재하기로 의견을 모아, 위 김 2 기국은 같은 달 15. 위 박 3 와 위와 같은 소문에 관하여 이야기를 나누고 그 무렵 피고 이 1은 원고의 가수활동의 매니지먼트를 하고 있다고 알려져 있는 와이 프로덕션 사무실에서 홍보용 자료를 얻어와 이를 위 김 2에게 건네주어, 위 김 2이 이 사건 기사의 초고를 작성하고 이를 넘겨받은 피고 이 1이 월간 신부지의 편집주간인 소외 이 2와의 검토를 거쳐 이 사건 기사를 인쇄소에 넘겨, 같은 해 6. 25.경 이 사건 기사가 실린 위 잡지 7월호 약 26,000부가 시중에 배포된 사실, 원고는 교육자 집안에서 태어나 취미로 해온 음악공부로 1980년 연세대학교 1 재학중 엠비씨(M.B.C) 대학가요제에서 1라는 곡으로 은상을 수상하고 위 대학을 졸업한 후 1985. 4. 18. 결혼하여 단란한 가정을 이루고 서울 서초구 방배동 소재 방배예술극장이라는 소극장을 경영하는 한편 가수활동을 겸하여 1987년에는 「이밤을 다시 한번」이라는 히트곡을 내기도 한 기혼의 남자인 사실등을 인정할 수 있고 달리 반증이 없다.

무릇 잡지 기사에 의한 명예훼손의 성립 여부에 관하여는 기사의 정확한 의미내용에 불구하고 일반독자의 통상적인 흥미, 주의, 읽기 등을 기준으로 하여 일반독자가 해당 기사로부터 받는 인상도 그 판단기준으로 하여야 할 것인 바, 이 사건 기사 가운데 먼저 큰 제목으로 된 『가수 · 탤런트 열애설 진상』과 그 아래의 『아니 댜 굴뚝엔 연기가 안난다』라는 단정적인 표현의 소제목은 일단 제목을 대한 독자로 하여금 원고와 위 박의 열애설에 어떤 근거가 있는 것처럼 선입견을 갖게 하고 이어 본문의 머리말로 이어지는 「탤런트 가수 과 잔통!」이라는 독립된 문장과 연결되어 위 두사람의 열애가 불륜관계로까지 진전된 것이 사실이라는 인상을 주고 있으며, 그 아래로 위 두사람의 불륜관계에 관한 제보 및 소문내용이 이어진 뒤 위 박와의 대담을 통한 해명과 원고의 매니저를 통한 해명을 실은 듯한 부분이 있기는 하나 기사의 끝부분에 가서 더우기 박는 같이 「인현왕후」에 출연중인 가 역시 톱가수 K씨와 구설수에 오른 지 불과 3개월만에 자신도 가수와의 소문에 휘말려 난감한 표정이었다.

그러나 사실는 K씨와 몇번 만났다가 헤어졌고 뒤늦게 기사화되었던 것이라고 기술하여 원고와 박와의 관계도 두사람의 해명에도 불구하고 사실일 수 있다는 인상을 주고 있을 뿐만 아니라 이어서 방송가에서는 일단 2집을 준비중인 조의 인기전락일 수도 있다고 보고 있는데 진실은 당사자만이 알 뿐 당분간은 두사람 다 몸살을 앓을 듯 하다고 끝맺음으로써 원고가 소문을 스스로 조작해 내었거나 아직도 그 소문의 진상이 드러나지 않고 있으며 당사자들이 속이고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강한 의심을 독자들로 하여금 품게 하고 앞서의 해명이 의례적인 변명으로 보여지게 하고 있다.

따라서 이 사건 기사는 원고와 박 사이에 어떤 불미스러운 관계가 있거나 그러한 소문이 있고 그 소문에 근거가 있는 듯한 인상을 일반독자들에게 주도록 작성됨으로써 정상적인 가정생활을 하고 있는 기혼남인 원고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켜 명예를 훼손하였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2. 피고들의 책임

피고 이은 위 잡지의 기자로서 위 잡지에 실릴 기사를 취재하고 게재함에 있어 그 기사가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것은 아닌지를 신중히 검토한 다음 이를 잡지에 게재하도록 하여야 하였음에도 이를 게을리한 채 위와 같이 원고의 명예를 훼손하는 내용의 기사를 그것도 성명 미상의 독자 한두사람으로부터 전화로 그러한 소문이 있다는 말을 들은 것만으로 그러한 소문에 어떤 근거가 있는 듯한 인상을 주도록 기사화하여

약 26,000부가 인쇄되어 배포되는 위 잡지에 만연히 실어 원고의 명예를 훼손한 과실이 있다 할 것이고, 이 사건 기사의 취재 및 게재행위는 피고회사의 사무집행으로서 이루어진 것이라 할 것이므로, 피고회사는 사용자로서 피고 이은 불법행위자로서, 위 기사내용이 공공의 이해에 관한 것으로서 그 목적이 오로지 공익을 위한 것이고 그 기사내용이 진실이거나 또는 그 기사내용을 진실이라고 믿음에 상당한 이유가 있었다는 점에 관한 입증이 없는 터이니, 위와 같이 원고의 명예를 훼손함으로써 인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할 것이다.

원고는 피고 김이 피고회사의 대표이사 겸 위 잡지의 발행인이므로 앞서 든 피고들과 연대하여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주장하나, 피고 김이 위 잡지의 발행인이라는 원고 주장 사실은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고, 다만 위 피고가 피고회사의 대표이사인 사실은 위 피고도 이를 인정하나 위 피고가 사용자인 피고회사에 갈음하여 위 잡지 기사의 취재, 편집, 게재 등의 사무를 현실적으로 감독하는 지위에 있는 자라는 점에 관한 입증이 없는 한 위 피고에 대하여는 그가 대표이사라는 사유만으로 이 사건 기사 게재에 관한 책임을 지울 수는 없다 할 것이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손해배상의 방법

가. 위자료

원고가 위 잡지에 이 사건 기사가 실려 배포됨으로 인하여 그의 명예가 훼손됨으로써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받았을 것임은 경험칙상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회사와 피고 이은 이를 금전으로 위자할 의무가 있다 할 것인데, 앞에서 본 바와 같은 원고의 경력과 나이, 위 피고들의 이 사건 기사 게재 경위, 위 잡지의 발행부수, 기사의 크기, 위 기사 게재후 위 피고들이 원고의 명예회복을 위하여 아무런 조치를 취한 바 없는 점, 뒤에서 보는 바와 같이 사과문의 게재가 명예회복처분으로서 인용되는 점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사정을 참작하면 위 피고들은 연대하여 위자료로서 금 5,000,000원을 지급함이 상당하다 할 것이다.

나. 사과문

원고는 위와 같이 이 사건 기사로 인하여 훼손된 그의 명예를 회복하기 위한 처분으로서 별지2와 같은 사죄광고를 위 잡지에 3회, 조선일보, 일간스포츠, 동아일보, 중앙일보에 각 1회씩 청구취지 기재와 같은 크기의 활자와 지면으로 게재할 것을 구하나, 이 사건 명예훼손 행위의 태양, 사과문 게재에 따르는 비용, 위 위자료 액수 산정시 참작한 여러사정, 위자료의 지급이 인용된 점 등 여러사정을 참작하면 원고의 명예회복

을 위한 처분으로서 위 피고들은 별지1 사과문을 위 잡지와 조간신문인 조선일보, 석간신문인 동아일보에 1회씩 주문 제2항과 같은 크기의 활자와 지면으로 게재함이 상당하다 할 것이다.

4. 결 론

따라서 피고회사와 피고 이 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위자료 금 5,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위 잡지의 발행일인 1988. 6. 25.부터 위 피고들이 그 이행의무의 존부와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이 판결 선고일인 1989. 4. 14.까지는 민법 소정 연 5푼의, 그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는 소송촉진등에 관한 특례법 소정 연 2할5푼의 각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와 위 잡지, 조선일보, 동아일보에 별지1 사과문을 주문 제2항 기재와 같은 크기의 활자와 지면으로 1회씩 게재할 의무가 있다 할 것이므로,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범위내에서만 정당하여 이를 인용하고 원고의 피고 김 에 대한 청구와 피고회사, 피고 이 에 대한 나머지 청구는 이유없어 각 기각하며 소송비용의 부담에 관하여는 민사소송법 제89조, 제92조, 제93조를 , 가집행 선고에 관하여는 위 특례법 제6조를 적용하여(원고는 위 사과문 게재부분에 대하여도 가집행을 구하고 있으나 이는 청구의 성질상 가집행을 붙이기에 적당하지 아니하므로 이 부분의 가집행은 불허한다)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1989. 4. 14.

재판장 판사 강 봉 수
판사 유 남 석
판사 남 영 찬

〈별지1〉 사 과 문

월간지 「신부」 1988. 7월호에 실린 『가수 , 탤런트 열애설 진상』이라는 제하의 기사는 마치 위 두사람 사이에 어떤 불미스러운 관계가 있는 것처럼 작성되었으나 이는 사실과 다름을 밝히며, 이로 인하여 조 씨에게 끼친 명예훼손과 정신적 피해에 대하여 정중히 사과드립니다.

주식회사 여 원
월간 「신부」 기자

〈별지2〉 사 과 문

폐사는 폐사가 경영하는 월간잡지 신부지 7월호에 『웨딩가십』이라는 제하에 『가수 , 탤런트 열애설 진상』 『아니 뎌 굴뚝에 연기 안난다』라는 소제목에 『탤런트 , 가수 과 간통!』으로 시작되는 기사를 게재하여 전국 각 서점에 배포한 사실이 있습니다. 그런데 조 씨는 박 씨와는 전혀 면식조차 없는 사이인데도 마치 두사람이 어떤 관계가 있는 것처럼 오해를 불러 일으키도록 위 기사를 씬으로 써 성실하고 도덕적이며 건강한 가정생활을 해오고 있던 조 씨와 그 친척들에게 엄청난 정신적 고통을 주었고 그 잡지를 본 독자들뿐 아니라 일반인들에게 사실과 전혀 다른 인식을 주었으며 판매부수의 증가만을 위하여 진실을 왜곡하고 무책임한 기사를 씬으로서 위 조 씨와 그 가정, 그리고 그를 아끼는 분들에게 상상치 못할 피해가 간 것에 대하여 진심으로 사과하며 이번 사건을 계기로 앞으로는 잡지의 공적 책임 및 윤리를 깊이 인식하여 근거없는 소문등 전혀 사실무근의 내용을 기사화하여 타인의 명예훼손하고 전전한 대중을 자극하는 일이 없도록 할 것임을 약속드리는 바입니다.

1. 주식회사 여 원
2. 월간신부 편집인 겸 발행인
3. 취재기자

□

不道德한 所聞을 記事化하여 未婚女性인
原告의 名譽가 毀損되었으니 慰籍料
1,000만원을 지급하고,
謝過文을 게재하라

서울민사지방법원 1989. 7. 25.자 판결(88가합31161)

事實概要

서울민사지법 제14부(재판장 조희래 부장판사)는 19 7월 25일 19 년 미스코리

아 眞 金 양이 월간여성지 女性東亞(대표 김상기)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등 청구소송에서 「女性東亞는 원고의 명예를 훼손했으므로 위자료 1천만원을 지급하고 女性東亞에 사과문을 게재하라」고 원고 승소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女性東亞가 별다른 조사를 하지 않고 원고의 명예를 훼손했다는 이유로 문제가 된 잡지사 기자의 이야기만을 듣고 근거 있는 소문인 양 기사화하여 원고의 명예가 훼손됐다」고 밝혔다.

金양은 월간 女性東亞 1988년 6월호에 『「전 과의 소문」기사에 5억 청구한 김성희 진상해명-호기심 끌려고 진실 외면했다』는 제하의 기사가 게재되자 손해배상등 청구소송을 제기하여 승소판결을 받은 것이다.

判 決 文

사 건 : 88가합31161 손해배상(기)등

원 고 : 김

서울

소송대리인 변호사 박 용 일

피 고 : 1. 주식회사 동아일보사

서울 종로구 세종로 139

대표자 회장 김 상 기

2.

3.

4.

피고들 소송대리인 변호사 박 승 서

변론종결 : 1989. 7. 11.

주 문 :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금 10,000,000원 및 이에 대한 1988. 6.

1.부터 1989. 7. 25.까지는 연 5푼, 그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는 연 2할5푼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2. 피고들은 월간 여성동아지 한면에 가로 7센티미터 세로 10센티미터의 크기로 제목은 2호 활자, 내용은 5호 활자로 하여 별지2 기재 사과문을 1회 게재하라.
3.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각 기각한다.
4. 소송비용은 이를 2분하여 그 1은 피고들, 나머지는 원고의 각 부담으로 한다.
5.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금 500,000,000원 및 위 금원 중 금 50,000,000원에 대하여는 1988. 6. 1.부터 이 사건 소장송달일까지는 연 5푼, 그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는 연 2할5푼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고 나머지 금 450,000,000원에 대하여는 1988. 6. 1.부터 이 사건 청구취지확장신청서 송달일까지는 연 5푼, 그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는 연 2할 5푼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고, 이 사건 판결 송달 이후 최초로 발행되는 월간 여성동아지에 3회에 걸쳐 제1면 전면에 제목은 특호활자, 내용은 2호활자로 하여, 이 사건 판결 송달 3일후 발행되는 한겨레신문 조선일보 한국일보 동아일보 중앙일보 7면 광고란에 2일간 계속하여 하단 우측에 가로 12센티미터 세로 17센티미터 크기로 제목은 2호활자, 내용은 3호활자로 하여 별지3 기재 사죄광고를 게재하라. 소송비용은 피고들의 부담으로 한다 라는 판결 및 가집행선고.

이 유: 1. 원고 및 피고들의 지위

각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제1호증(여성동아) 갑제3호증(사업자등록증) 갑제8호증(증인신문조서) 갑제14호증의 3(진술조서)의 각 기재와 증인 의 증언을 종합하면 원고는 19 년생으로서 19 . 미스코리아 선발대회에서 미스코리아 진으로 선발된 후 모델, 가수, 방송사회자 등으로 활동하다가 1988. 3. 19. 서울 소재 미산빌딩 1층을 임차하여 남동생인 소외 과 공동으로 「그리니스모드」라는 상호의 의상실을 경영하고 있는 미혼의 여자이고, 피고 주식회사 동아일보사는 일간신문 동아일보와 월간잡지 여성동아 등을 발행, 판매하는 언론기관, 피고 김 은 여성동아의 발행인, 피고 권 는 여성동아의 편집인, 피고 현 은 여성동아 기자로서 별지 1 이 사건 기사내용을 취재, 작성한 자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반증 없다.

2. 불법행위책임의 발생

가. 이 사건 기사에 의한 명예훼손의 성립

(1) 위 갑제1, 8, 14호증의 3, 각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제7호증(증인신문조서) 갑제

자유민주주의에 의한 내재적 제약을 받는 것으로서, 헌법 제21조 제4항 전단에서 「언론, 출판은 개인의 명예나 권리 또는 공중도덕이나 사회윤리를 침해하여서는 아니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 것도 언론, 출판의 자유가 지니는 내재적 한계의 표현이라 할 것이다.

생각컨대, 표현의 자유가 헌법상 갖는 중요성에 못지 않게 개인의 명예나 사생활의 자유와 비밀과 같은 사적 법익도 보호되어야 할 중요한 가치를 가지는 것이고, 인격권으로서의 개인의 명예의 보호와 표현의 자유의 보장이라는 두 법익이 충돌하는 경우 어떻게 이를 조정할 것인가는 구체적인 경우 대립하는 공공과 개인의 상반되는 이익을 비교, 형량하여야 할 것인 바, 특히 현대의 대기업이나 국가의 관리하에 있는 매스 미디어가 보도의 자유를 매개로 하여 상대적으로 약한 지위에 있는 개인의 명예를 침해하는 경우에 있어서는 그 사회적 영향력과 회복의 어려움, 더욱이 오늘날의 보도기관이 영리추구의 입장에서 공, 사인의 프라이버시에 속하는 사항을 즐겨 보도하는 경향이 있는 점등을 고려하여 개인의 인격권보호라는 이익을 최대한 배려하여야 할 것이다. 헌법상의 다른 기본권조항이 국가와 국민간의 관계를 다루고 있는 것과는 달리 헌법 제21조 제4항 후단에서 「언론, 출판이 타인의 명예나 권리를 침해한 때에는 피해자는 이에 대한 피해의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라는 규정을 두어 사인간의 관계를 규율하고 있는 것도 거대한 힘을 가진 언론기관으로부터 다수의 약한 개인을 두텁게 보호하려는 정신을 헌법이 확인하고 있는 것으로 보여진다.

따라서, 언론기관이 개인의 인격권을 침해한 경우 그 개인은 인격권의 침해를 이유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할 것이고, 다만 그것이 공공의 이해에 관한 사항으로서 그 목적이 오로지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일 때에는 진실한 사실이라는 증명이 있거나 건전한 상식에 비추어 진실이라고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위법성이 조각된다 할 것인데, 정치인, 연예인과 같은 이른바 공적 존재의 행위가 자유로운 비판과 평가의 대상이 되어 언론기관의 책임이 면제되는 경우가 많음은 다언을 요하지 않으나 공인이라 하더라도 신문과 비교하여 신속성 및 공익성의 요청이 덜한 잡지에 개인에 대한 인신공격으로 받아들여질 가능성이 있는 기사를 게재함에 있어서는 기사내용의 진실 여부에 관하여 미리 충분한 조사활동을 거쳐야 할 것이고, 나아가 기사의 내용 중에 「…한 소문이 있다, …라고 한다」와 같은 전문적 표현을 사용함에 있어서는 그러한 내용의 기사가 독자로 하여금 사실의 존재를 인식시키는 결과에 있어서는 통상의 기사와 소장이 없다 할 것이니 이러한 경우 소문이나 전문내용의 진실 여부

에 관한 조사의무는 통상적 표현을 사용한 기사와 동등하게 부과되어야 할 것이다.

(3)살피건대, 이 사건 기사의 제목이 『…진상해명』이라는 부제와 함께 『호기심 끌려고 진실 외면했다』는 것으로서 원고의 해명과 마드모아젤의 경솔한 보도태도를 앞에 내세우고 있고, 이 사건 기사의 내용 가운데 앞에서 본 소외 임의 면담부분은 문제가 된 마드모아젤의 기사를 읽고 난 원고의 심경을 묘사하고 해당기사 중 원고가 특히 불만을 품고 있는 몇가지 내용을 그대로 적시, 인용한 것으로서 이를 가지고 원고의 명예를 새로이 침해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할 것이나, 반면 이 사건기사 중 208페이지 중 양단 3행 이하에서는 일종의 논평기사로서 「이에 대해 해당 잡지사측에서는 구체적인 증거를 입수했을 듯 별 동요를 보이지 않고 있다. 심증은 확신이 가는데 구체적인 증거가 미비된 듯 조심스럽기도 하다. 항간에는 제보자의 말을 녹음해 두었을 것이다…중략. …뭔가 명확한 증거를 갖고 있는 것이 아니냐는 의견들도 있다. 또 다른 측에서는 나름대로 소문의 진상을 조사해 보고 기사본문에 쓰여진… 이상한 소문들이 나돌기 시작했다는 말이 맞다고 동조를 보이는 사람들도 있다」고 기술되어 있고, 피고 현이 소외 유으로부터 들은 내용을 기술한 208페이지 우단 7행 이하의 「도의적인 책임을 느끼지만 당사자의 확인을 받고 쓴 글이어서 양심에 찢리는 점은 없다」는 부분과 같이 연결하여 보면 마치 문제가 된 마드모아젤의 기사가 목격자나 물적 증거 등 상당한 근거에 바탕을 두고 있으며 따라서 원고와 전과의 부도덕한 소문은 진실일 개연성이 크다는 인상을 준다 할 것이고, 한편, 209페이지 좌단 13행 이하의 「모 아파트 경비원이 커버를 씌운 자동차가 들쭉거리며 플래시를 켜고 들여다 보았더니 누구였더라…성남시에서의 행각 등등도 너무 구체적이라서 질문을 생략했다」는 부분은 역시 피고 현당이 위 유의 취재내용을 기사화한 것이기는 하나 마드모아젤에도 게재된 바 없는 새로운 보도기사로서 이는 마치 원고가 자신의 아파트앞 승용차속에서 불미스러운 행동을 하였다거나, 성남등지를 왕래하면서 미혼의 여성에는 어울리지 않는 부정한 행실을 보이고 다녔다는 사실을 직접적으로 묘사하고 있는 것인 바, 그렇다면 이 사건 기사의 내용 중에 원고의 주장 및 해명을 보도하고 기사의 공정성이라는 명목하에 마드모아젤측의 반론을 게재한 부분이 존재한다 하더라도 앞에서 적시한 기사부분의 내용과 기술방법을 보건대 여기에는 원고의 인격을 비방하는 내용으로 해석될 수 있는 표현이 상당포함되어 있다 할 것이어서 전체적으로 볼 때 이 사건 기사의 게재 및 반포로 인하여 미혼의 여성인 원고로서는 그 사회적 평가가 크게 저하되었다 할 것이다.

이에 대하여 피고들은 이 사건 기사가 공익에 관한 것이고, 피고 원고에 관한 소문으로 기술한 부분은 직접 원고를 면담하고 여러 참고인들의 진술을 들은 소외 유 으로부터 청취한 내용의 것이어서 그 소문의 진실성을 신빙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었으니 이 사건 기사로 인한 명예훼손행위는 위법성이 조각되는 것이라고 항변하나, 상당한 발행부수를 가진 여성동아의 기자로서 한 개인의 일신에 관한 기사를 취재, 작성함에 있어서는 적어도 직접 당사자를 면담하고 소문을 뒷받침할 수 있는 충분한 자료를 수집하여야 할 의무가 있다 할 것인데 별다른 조사활동은 하지 아니한 채 이미 원고의 명예를 훼손하였다는 이유로 문제가 된 잡지사 기자의 이야기만 듣고 이를 근거 있는 소문인 양 기사화한 피고들의 행위가 소문의 진실성을 신빙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때에 해당한다고는 도저히 볼 수 없다 할 것이니 위 항변은 이유 없다.

따라서, 피고들이 위 기사내용에 관하여 그것이 진실이거나 그 소문의 내용이 진실이라는 점을 증명하지 못하는 이 사건에 있어서 위 기사들은 미혼여성인 원고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할 것이다.

나. 원고의 사진게재로 인한 초상권침해

위 강제1호증, 위 을제1호증의 6, 8, 11,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강제2호증(비밀)의 각 기재와 증인 의 각 증언에 변론의 전 취지를 보태어 보면 원고는 1982.초 자신의 가수활동등에 대한 선전용 책자로서 사진영상집의 발간을 계획하게 되었고 이에 따라 원고로부터 책자의 제작의뢰를 받은 그린프로덕션 대표 소외 이 기획 및 총연출을 담당하고 사진작가인 소외 이 원고의 다양한 모습을 담은 사진을 수천컷 촬영하여 1984. 12. 30. 「비밀」이라는 사진영상집을 제작한 사실, 원고는 위 「비밀」을 무상으로 배포하기도 하고 유상으로 판매하기도 하였는데 피고 현당은 1985. 2.경 이를 구입하여 소지하고 있던 중 앞에서 본 원고에 대한 취재 기사를 여성동아에 게재함에 있어서 소외 이 과의 협의를 거쳐 위 「비밀」에 수록된 사진 중 원고의 신체가 비교적 많이 노출된 사진 2매를 골라 여성동아 88.6호 기사 중 206페이지 전면과 209페이지 좌측에 임의로 복사·게재한 사실을 각 인정할 수 있고 달리 반증이 없다.

원고는 위 사진 2매의 무단게재로 인하여 원고의 저작재산권, 저작인격권 및 초상권이 침해되었으므로 그 손해배상을 구한다고 주장함에 대하여 피고는 위 사진이 저작권의 대상이 되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원고가 자신의 선전용책자로 발간한 사진영상집에서 발췌한 것이니 원고는 위 사진의 공개에 대한 묵시적 승락을 하였다고 보아야 하므

로 저작권 또는 초상권침해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취지의 주장을 한다.

그러므로 살피전대, 원고가 주장하는 저작권이 「비밀」이라는 잡지 자체의 저작권을 의미하는 것인지 또는 거기에 수록된 사진의 저작권을 의미하는 것인지는 분명하지 않으나, 위 강제2호증의 책자 후면에는 「비밀」의 저작권은 그린프로덕션에 속하는 것으로 명시되어 있고 <강제165호증(진술서)의 기재에 의하면 이 사건 소 제기후인 1988.

6. 1. 그린프로덕션 대표이던 소외 이 「비밀」의 저작권이 원고에게 있다는 취지로 진술서를 작성한 것은 인정되나 위 사실만으로 저작권이 원고에게 양도 또는 귀속되는 것이라 볼 수 없을 뿐만 아니라 가사 저작재산권이 원고에게 양도되었다 하더라도 이는 이 사건 불법행위발생 이후의 사정이라 할 것이다.>, 사진에 관한 저작권에 대하여는 이른바 초상저작권에 관한 특별한 규정이 없는 현행 저작권법상으로는(동법 제4조 제6호는 사진을 저작물의 하나로 명시하고 있을 뿐이다. 일본의 구저작권법에는 「타인의 촉탁에 의하여 제작된 사진초상의 저작권은 그 촉탁자에게 속한다」는 규정이 존재하다가 그후 삭제되었다.) 촬영자인 소외에게 저작권이 귀속된다 할 것이므로 결국 원고는 「비밀」이라는 잡지나 거기에 수록된 사진의 저작권자가 아니라 할 것이니 원고의 저작재산권 또는 저작인격권 침해주장은 어느모로 보나 이유 없다.

그러나, 헌법 제10조에서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고 규정하여 개인의 인격권에 대한 보호를 천명하고 있는 정신에 비추어보면, 일반사진이 아닌 초상사진의 경우 초상 본인은 당해 사진에 대한 저작권은 가질 수 없다 하더라도 이른바 인격권으로서의 초상권, 즉, 본인의 동의 없이 무단촬영할 수 없고 촬영에 동의한 경우라도 본인이 예상한 것과 다른 방법으로 사진을 공표할 수 없는 권리를 보유한다 할 것이고, 동일한 초상의 경우라도 그것이 공표되는 방법에 따라 초상 본인의 인격권을 침해할 수도 있고 그렇지 않을 수도 있다 할 것인바, 원고와 같은 유명인의 경우 비교적 초상권이 제한된다 하더라도 그 정당한 이익이 침해될 수는 없다(예컨대, 직업모델이 예술사진집을 제작하기 위하여 나체의 촬영을 승락하였다 하더라도 비누상품을 제작하는 회사에서 본인의 승락을 받지 않고 사진집의 나체사진을 상품선전용광고에 이용하였다면 이는 명백히 직업모델의 인격권을 침해하였다 할 것이다)는 점에 있어서는 일반인과 다름이 없다 할 것이다.

그렇다면, 이 사건 기사와 함께 게재된 사진의 경우 연예인인 원고가 자기의 선전용으로 기획한 「비밀」의 제작과정에서 초상사진의 촬영을 위에게 의뢰하였고 나아가 「비밀」을 무상 또는 유상으로 일반대중에게 배포, 판매하였다는 사실은 초상의

촬영 및 공표에 관하여 원고의 일반적 동의가 있는 것으로는 해석될 수 있으나, 한편, 앞에서 본 바와 같이 피고들은 여성잡지에 원고의 명예를 훼손시키는 내용의 보도 기사를 게재하면서 「비밀」에 수록된 사진 중 비교적 선정적으로 보이는 2매의 사진을 함께 복사·게재함으로써 이를 보는 독자들로서는 위 사진을 원고의 부정한 추문을 내용으로 하는 기사의 일부로 인식하여 전체적으로 보아 원고의 행실이 좋지 못하다는 강한 인상을 받게 된다 할 것이니, 여성동아의 사진무단게재행위는 원고의 인격권으로서의 초상권을 침해한 것이라 할 것이다.

다. 피고들의 책임

이 사건 기사에 의한 명예훼손과 사진게재로 인한 초상권침해행위에 대하여 피고 현당은 취재 및 기사작성자 본인으로서의 책임이 있고, 피고 김○은 여성동아의 발행인, 피고 권○은 그 편집인으로서 직접 이 사건 기사의 작성이나 게재에 관여하지는 않았다 하더라도 위 잡지에 타인의 명예나 인격을 침해하는 내용의 기사가 실리지 않도록 총괄, 감독하여야 할 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게을리한 과실이 있다 할 것이며, 피고 주식회사 동아일보사는 그 피용자인 나머지 피고들의 사무집행에 관한 위 행위로 말미암아 생긴 손해에 대하여 사용자책임을 진다 할 것이므로 결국 피고들은 원고의 명예 및 초상권을 침해한 공동불법행위자로서 연대하여 원고에게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할 것이다.

3. 손해배상의 방법

가. 위자료

원고가 여성동아에 이 사건 기사가 게재되어 반포됨으로써 명예가 훼손되고 자신의 사진이 무단게재됨으로 인하여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받았을 것임은 경험칙상 명백하므로 피고들은 이를 금전으로 위자할 의무가 있다 할 것인 바, 원고의 연령 및 직업, 피고들의 목적 및 경위, 위 잡지의 발행부수와 위 기사게재 후 피고들이 원고의 손해전보를 위한 아무런 조치를 취한 바 없는 점, 뒤에서 보는 바와 같이 사과문의 게재가 명예회복처분으로서 인용되는 점 등 제반사정을 참작하면 피고들이 원고에게 지급하여야 할 위자료의 액수는 금 10,000,000원으로 정함이 상당하다고 인정된다.

나. 사과문

원고는 이 사건 기사로 인하여 훼손된 명예의 원상회복으로서 피고들에 대하여 별지 3 기재와 같은 사죄광고를 여성동아에 3회, 5개 일간지에 2회씩 청구취지 기재와 같은 크기의 활자와 지면으로 게재할 것을 구하고 있으나, 앞서 위자료 산정시 참작한 제반

사정과 이 사건 명예훼손의 양태 및 정도, 사과문 게재에 따른 비용 등을 참작하여 볼 때 피고들은 별지2 기재 사과문을 여성동아에 주문 제2항과 같은 크기의 활자와 지면으로 1회 게재함이 상당하다.

4. 결 론

그렇다면,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위자료 금 1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위 잡지발행일인 1988. 6. 1.부터 피고들이 그 이행의무의 존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이 판결 선고일인 1989. 7. 25.까지는 민법소정의 연 5푼, 그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는 소송촉진등에 관한 특례법 소정의 연 2할 5푼의 각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고, 위 잡지에 별지2 사과문을 주문 제2항 기재와 같은 크기의 활자와 지면으로 1회 게재할 의무가 있다 할 것이므로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범위내에서 정당하여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부당하여 이를 각 기각하며, 소송비용의 부담에 관하여는 민사소송법 제89조 제92조를, 가집행선고에 관하여는 같은 법 제199조 위 특례법 제6조를 각 적용하여(원고는 위 사과문 게재부분에 대하여도 가집행을 구하나 이는 청구의 성질상 가집행을 붙이기에 적당하지 아니하므로 이 부분의 가집행은 불허한다)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1989. 7. 25.

재판장 판사 조 희 래
판사 박 종 연
판사 장 성 원

〈별지 2〉 사 과 문

당사가 1988. 6. 1. 발행한 월간지 여성동아 1988. 6.호의 206페이지부터 209페이지까지 『「전 과의 소문」 기사에 5억 청구한 김 진상해명』이라는 제목하에 「전 과 김 사이에 부도덕한 관계가 있다는 소문은 상당한 근거가 있으며 그밖에도 김 씨의 품행에 관한 좋지 못한 소문이 존재한다」는 내용으로 게재된 기사는 확실한 근거 없이 기술된 것이고, 그로 인하여 일반인으로 하여금 위 기사가 진실한 것이라는 인식을 갖게 함으로써 김 씨의 명예를 훼손시킨 점에 대하여 깊이 사과하는 바

입니다.

주식회사 동아일보사
대표자 회장 김 상 기

〈별지 3〉 사 죄 광 고 문

폐사는 본지 6월호에 『확인취재 전 의 소문기사에 5억 청구한 김 진상해명』이라는 제하의 기사 및 김 씨의 사진 2매를 실어 동아일보를 비롯하여 중요일간지에 위 기사를 광고하고 전국 각 서점에 배포한 사실이 있습니다.

폐사는, 위 기사는 마도모아젤사가 발행한 여성 월간잡지인 마드모아젤 5월호에 게재된 『직격 인터뷰 전 과 김 소문의 진상확인』기사 및 광고로 인하여 김 씨가 마드모아젤사를 상대로 민사소송을 제기하자 이에 관하여 마드모아젤사의 입장을 옹호하고, 김 씨를 비방하기 위하여 작성한 것으로 주로 마드모아젤사의 진술만을 토대로 작성된 것임을 인정하며, 위 기사와 같이 사진 2매는 김 씨의 저작물인 영상음악집 「비밀」에 게재하였던 것으로 김 씨의 승락없이 무단 게재하였음을 아울러 인정합니다.

폐사는 위 잡지 기사 및 사진게재로 미스코리아 진이었으며, 탤런트, 가수 등으로 폭넓은 활약을 하여 많은 대중의 사랑을 받아왔으며, 근래에는 전문 의상디자이너 겸 사업가로서도 활동하고 있는 김 씨의 명예를 크게 손상시킨 점을 인정합니다. 이에 대하여 폐사는 폐사의 위와 같은 과오로 인하여 심대한 정신적 충격을 받은 김 씨와 가족들은 물론 그녀를 아끼는 분들에게 심심한 사죄와 위로의 뜻을 표하는 바이며, 이번 사건을 계기로 앞으로는 잡지의 공적 책임 및 윤리를 깊이 인식하여 근거없는 소문등 전혀 사실무근의 내용을 기사화하고 타인의 사진을 무단복제하여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고 건전한 대중을 자극하는 일이 없고 타인의 저작권을 침해하는 일이 없도록 할 것을 약속드리는 바입니다.

1988. 7. .

□

주식회사 동아일보사
서울시 종로구 세종로 139
회장 김 상 기

眞實에 符合하지 않는 기사가 실려 배포되어
原告가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받았을
것이라고 인정할 수 있으므로
이를 慰藉할 의무가 있다

서울민사지방법원 1990. 9. 5.자 판결(89가합51612)

事實概要

서울민사지방법원 제37부(재판장 沈日東 부장판사)는 1990년 9월 5일 서울신문 宋
논설위원이 한국기자협회등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및 사죄광고청구소송에서 「기
자협회와 기자협회 前회장 魯 씨는 宋씨에게 배상금 3백만원을 지급하고 기자협회
보 1면 하단에 가로 7cm, 세로 10cm 크기의 사과문을 게재하라」고 판결했다.

宋씨는 기자협회보가 지난해 9월 1일자 2면 「잠망경」란에서 자유총연맹에서 발행하
는 자유신문에 교원노조를 매도하는 기사를 써 유명해졌다는 등 사실과 다르게 보도를
하자 지난해 10월 소송을 냈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宋씨가 자유신문에 기고한 적은 있으나 교원노조문제에 관해
서는 전혀 논평한 적이 없음에도 기자협회보가 이를 잘못 보도한 것이 인정된다」고 밝
혔다.

判 決 文

사 건 : 89가합51612 손해배상(기)등

원 고 : 송

서울

소송대리인 변호사 경수근, 황규민, 최성곤, 전재중

피 고 : 1. 한국기자협회

서울 중구 태평로1가 25 한국언론회관 13층

대표자 회장 이 근 성

2. 노

서울

피고들 소송대리인 변호사 임상대, 이재명

변론종결 : 1990. 7. 4.

주 문 :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금 3,000,000원 및 이에 대한 1989. 9.

1.부터 1990. 9. 5.까지는 연 5푼, 그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는 연 2할5푼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2. 피고 한국기자협회는 같은 협회가 발행하는 기자협회보 제1면 하단에 가로 7센티미터, 세로 10센티미터의 크기로 앞의 제목과 뒤의 피고 이름은 3호 활자로, 내용은 5호 활자로 하여 횡서로 별지 1기재 사과문을 1회 게재하라.

3.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각 기각한다.

4. 소송비용은 이를 5분하여 그 4는 원고의, 나머지는 피고들의 각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금 100,000,000원 및 이에 대한 1989. 9. 1. 부터 이 사건 소장 부분 송달일까지는 연 5푼, 그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는 연 2할5푼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피고들은 기자회견보 제1면 하단에 가로 24센티미터, 세로 12센티미터의 크기로 제목은 특호활자로, 내용은 2호활자로 하여 별지 2 기재 사과문을 2회 게재하라. 소송비용은 피고들의 부담으로 한다.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라는 판결 및 가집행선고.

이 유: 1. 원고 및 피고들의 지위

각 성립에 다름이 없는 을제3호증의 1 내지 11(기자협회 규약), 을제4호증의 1, 2(간행물제작내규)의 각 기재와 증언의 각 증언을 종합하면, 원고는 1963. 2.경 대학교 대학원 국문학과에서 석사과정을 마치고 석사학위를 취득하였으며, 1961. 7.경 신문 문화부 기자로 언론인 생활을 시작한 이래 한국일보사를 거쳐 서울신문사에서 차장, 부장을 역임하고 현재 서울신문 논설위원으로 재직하고 있는 중견 언론인이고, 피고 한국기자협회는 「회원의 상호 친목을 도모하고 그 자질을 높이며 기자의 권익옹호와 민주정론 창달 및 국제교류에 힘쓰는」 것을 목적으로 하여 조직된 주로 차장급 이하 평기자들을 회원으로 하고 있는 단체이고, 각 회원이 소속되는 분회에서 일정비율로 선출되는 대의원들로 다시 구성되는 대의원대회에서 선출되는 회장이 위 협회를 대표할 뿐 아니라 그 사하의 사무국 내의 편집위원회에서 회보로서

주간지인 「기자협회보」를 발행하고 있으며 회장이 발행인 겸 편집인의 직책을 수행하고 있는 사실, 편집위원회는 회장을 포함하는 10인의 위원으로 구성되며 위원회는 매 주 1회 정기적으로 열리고 여기에서 편집의 기본방향을 정하고 있으며 그 편집 및 발행에 대해서는 발행인 겸 편집인이 총괄적 책임을 지도록 되어 있는 사실,기자협회보의 발행부수는 약 10,000부 정도로서 그 중 약 4,500 내지 5,000부가 회원에게, 약 1,000부가 명예회원 및 각 언론사등에 배포되고 있으며, 피고 노는 이 사건 기사가 게재될 당시 피고 한국기자협회의 회장으로로서기자협회보의 발행인 겸 편집인이었던 사실, 1990. 3. 30.자로 그 직책은 소외 이근성이 맡고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반증이 없다.

2. 불법행위책임의 발생

가. 이 사건 기사에 의한 명예훼손의 성립

각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제1호증(기자협회보), 갑제3호증의 1(사정업무현황표지), 2(목차), 3(제4조정관실 직제 및 기능), 4(사정정책자문단 설치운용계획안), 5(사정정책자문위원 위촉안), 갑제4호증의 1(사정업무현황표지), 2(목차), 3(사정업무추진체계), 4(사정업무 기본방향), 5(최근 공직기강동향), 6(국민생활보호대책), 을제5호증의 1, 2(각 자유신문), 을제6호증(세계일보), 을제9호증(기자협회보), 증인 김용태의 증언에 의하여 각 진정성립이 인정되는 을제7호증의 1 내지 3(원고)의 각 기재와 증인의 각 증언, 이 법원의 자유신문사 발행인, 국무총리 행정조정실장에 대한 각 사실조회 회보결과 및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소외 한국자유총연맹에서 발행하는 격주간지인 자유신문 1989. 8. 21.자(제4호)에 『학생·부형 올리는 전교조』라는 제목하에 소외가 토론자로 참가하고 소외

이 사회 및 집필을 한 좌담회 기사가 실렸고 이 기사의 내용은 대체적으로 재야단체인 전교조를 용공적이라고 비판하는 것이고 일부 참석자의 발언 중에는 전교조 참가 교사들에게 성격적인 결함이 있는 듯한 인상을 주는 것도 있었는데 원고는 위 토론이나 위 기사의 작성에는 전혀 관여하지 않았을 뿐 아니라 우리나라의 정치 사회문제로 크게 부각되어 거론되고 있는 전교조 문제에 관하여는 지금까지 전혀 논평을 하지 않은 사실, 다만 원고는 위 자유신문 같은 호의 자유정론란에 『미국영주권 가진 신부목이 쉬도록 반미구호 외쳤다』라는 제목으로 북한을 방문했던 소외 문신부와 그가 소속한 재야단체인 정의구현사제단을 비판하면서 사석에서 들은 이야기를 인용하는 형식으로 소외 문신부와 정의구현사제단 소속의 신부들이 간첩에 의하여 포섭되

어 종교계에 침투한 것이라는 인상을 줄 수도 있는 내용의 칼럼을 게재한 사실, 한편 국무총리 제4행정조정관실에서는 1989. 1. 30. 국무총리 행정조정실 직제 개편에 따라 공직사회를 포함한 사회 전반에 대해 높은 식견과 학식, 덕망을 고루 갖춘 학계 등 사회 각계각층의 저명인사 15인 이내로 구성되는 국무총리 사정정책자문단을 설치 운영하기로 하고 원고를 언론계 대표로서 사정정책자문위원으로 위촉하기 위하여 1989. 5. 초순경 원고에게 위촉 의뢰를 하여 원고의 승낙을 받고 1989. 8. 30. 공식적으로 자문위원으로 위촉하였고 1989. 8. 30.자 세계일보에 「정부가 원고를 포함한 14명을 사정정책자문위원으로 위촉하였다」는 내용이 보도된 사실, 원고가 논설위원으로 재직하고 있는 서울신문의 논설내용과 원고가 같은 신문에 써 온 여러 칼럼내용이 친정부적이라고 생각해온 위 기자협회보의 잠망경란 담당기자 소외 성명불상자는 원고가 위와 같이 사정정책자문위원으로 위촉되었다는 사실에 착안하여 원고의 행위를 권언유착행위로 보고 이를 비판하는 기사를 작성하기로 마음 먹고 원고가 사정정책자문위원에 위촉된 경위에 관하여 위촉기관인 국무총리 제4담당관실등에 확인하지도 아니한 채 제목을 『사정위원의 면모』로 하고 부제목을 『부화뇌동 언론인 속출에 언론귀족 탄생 임박』으로 하여 「교육개혁, 공무원 숙정, 폭력배 단속 등 5공초와 똑같은 굵적굵직한 구호들이 연이어 터지는 가운데 여기에 부화뇌동하는 언론인들의 부침도 어찌면 그렇게 5공초와 똑같냐는 데 화제가 집중. 전교조 교사를 패륜아로 매도한 자유신문이란 극우지에 기자칼럼을 쓰면서 유명해진 서울신문 송 논설위원은 곧바로 사정자문위원에 위촉됐고, 천방지축조 담임의 특집보도로 의식화교육 왜곡보도의 상징물로 부각시켰던 강영구 보도국장도 역시 사정자문위원이라는 정치적 배려를 받았을 뿐더러…… 언론노조운동을 카프에 빚대 이데올로기 운동으로 매도하는 데 급급했던 당시 연합통신 논설위원실장(현재 국민일보 논설위원)은 그 공로 덕인지 요즘 티.브이에까지 출연하는 각광을 받고 있기도.

그래서 그런지 언론인이라는 미명 아래 특권향유에 여념이 없었던 속칭 선배·원로 언론인들도 최근 언론노조운동을 매도하는 데 치열한 각축을 벌이고 있어 5공초와 같이 언론귀족의 탄생이 임박한 듯」이라는 내용으로 원고를 작성하여 편집부에 넘긴 사실, 그런데 편집과정에서 편집부 기자인 소외 김 가 위 기사 중에 원고가 썼다는 칼럼의 내용이 구체적으로 나타나지 않자 위 원고내용이 잘못된 것으로 속단하고 위 기사를 작성한 잠망경 담당기자에게 그 여부를 확인하지도 아니한 채 「전교조를 패륜아로 매도한 자유신문이라는 극우지에 기자칼럼」이라는 구절을 「자유신문이라는 극우

지에 전교조를 패륜아로 매도한 기자칼럼」이라고 바꾸어 이를 인쇄소에 넘긴 사실, 이에 따라 1989. 9. 1.에 위 회보 2면 잠망경란에 위와 같은 내용의 기사가 제목은 5호 활자로, 부제목은 4호 활자로, 본문은 6호 활자로 실린 위 기자협회보 제559호 약 10,000부가 발행되어 배포된 사실, 그 후 1989. 9. 8.자 기자협회보 제560호 고침란에 「본보 제559호 2면 잠망경 씨등 관련기사 중 ‘자유신문이란 극우지에 전교조 교사를 패륜아로 매도한 기자칼럼’ 부분은 ‘전교조 교사를 패륜아로 매도한 자유신문이란 극우지에 기자칼럼’의 오기이므로 바로잡습니다」라는 내용의 정정기사가 6호 활자로 실린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반증이 없다.

그렇다면, 위 기사 중 원고가 「자유신문에 전교조 교사를 패륜아로 매도하는 기자칼럼을 써서 유명해졌다」는 부분과 「위 칼럼기사로 인하여 원고가 곧바로 사정자문위원에 위촉됐다」는 의미를 나타내주는 부분은 모두 진실에 부합하지 아니하는 것이고 이러한 내용의 기사가 실린 위 기자협회보 약 10,000부가 발행되어 주로 언론계 종사자들에게 배포됨으로써 중견 언론인인 원고는 언론인으로서의 사회적 평가가 크게 저하되는 손해를 입게 되었다는 것이며, 위와 같은 진실에 부합되지 않는 기사를 게재하여 원고의 명예를 침해한 것으로서 위법한 것이라 할 것이다.

따라서, 위 기사의 발행에 관하여 소외 성명불상의 잠망경 담당기자는 원고가 사정 정책자문위원으로 위촉된 경위에 관하여 제대로 확인하지 아니한 채 위와 같은 원고를 작성한 잘못이, 편집기자 소외 김 는 위 잠망경 담당기자에게 확인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함부로 위 원고를 수정한 잘못이, 피고 노 는 위 기자협회보의 발행인 겸 편집인으로서 직접 이 사건기사의 작성이나 게재에 관여하지는 않았다 하더라도 위 기자협회보에 타인의 명예나 인격을 침해하는 내용의 기사가 실리지 않도록 총괄 감독하여야 할 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게을리한 잘못이 각 있다고 할 것이고, 피고 한국기자협회는 그 피용자인 위 기자들 및 피고 노 의 사무집행에 관한 위 행위로 말미암아 원고가 입은 손해에 대한 사용자책임을 진다 할 것이므로, 결국 피고들은 원고의 명예를 침해한 공동불법행위자로서 연대하여 원고에게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할 것이다.

원고는 위 기사 중에 「부화뇌동하는 언론인」「특권향유에 여념이 없었던 속칭 선배·원로 언론인들」「언론귀족」이라는 표현을 사용한 것도 원고를 마치 그 표본인 것처럼 묘사함으로써 원고의 명예와 인격권을 침해하였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위와 같은 표현은 친정부적인 보도나 논설을 하고 정부로부터 각종 혜택을 부여받는 언론인들에 대하여 이를 언론의 권력으로부터의 독립이라는 측면에서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

각하는 측에서 이를 비판하기 위하여 사용하는 표현으로서 위와 같은 표현으로 지칭된 사람의 명예나 인격을 다소간 침해하는 점은 있다고 할 것이나, 원고가 서울신문의 논설위원으로 재직하고 있으며 반정부인사인 문 신부와 그가 소속한 재야단체인 정의구현사제단을 비난하는 기사를 작성한 사실이 있고 이러한 논설태도와 관련이 있는지 여부는 알 수 없지만 정부로부터 사정정책자문위원 위촉이라는 일종의 혜택을 부여 받은 사실이 있는 이상, 중견 언론인으로서 공인인 원고가 친정부적인 보도태도를 보이고 있으며 이를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하여 원고를 비판하기 위하여 이러한 표현을 사용한 것이 헌법상 보장되는 언론 출판의 자유의 한계를 넘어 원고의 명예를 침해한 것이라고는 볼 수 없다 할 것이어서 원고의 위 주장은 그 이유가 없다.

원고는, 또한 위 기자회견보 제560호 고침란의 정정기사도 위 기자회견보 제559호의 내용을 다시 한번 강조함으로써 새로이 원고의 명예와 인격권을 침해하였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앞서 본 바와 같이 위 정정기사는 그 문맥상 위 잠망경란 기사 중 「자유신문이란 극우지에 전교조 교사를 패륜아로 매도한 기자칼럼」 부분은 「전교조 교사를 패륜아로 매도한 자유신문이란 극우지에 기자칼럼」의 오기이므로 이를 정정한다는 것으로서 이로 인하여 앞서 본 원고의 명예를 훼손하는 기사 부분이 다시 한번 강조되었다고는 할 수 없다 할 것이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가 없다.

나. 피고들의 항변에 관한 판단

피고들은, 위 기자회견보 제559호가 배포된 후 원고가 즉시 피고들에게 위 기사에 대한 항의를 하면서 위 기사에 대한 정정기사 및 원고의 반론을 기자회견보에 실어 줄 것을 요구하였으므로 피고들이 이에 동의하여 원고와 사이에 다음호인 기자회견보 제560호에 정정 기사를 게재하고 그 다음호인 제561호에 원고에게 반론할 기회를 부여하며 원고는 더 이상 이를 문제삼지 않기로 합의하였고, 이에 따라 피고들은 제560호에 정정 기사를 싣고 원고에게 반론 기사를 독촉하였으나 원고는 이에 응하지 아니하고 원래의 기사 및 제560호 정정 기사에 대한 반론까지 요구하였고 피고들은 원고의 요구가 부당하다고 생각하면서도 분쟁을 종결짓기 위하여 이에 동의하여 1989. 9. 22. 발행되는 제561호에 반론을 게재할 것이니 반론원고를 보내라고 원고에게 요청하였으나 원고가 반론원고를 보내지 아니하였으므로 위 합의에 의하여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이 사건 손해배상청구권은 소멸하였다고 항변하므로 살피건대, 앞에서 나온 을제9호증, 각 성립에 다툼이 없는 을제8호증의 1, 2, 을제10호증(각 내용증명) (을제8호증의 1, 2는 갑제2호증과 같은 내용임)의 각 기재와 증인 김 의 증언(다만 위 증인의 증언

중 뒤에서 믿지 않는 부분 제외)을 종합하면 위 제559호가 발행된 직후 원고는기자협회 사무실에 전화를 걸어 위 기사에 대하여 사실과 다르다고 항의하였고 그 후 한국기자협회 서울신문사 분회장인 소외 김 을 통하여 피고들에게 위 기사에 대한 정정보도를 하고 반론의 기회를 제공할 것을 요구하였으며 피고들도 위 소외 를 통하여 이에 동의하는 의사표시를 하였고 이에 따라 앞서 본 바와 같은 정정기사가 제560호에 실린 사실, 제560호에 위와 같은 정정기사가 실린 후 원고는 위 정정기사가 원고의 명예를 회복하기에 불충분하다면서 제559호 및 제560호 기사에 대한 반론의 지면을 요구하는 내용의 내용증명을 발송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나, 원고가 피고들로부터 정정기사의 보도 및 반론기회를 부여받고 더 이상 위 기사 게재로 인한 손해를 문제삼지 아니하기로 피고들과 합의하였다는 점에 대하여는 이에 부합하는 듯한 증인 김 의 증언 부분은 믿지 아니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들의 위 항변은 이유가 없다.

3. 손해배상의 방법

가. 위자료

위기자협회보 제559호에 진실에 부합하지 않는 위 기사 부분이 실려 배포되어 원고의 명예가 훼손됨으로써 원고가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받았을 것임은 경험칙상 이를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들은 이를 금전으로 위자할 의무가 있다 할 것인데, 앞서 본 바와 같은 원고의 경력, 피고들의 위 기사 게재 경위, 위기자협회보의 발행부수 및 구독자의 구성, 기사의 크기, 위 기사 게재후 피고들이 원고의 명예회복을 위하여 위 기사 부분 중 일부에 대한 정정보도를 그 다음회의기자협회보에 실은 사실, 피고들의 재정상태, 뒤에서 보는 바와 같이 사과문의 게재가 명예회복처분으로서 인용되는 점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사정을 참작할 때 피고들은 연대하여 위자료로서 원고에게 금 3,000,000원을 지급함이 상당하다고 할 것이다.

나. 사과문

원고는 이 사건 기사로 인하여 훼손된 명예의 원상회복으로서 피고들에 대하여 별지 2 기재와 같은 사과문을기자협회보 제1면 하단에 청구취지 기재와 같은 크기의 활자와 지면으로 2회 게재할 것을 구하고 있다.

그러므로 먼저 피고 한국기자협회에 관하여 살피건대, 위에서 본 바와 같이 원고는 지금까지 전교조 문제에 관하여 전혀 논평을 한 사실이 없고, 원고가 사정정책자문위원으로 곧바로 위촉된 것은 원고가 위와 같은 내용의 칼럼 기사를 쓴 때문이 아님에도,

원고가 위와 같은 내용의 기사를 써서 이로 인하여 곧바로 위 위원에 위촉되었다는 이 건 기사내용은 원고에 대한 사회인 특히 위 기사의 독자인 언론인들의 사실판단에 착오를 일으키고 중견 언론인인 원고에 대한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킨 사실이 명백하다 할 것이고, 비록 피고 협회가 그 회보 제560호에서 이를 고친 사실이 있다 하더라도 그 내용은 진실에 반하는 전부에 관한 것이 아니고 정정내용도 위와 같이 내용의 일부가 오식되었다는 것에 불과하며 원고의 명예를 회복하기에는 충분치 못하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 협회는 그가 스스로 발행하는 기자협회보에 사죄광고를 게재함이 상당하다 할 것이다.

다음으로 피고 노 에 대하여 살피건대, 위에서 본 바와 같이 피고 노 는 위 기사의 작성에 직접 관여한 사람이 아니며 다만 위 협회보의 총괄 감독자의 지위에 있었음이 인정되므로 그 잘못된 기사에 대한 사죄는 위 협회보의 법률상 발행자인 피고 협회가 이를 행함으로써 족하다 할 것이고 그 발행인 겸 편집인 개인인 피고 노 가 사죄광고를 할 필요성이 있다 할 수 없다.

그러므로 그 사죄광고 내용에 관하여 보건대, 앞서 위자료 산정시 참작한 제반 사정과 이 사건 명예훼손의 태양 및 정도 등을 참작하여 볼 때 피고 협회는 별지 1 기재 사과문을 기자협회보 제1면 하단에 주문 제2항 기재와 같은 크기의 활자형식과 지면 등으로 하여 1회 게재함이 상당하다.

4. 결론

그렇다면,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위자료 금 3,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위 기자협회보 제559호 발행일인 1989. 9. 1.부터 피고들이 그 이행의무의 존부와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이 판결 선고일인 1990. 9. 5.까지는 민법 소정의 연 5푼, 그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는 소송촉진등에 관한 특례법 소정의 연 2할 5푼의 각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고, 피고 한국기자협회는 그가 발행하는 기자협회보 제1면 하단에 별지 1 기재 사과문을 주문 제2항 기재와 같은 크기의 활자형식과 지면으로 1회 게재할 의무가 있다 할 것이므로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 범위내에서만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각 기각하며, 소송비용의 부담에 관하여는 민사소송법 제89조, 제92조, 제93조를 적용하고, 가집행의 선고는 불이지 아니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1990. 9. 5.

재판장 판사 심 일 동
판사 정 종 관
판사 최 종 갑

〈별지 1〉 사과문

본 협회(당시 발행인 겸 편집인 노)가 1989. 9. 1. 발행한 기자협회보 제559호 2면 잠망경란에 『사정위원회 면모』라는 제목 아래 서울신문 논설위원 송 씨에 대하여 「송 이 자유신문이란 극우지에 전교조 교사를 패륜아로 매도한 기자칼럼을 썼으며, 이로 인하여 곧바로 사정자문위원회에 위촉됐다」는 취지로 실린 기사는 전혀 진실이 아니며 그로 인하여 일반인으로 하여금 그러한 잘못된 생각을 갖게 하여 송정숙 씨의 명예를 훼손한 점에 대하여 깊이 사과를 드립니다.

한국기자협회

〈별지 2〉 사과문

저희 기자협회보는 1989년 9월 1일자(제599호) 잠망경란에서 서울신문 송 논설위원에 관한 기사를 사실과 전혀 다른 내용으로 비평하였음을 인정합니다.

그 난에 인용된 자유신문의 자유칼럼에 송 씨는 인용된 내용과 같은 주제의 표현을 전혀 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기자협회보의 잠망경이 잘못 비판함으로써 결과적으로 30년 가까이 언론에 종사한 중진 언론인으로서 송 씨의 명예에 손상을 입혔음을 사과합니다.

특히 송 씨가 자유신문 칼럼으로 유명해져서 정부로부터 사정자문위원으로 위촉되었다는 추측기사는 전혀 근거 없는 것이었음도 밝혀졌으므로 그 점도 사과합니다. 기사가 나간 직후 당사자인 송 씨의 항의가 있었으므로 다음호(제560호) 기자협회보에 고침을 실었으나 그 고침이 정정과 사과의 내용으로 충분하지 못했음을 인정하고 이 사과문을 게재합니다.

1. 한국기자협회 회장 노

2. 노

